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생 생활규정

2025 개정판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 법석 근거
-1. 법적 근거 체계 ······· 2
-2. 관련 법령3
- 초·중등교육법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 고시에 따른 학생생활지도 안내13
-1. 학생생활지도 개요14
. 생활교육위원회 ····································
-1. 생활교육위원회의 이해 ········ 16
III-2. 생활교육위원회의 운영 Q&A38
III-3. 생활교육위원회 관련 서식(예시) ····································
Ⅳ. 생활평점제 ········ 99
IV-1. 생활평점제의 이해 ···································
IV-2. 생활평점제 운영 Q&A 103

V.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생활규정 예시안 ·································· 117
V-1. [초등] 학생생활규정 예시안 ······· 120
V-2. [중등] 학생생활규정 예시안 ···································
V-3. 학생생활규정 예시안 Q&A ······147
V-4. 학생생활규정 예시안 관련 서식 ······166
V-5. 학생생활규정 예시안 현장 적용 시례 ······· 183
VI.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 193
VI-1.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의 이해 ·······194
VI-2 한생생확규정 제·개정 Q&A ···································



Ш

생활교육위원회

01 기존 선도위원회, 학생징계위원회 등 기구의 명칭을 모두 반드시 "생활교육위원회"로 변경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38
02 생활교육위원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38
03 하나의 사안에 대해 생활교육위원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지역교권 보호위원회가 동시에 열릴 수 있나요?	40
04 생활교육위원회 징계 양정 기준에 관한 사항도 학생생활규정으로 제정하고, 제·개정 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대상인가요?	40
05 생활교육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법령에 있는 징계 기준 외 학교별 세부 징계 방법 및 내용도 학생생활 규정에 넣어야 하나요?	41
06 징계 기준과 내용을 수정하고자 할 때 관련 절차, 적용 시점, 수정 공고 방법이 궁금합니다.	44
07 학생 및 보호자에게 생활교육위원회 개최 안내를 하였으나, 학생이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생 및 보호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개최할 수 없는 것인가요?	44
08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가 규정하고 있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45
① 9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 제2항에서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 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45



생활교육위원회

10	생활교육위원회에서 같은 학생에게 두 가지 징계 조치를 동시에 내릴 수 있나요?	46
11	학생생활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유로 징계 조치를 할 수 있나요?	46
12	징계 기준에 해당이 되는 사안이지만 생활교육위원회에서 징계를 하지 않을 수도 있나요?	47
13	징계 시 학년별, 사건별 형평성 있는 징계가 이루어지게 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47
14	11월에 생활교육위원회 개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개최 사유는 해당학생의 흡연 및 절도이며, 흡연은 9월에, 절도는 10월에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생활교육위원회에서 흡연에 대해서 학교 내의 봉사, 절도에 대해서 특별교육이수 조치를 나누어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48
15	생활교육위원회 심의 결과 퇴학처분이 의결되어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고자합니다. 이때 가정학습 기간을 반드시 부과해야 하나요?	48
16	퇴학 처분 전에 이루어지는 가정학습은 며칠 동안 부과할 수 있을까요?	49
17	특별교육이수 조치를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제대로 이수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학생이 조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을 별도의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있을까요?	49
18	학교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등의 징계 조치를 할 때, 시간과 일수에 상한은 없는 것인가요?	50



생활교육위원회

19	학교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 징계 처분에 따른 실효성 있는 이행 방법 등이 궁금합니다.	50
20	재심의(再審議)신청과 재심(再審)청구는 어떻게 다른 것인가요?	51
21	생활교육위원회 징계 결과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하면 같은 위원회에서 재차 심의하나요?	52
22	재심의 신청을 학생 또는 그 보호자뿐만 아니라 학교의 장도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학교들이 있는데, 학교의 장의 재심의 요청 규정을 삭제해야 하는 것인가요?	52
23	생활교육위원회에 상정하지 않을 경우 학생징계 이외의 지도방안으로 학생들에게 성찰문을 쓰도록 할 수 있나요?	52
24	단 학교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한 학생생활규정 운영은 적절한가요?	53
25	공직선거법이 제한하지 않는 교내 선거운동은 무엇이든 가능한가요?	53



생활교육위원회 관련 서식(예시)

서식 1	학생생활교육 사안접수대장	55
서식 2	학생 사실 확인서	56
서식 3	교직원 사실 확인서	57
서식 4	외부인 사실 확인서	58
서식 5	생활교육 사안조사보고서	59
서식 6	생활교육위원회 상정 여부 협의록연	60
서식 7	생활교육위원회 출석 및 의견 진술 요청서	61
서식8	학생·학부모 서면 의견서	62
서식 9	참고인 의견서	63
서식 10	생활교육위원회 징계 의결서	64
서식 11	생활교육위원회 회의록연	65
서식 12	조치결정통지서	67
서식 13	학생 징계 대장	68
서식 14	징계 조치 이행 계획서	69
서식 15	학생 학교내의 봉사 활동 일지	70
서식 16	학생 사회봉사 신청서	71
서식 17-1, 17-2	학생 특별교육 이수 의뢰서	73
서식 18	학교 재심의 요청서	75
서식 19	학생징계조정위원회 재심 청구서	76
참고자료 1	학생생활교육 사안처리 체크리스트	77
참고자료 2	생활교육위원회 사안처리 점검 사항	79
참고자료 3	생활교육위원회 회의 진행 시나리오	81



IV

생활평점제

01	생활평점제는 꼭 필요한가요?	103
02	생활평점제를 대체할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103
03	생활평점제의 바람직한 운영 방향은?	105
04	생활평점제를 운영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106
05	생활평점제 세부항목 구성 시 고려사항은?	108
06	생활평점제 상벌점 항목 수정은 어떤 절차에 따라 하나요?	109
07	생활평점제와 관련된 내용을 학생과 보호자에게 공지해야 하나요?	110
80	생활평점제 벌점 누적에 의한 징계도 생활교육위원회를 통해 결정해야 하나요?	111
09	생활평점제의 민주적 운영 방법은?	113
10	생활평점제 운영 학교의 실제 사례를 알 수 있을까요?	114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생활규정 예시안

U1	「평생교육법」제37소(학교영태의 평생교육시설)에 의해 설립된 학교도 이번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의 내용이 적용되나요?	14/
02	특수교육대상자도 생활지도 고시의 내용이 적용되나요?	147
03	특수교육대상자의 문제행동에 대한 행동중재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하나요?	148
04	전문상담사도 학생생활지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나요?	148
05	고시와 학칙에 따라 학생생활지도를 하였다면 이동학대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나요?	149
06	고시 제정에 따른 학칙 개정 시, 예시안을 기준으로 개정하거나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 등 관련 절차 일부를 생략 또는 간소회할 수 있나요?	149
07	수업 중 졸게나 엎드려 잠을 지는 행위에 대해 학생생활지도가 가능한가요?	150
80	학생이 원치 않는 경우에도 진로 및 진학 관련 생활지도가 기능한기요?	150
09	학교의 장과 교원의 학생생활교육만으로 학생의 인성 및 대인관계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시항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150
10	'조언'에 해당하는 특정 요건이 있나요?	151
11	심리상담 또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조언'을 하였으나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151
12	상담 기록을 반드시 남겨야 해나요?	151
13	상담을 녹음 및 녹화하려는 경우에 허용해야 하나요?	152
14	고시 제10조 제6항과 관련하여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은 무엇인가요?	152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생활규정 예시안

15	고시 제10조 제4항에 해당하는 '명백한 사유'란 무엇인가요?	152
16	상담 실시를 위한 시전 협의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152
17	제11조 제3항에 따라 '주의'를 준 후에만 '훈육' 또는 '훈계'를 할 수 있나요?	153
18	학교급별, 학생별 지시는 어떻게 달라야 하나요?	153
19	정당한 지시와 부당한 지시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153
20	학생을 훈육할 때 반드시 조언, 상담, 주의 단계를 순치적으로 거친 후 제지 또는 분리를 실시할 수 있나요?	153
21	물리적 제지가 발생한 이후 학교의 장은 보호자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알려야하나요?	154
22	교실 내 지정된 위치에 이미 다른 학생이 있는 경우 추가로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 분리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154
23	학생이 교실 내 분리를 거부하거나 교실 내 분리를 했음에도 문제 행동을 반복하면 어떻게 하나요?	154
24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별도 장소에 분리하지 않고 보호자에게 바로 인계를 요청할 수 있나요?	155
25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이며, 만약 분리 조치한 학생에 대한 보호자 인계가 필요하여 요청하였으나 보호자가 이를 거부할 시에는 어떻게 조치할 수 있나요?	155
26	학생을 교실 밖으로 분리지도 한 상태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등에 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155
27	학생 분리 지도 시, 분리 장소 및 인계·담당 주체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학교에서 어떻게 정할 수 있나요?	156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생활규정 예시안

28	실외 교육활동 중 분리지도 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156
29	2교시 쉬는 시간에 약 다섯 명의 학생들이 화장실에서 나온 뒤 흡연 정황이 신고 되었습니다. 해당 학생들을 대상으로 물품 조시를 할 수 있나요?	156
30	물품 분리·보관 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의 경우 물리적인 제지(압수, 빼앗기, 위험한물건의 경우 제압 후 빼앗기, 신체적 접촉이 유발되는 일체의 행위 등)를 사용하여분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방법과 정도에 대해 궁금합니다.	157
31	확인된 물건 중 폭발물, 미약류 등 현행법상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이리면 학교가 보관해야 하나요?	157
32	가위, 칼과 같은 학용품을 위험하게 사용하는 경우 고시 제12조 제9항을 근거로 학용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 보관할 수 있나요?	157
33	고시 제12조 제6항 제3호, 제4호 및 제9항에 따라 물품 분리·보관 지도를 한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관한 세부 시항을 학칙으로 정할 때, 물품 및 시안의 심각성에 따라 중대한 시안의 경우에만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을까요?	158
34	물품 분기보관, 학생 분기지도 등을 위한 일지 및 대장의 관리 주체는 누구인기요?	158
35	물품 분리보관 일지의 경우 전체 물품에 대해 작성해야 하나요?	158
36	물품 분리·보관 지도 시 일정기간 보관 기일 경과 후 물품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에 해당 물품을 폐기하고자 합니다. 이때 고려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159
37	교무실, 화장실이 이닌 모두가 함께 시용하는 교실을 학급 규칙으로 정하여 벌청소	159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생활규정 예시안

38	반성문을 쓰도록 하는 것은 인권위 권고를 위반하는 사항인데, 훈계 시 학생들에게 성찰하는 글을 쓰도록 할 수 있나요?	159
39	지속적인 생활교육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교원이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하게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160
40	이의제기 및 답변 기한인 "14일 이내"에는 주말 및 공휴일도 포함되나요?	160
41	고시 제12조 제6항 제3호에 따른 지도를 할 때는 언제까지 분리할 수 있나요?	160
42	가정학습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61
43	'4호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를 할 경우 보호자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61
44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 분리 시 필요한 학생보호인력 '중등' 예시 중 배움터 지킴이는 근로자가 이닌 지원봉사자인데, 학생 인계 및 관찰 업무를 부여할 수 있나요?	161
45	학생 분리 지도 시, 학생의 출결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162
46	학생 분리 지도 시, 분리 장소 및 인계·담당 주체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학교에서 어떻게 정할 수 있나요?	163
47	학교 내 휴대전화 시용 제한과 관련하여 학교는 어떤 지침에 근거하여 진행해야하나요?	164
48	특수교육대상자 생활지도 시 고려할 사안은 무엇인가요?	165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생활규정 예시안 관련 서식(예시)

서식 20	물품 분리보관 신고서 / 물품 분리보관 확인서166
서식 21	물품 폐기 확인서
서식 22	분리지도학생 관리 대장
서식 23	보호자 인계 확인서
서식 24	가정학습 보호자 확인서170
서식 25	행동성찰문(성찰하는 글쓰기) 서식
서식 26	교실 밖 일시적 분리 조치에 따른 분리 장소 규칙172
서식 27	개인 휴대전화 사용 허가 요청서
서식 28	학생생활규정 관련 법령174



VI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01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시 고려해야 할 원칙은 무엇인가요?	205
02	학생생활규정은 매년 개정해야 하나요? 그리고 제·개정위원회는 학생생활 규정을 제·개정할 때만 구성하면 되나요?	206
03	교육지원청에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을 위한 컨설팅 요청 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207
04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시 참고할 다른 학교의 학생생활규정은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208
05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안 발의는 누가 할 수 있나요?	208
06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을 위한 교육 3주체의 의견 수렴 숙의 절차는 언제 시작하면 되나요?	209
07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관련 회의와 토론회 등을 온라인으로 실시해도 되나요? 그리고 학생, 보호자의 의견 수렴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9
80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시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는 모여서 해야 하나요?	209
09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안 시안을 만들 때 학생 의견 반영 비율은 얼마인가요?	211
10	제·개정된 학생생활규정을 공포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211
11	학생생활규정에 제·개정된 사항이 없어도 학생, 보호자, 교원에게 학생 생활규정을 안내하고 홍보하여야 하나요?	216
12	학생생활규정과 관련하여 상위 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거나 단순한 표현· 자구를 변경할 때도 의견 수렴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216

학생생활규정 길라잡이 (2025 개정판)

법적 근거

V,	-1	법적	근거	체계	

1-2. 관련 법령 3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2





법적 근거

-1 법적 근거 체계

법률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교원의 생활지도권 보장

시행령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생활지도 분야·방법 및 체벌금지 명시

고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교육부고시 제2023-34호

생활지도의 범위, 방식 등에 관한 기준

학칙

학교 규칙(학칙)

고시에서 위임한 구체사항 등

학급 규칙

학급 규칙

학급별 세부내용 규정

법적 근거 마련의 의의

- ➤ 초·중등학교의 교원이 이 고시에 따라 행한 학생생활지도는 법령과 학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 정당한 교육활동임.
- ▶ 학급규칙은 학칙의 범위 내에서. 학칙은 고시의 범위 내에서 규정할 수 있음. 따라서 학칙이 법령과 고시의 범위를 벗어나. 「헌법」에서 보장하는 학생의 기본권을 제한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 ※ 상위법에서 정한 바에 위배되는 사항이 하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 이는 효력이 없고 그에 근거한 행위는 위법임('상위법 우선의 원칙')

관련 법령



초·중등교육법

-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③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와 관련하여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 1. 학업 및 진로
 - 2. 보건 및 안전
 - 3. 인성 및 대인관계
 - 4. 그 밖에 학생생활과 관련되는 분야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의 범위,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3에서 학교의 장과 교원에게 부여한 학생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학생"이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 2. "특수교육대상자"란「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3. "교육활동"이란「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 4. "학생생활지도"라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지도 행위(이하 "생활지도"라 한다)를 말한다.
- 5. "조언"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6. "상담"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체의 소통활동을 말한다.
- 7. "주의"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8. "훈육"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지시, 제지, 분리, 소지 물품 조사,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9. "훈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깨닫게 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10. "보상"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 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교육 3주체의 책무) ①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하여 시설,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 ⑤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 제4조(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전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제2장 생활지도의 범위

- 제5조(학업 및 진로)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업 및 진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1.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 2.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사용
 - 3.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 제6조(보건 및 안전) 학교의 장과 교원은 보건 및 안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1.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 2.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3.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1-2

- 제7조(인성 및 대인관계) 학교의 장과 교원은 인성 및 대인관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1.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 2.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 **제8조(그 밖의 분야)**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1.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 2. 거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 3. 비행 및 범죄 예방
 - 4.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3장 생활지도의 방식

- 제9조(조언)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 ②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하여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 제10조(상담) ①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상담은 수업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 전담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의 장과 보호자 간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 ③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④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 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 3. 근무 시간 외의 상담
-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주의)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회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제12조에 따른 훈육 또는 제13조에 따른 훈계를 할수 있다.
 -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1-2

- 제12조(훈육)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9조에 따른 조언 또는 제11조에 따른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 ·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 ⑥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 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 2.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하다)
 - 3.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 4.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 ⑦ 학교의 장은 제6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 ⑧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 ⑨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 1. 제11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 4.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여 소지·사용을 금지한 물품
- ⑩ 교원은 제6항제3호·제4호 및 제9항에 따라 생활지도를 한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의5에 따른 학급담당교원은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학급의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 사항을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학급생활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서는 보호자 또는 특수교육교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
- 제13조(훈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9조에 따른 조언, 제10조에 따른 상담, 제11조에 따른 주의, 그리고 제12조에 따른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 ②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 1.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 2. 성찰하는 글쓰기

1-2

- 3.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한다)
- 제14조(보상)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4장 기타

-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제59조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2조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 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제16조(생활지도 불응시 조치) ①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②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수 있다.
- 제17조(이의제기)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제18조(그 밖의 생활지도의 범위 및 방식) 학교의 장은 이 고시에서 학칙으로 위임한 사항 및 그 밖에 생활지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3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부 칙 〈제2023-34호, 2023. 10. 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칙에 관한 특례) 제8조제4호, 제12조제6항 및 제9항, 제18조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 학칙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한시적으로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이 고시에서 위임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학생생활규정 길라잡이 (2025 개정판)



고시에 따른 학생생활지도 안내

Ⅱ-1. 학생생활지도 개요

14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고시에 따른 학생생활지도 안내

||-1

학생생활지도 개요

가. 학생생활지도의 범위

학업 및 진로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학교의 면학분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 및 사용

>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보건 및 안전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건건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인성 및 대인관계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개선

그 밖의 분야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 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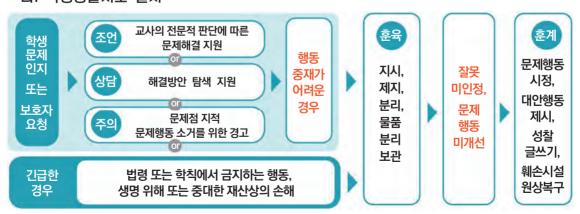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비행 및 범죄예방, 그 밖의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나. 문제행동에 대한 생활지도 절차

방법	방 식
조언	문제 인식 시 언제든지 조언 가능, 권고
상담	상담 예약 및 사전협의, 상담거부 및 중단 가능
주의	학교안전 및 질서유지 저해 우려시 주의
훈육	지시, 제시(물리적 제지 포함), 분리, 물품조사 및 분리보관
훈계	과제 부여(대안행동, 성찰문, 원상복구)
보상	칭찬, 상 등

다. 학생생활지도 절차



학생생활규정 길라잡이 (2025 개정판)



생활교육위원회

-/ /	생활교육위원외의	Oloh	16
III-2.	생활교육위원회의	운영 Q&A	38

Ⅲ-3. 생활교육위원회 관련 서식(예시) 54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생활교육1)위원회

|||-1

생활교육위원회의 이해

생활교육위원회의 정의

- 생활교육위원회의 개념
 - 학교 규칙에 근거하여 학생징계(선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 기능을 갖는 학교 내 자치기구
 - 「초·중등교육법」상의 징계와 관련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에서 규정 단, 법령에는 징계 절차나 기준, 사안조사 방법 등 구체적 사항까지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단위학교에서는 구체적인 징계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학교 규칙 내 학생생활규정으로 생활교육위원회 운영 절차를 마련 하여 운영
- 운영 근거:「초·중등교육법」제18조(학생의 징계) 제1항과 단위학교 '학교 규칙'

근거 「초·중등교육법」제18조(학생의 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근거》「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학교 규칙의 기재사항 등)

- ① 법 제8조에 따른 학교의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 7. 학생 포상, 징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법, 학업 중단 예방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 운영 목적: 민주적이고 인권이 존중받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학교 규칙 위반 학생에게 자발적 성찰과 반성의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을 선도·교육하고 바람직한 교육적 대안을 제시
- 운영 방침: 학생에 대한 징계는 인격이 존중되는 적법한 절차와 교육적 방법을 통해 실시

¹⁾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학생을 삶의 주체로서 인정하는 교육적 가치를 반영하여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서 제시한 "학생생활 지도"를 "학생생활교육(이하 '생활교육')"의 용어로 적용하여 안내하고 있음

III-1



징계(생활교육위원회) 관련 기본 방침 「2022년 학교 규칙 운영길라잡이(교육부)」

- ① 학생징계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합니다.
- ② 징계 사유 및 경위 등을 고려하고, 사안의 경중에 비례하여 징계합니다.
- ③ 징계 사유와 기준 등은 학생생활규정으로 정하고, 그 내용을 준수합니다.
- ④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와 방법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 ⑤ 초중등교육법 상의 징계 심의 등을 위해 각 학교는 "생활교육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합니다.
- ⑥ 학교는 생활교육위원회 개최 전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징계 사유에 대해 사전통지를 합니다.
- ⑦ 생활교육위원회 심의 대상자, 심의 내용 및 결과 등은 공고하지 않습니다.

생활교육위원회 구성(예시)

- 「초·중등교육법, 제18조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학생징계 사안을 심의하기 위해 단위 학교에는 "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 위원회는 위원장, 위원으로 구성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학교 실정과 여건을 고려하여 정함(단, 위원장을 포함한 전체 위원의 수는'○명(또는 인)'으로 학생생활규정에 명시)
 - ※ 위원회는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임
-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교원으로 구성하며, 필요 시 각 학교의 실정에 맞게 전문가 위원, 학부모 위원, 외부 협력위원 등을 위촉할 수 있음
- 위원회 사무처리 등을 담당하는 간사를 두고, 간사는 교원으로 정함
- 위 모든 사항과 그 외의 사항은 관련 법령을 근거로 단위 학교별 학교 규칙을 통해 정함



학교생활규정(학교 규칙) 내 "생활교육위원회 구성" 예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생활규정 예시안(중등)」

제2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는 교감, 생활교육 담당부장(또는 생활교육 담당 교원), 해당 학년 부장, 상담부장, 전문상담교사 (또는 전문상담사) 및 학부모 대표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감으로 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에게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생활교육 담당부장(또는 담당교원)을 간사로 둔다.
- ※ 생활교육위원회의 구성원 수, 직무대행자 및 간사 등은 학교 실정과 여건을 고려하여 편성할 수 있으나 위원장은 반드시 교감으로 정하는 것을 추천함.

생활교육위원회 운영(예시)

-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심의 대상 사안 또는 대상 학생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의에 참여할 수 없으며,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
- 위원회는 출석한 학생과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에게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와 방법 제공
- 위원회 심의 내용은 회의록으로 기록하여 관리
- 위원회 위원 또는 간사 등 위원회 참석자는 심의 내용 및 결과, 그 밖에 사안 또는 해당 학생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누설 금지



학교생활규정(학교 규칙) 내 "생활교육위원회 구성" 예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생활규정 예시안(중등)」

제24조(위원회의 운영) ① 간사의 위원회 개최 요청이 있으면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서 제척된다.
 - 1. 위원이 징계대상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2. 해당 징계 조치에 관여한 경우
- ④ 징계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는 위원이 불공정한 결정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 ⑤ 위원이 제3항 또는 제4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건의 심사·결정에서 회피할 수 있다.
- ⑥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 한다.
- ⑦ 위원회는 징계 사안 심의 전에 간사의 사안 설명 및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의견을 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로부터 청취할 수 있다. 단, 의견 청취는 의견서로 대신할 수 있다.
- ※ 생활교육(소)위원회의 개최 기준은 학교 실정과 여건을 고려하여 규정함

근거 「초·중등교육법」제18조(학생의 징계)

- ① 학교의 장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근거》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14조(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①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 병력, 징계기록, 교육비 미납사실, 상담기록, 성적지향 등의 개인 정보 (이하 "개인정보"라 한다)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III-1

생활교육위원회 사안 처리 절차(예시)

처리 절차

주요 처리내용

사안 발생 및 사안 조사

- 사안 접수 및 사안 내용 확인(초기대응, 객관적인 증거 자료 확보) ※ 학생의 인권,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강압, 회유 금지) ※ 필요시 위원장, 학교의 장 등에게 긴급 보고(구두 및 서면 등)
-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통한 사안조사보고서 작성

사안 보고 및 보호자 상담

- 생활교육위원회 위원장. 학교의 장에게 사안 보고
- 보호자 안내 및 상담
 - ※ 보호자 상담기록 작성(일자 및 시간, 내용 등)

생활교육위원회 개최 여부 결정

- 생활교육위원회 개최(상정) 여부 결정 ▶ 내부결재
 - ※ 단. 위임 전결 규정에 따라 담당 부서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결정
- 위원회 미상정 시 징계 이외의 다양한 학생생활교육 가능 ※ 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 등

생활교육위원회 개최에 관한 서면 통지

- 관련 학생, 보호자에게 **서면 통지 및 의견 진술 기회 보장** ※「초·중등교육법」제18조 제2항에 따라 의견 진술의 기회 반드시 부여
- 생활교육위원회 위원 대상 개최 내용 통지

생활교육위원회 개최

- 개회(정족수 확인, 위원회 절차 및 규칙 안내 등)
- 안건 상정 및 사안 보고(사안별 쟁점 사안 사전 논의 등)
- 관련 학생 및 보호자 의견 진술(의견 진술 기회 반드시 부여)
- 참고인 진술(관련 사실 증언, 선도 요청 사항 등)
- 징계 심의 및 의결
 - 징계의 공정성과 형평성 제고
 - 사안의 경중과 당사자의 반성 정도 등을 고려
 - 병과 조치 불가
- 폐회('징계 의결서' 위원 서명)

학교의 장 징계 결정 심의 결과 통지

- 생활교육위원회 심의 결과(징계 조치)에 관한 학교의 장 결정
- 관련 학생, 보호자 징계 결정 통지(심의 결과 반드시 서면 통지)
 - 징계내용 통지(징계 이행에 관한 사항 함께 통지 가능)
 - 불복절차 안내(퇴학의 경우 반드시 재심청구 안내) ※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징계 시행 공고문 부착 금지

징계(선도) 조치 시행 및 추수 지도

- 징계 조치 시행 계획 수립
- 징계 조치 시행 및 이행 사항 기록·관리(징계 관리 대장)
-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적 노력 ※ 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 등

│ 생활교육위원회 사안 처리 절차 흐름도(예시) │



III-1

Ⅲ-1-1. 학생생활교육 사안(이하 '사안')

사안 유형별 사안 처리 방법의 구분

사안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관련 법령과 학칙에 근거하여 사안 유형별 처리 방법을 구분한다.

|사안 유형별 처리 방법|

사안 유형	위원회	운영 기관	관련 법령
학생생활규정 위반	생활교육위원회	학교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교육활동 침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교육지원청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및 시행령
학교폭력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예방법 및 시행령

^{*}학교폭력 사안은 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없음

🍑 사안 내용 파악 및 사실 여부 확인

사안 처리 초기 단계에서는 해당 신고내용이 사실이 맞는지 사실이라면 학생생활규정 위반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이때 사실 여부의 확인 없이 신고내용을 사실로 가정하여 지도하였을 경우, 해당학생의 억울한 부분을 미처 살펴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 해야 한다.

- 신고내용 확인: 신고자의 신고내용과 사실 여부 확인(오인 신고 여부 확인)
- 학생생활규정 위반 내용 파악:관련자 면담을 통해 사안의 경위와 규정 위반 내용 파악

🍑 현장 지도

사안 발생 시 생활교육 담당교원에게 인계하기 이전, 최초 발견·인지 교원이 사안의 경중을 살펴본 후 위반의 정도가 가벼운 경우 현장에서 다양한 학생생활교육의 방식(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 등)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적 선도를 목적으로 학생에게는 개전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사안 신고 및 접수, 위원장(생활교육위원회) 보고

- 학생생활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 생활교육 담당 부서에 관련 사안 신고 및 인계
- 사안의 신고 및 접수
 - 학교 구성원이 신고한 경우:사안접수대장에 신고내용 기록하고 위원장 및 학교의 장에게 보고
 - 외부인이 신고한 경우: 신고자의 연락처 확보. 위반 학생의 신상. 위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 후 시안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위원장 및 학교의 장에게 보고
- 사안접수대장:신고자/기관, 신고일시, 신고내용, 접수자 등을 기록 후 학교의 장 보고



사안 발생 장소·시간별 사안 처리(예시)

① 학교 밖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안의 경우:

수련회와 같이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일지라도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학생생활규정 위반 행위라면 학교별 학생생활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사안은 생활교육위원회를 통한 학생 선도 절차에 따라 처리 합니다. 단, 학교별 학생생활규정에 의거 학교 내에서만 적용되는 규정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 예시〉'칼, 가위 등의 흉기 소지 불가'(교육활동 중인 경우 장소에 상관없이 적용되는 규정): 징계 가능 '음란물 제작·소지·유포 불가'(장소에 상관없는 규정): 징계 가능 '교내에서는 실내화 착용'(학교 건물에만 국한되는 규정): 징계 불가
- ② 정규교육과정 시간 외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안의 경우:

정규교육시간 외에 이루어지는 활동이더라도 자율동아리, 방과 후 활동과 같이 학교 교육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은 교육활동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해당 시안은 생활교육위원회를 통한 학생 선도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 예시〉'학교 기물파손'(정규교육과정 시간 외에도 적용되는 규정): 징계 가능 '수업 시간 휴대폰 사용 금지'(방과 후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 규정):징계 불가
- ③ 교육활동 중이 아닌 때에 학교 밖에서 발생한 사안의 경우:

학원과 같이 학교도 아니고 교육활동 중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때와 장소에서 발생한 학생생활규정 위반 행위의 경우, 장소와 상관없이 교육활동 이외의 시간에도 적용되는 학생생활규정의 항목인 경우에만 생활교육 위원회를 통해 학생 선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예시) '흡연·음주 금지'(장소와 상관없이, 교육활동 이외의 모든 시간에 적용 가능 규정): 징계 가능 '수업 시간 태도 불량'(학원 수업 시간에는 해당하지 않는 규정): 징계 불가

Ⅲ-1-2. 사안 조사

🍑 관련자 조사

사안 조사의 경우 신고자·목격자·관련자와 면담을 통해 사건 내용을 파악하게 된다. 이때, 신고자·목격자·관련자 간 진술 내용을 비교·분석하며 해당 사건의 객관적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 신고자·목격자 면담:신고내용 및 규정 위반 내용 확인, 목격 정황 파악 및 증언 확보
- 관련 교원·관련자 면담:사건 정황 및 경위 파악
- 규정 위반 학생 및 보호자 면담: 구체적인 사건 정황 및 경위 파악, 해당 사안에 관한 의견 확인
- 사실 확인서(의견서 등):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작성(작성자의 성명, 작성일자 필요)



사안 조사 시 유의 사항

구분	유의 사항		
학생 및 보호자 안내 사항	 사안 접수 사실 및 내용, 생활교육위원회 상정 심의 대상임을 안내한다. 사안 처리 절차, 사안 조사 실시 계획을 사전에 안내한다. 		
인권 존중	 강압 및 거짓 회유에 의한 진술을 받지 않는다. 면담 조사의 경우 가급적 2인 이상의 교원이 참여한다. 사실에 근거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한다. 관련 내용의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별도의 공간에서 조사한다.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관련 내용을 누설하지 않는다. 학습권 보장을 위해 수업 이외의 시간을 활용하여 조사한다. 수업 시간에 사안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사실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경우 수업 시간에 최소한으로 사안 조사를 하되, 추후 보충 수업을 하는 등으로 수업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신상정보 및 관련 내용 누설 금지	• 학생 선도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학생과 신고자, 목격자에 관한 신상정보 또는 관련 내용, 그리고 사안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관련 사실과 내용은 누구든지 외부로 누설 하여서는 안 된다.		
면담 내용 기록	• 학생, 보호자, 관련자와의 면담 일시, 방법, 내용 등을 기록한다(면담일지, 교무수첩 등).		
사실 확인서 작성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하게 한다. 보호자, 대리인에 의한 작성 및 컴퓨터,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것도 인정한다. 단, 해당 학생의 서명이 있는 경우로만 한정한다. 육하원칙에 근거하여 작성하되, 관련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건 정황과 경위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게 한다. 의견 진술의 기회를 보장하고 관련 사안에 관해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여건(공간, 장소, 시간 등)을 마련하여 제공한다. 		

🍑 입증 자료 수집

시안 조사 과정에서 신고자·목격자·관련자 등의 입증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단,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해당 진술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사실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 증거 수집-물증. 증언 확보
- 영상(CCTV 등), 사진, SNS 등의 자료 확보
- 기타(설문조사 등)

사안조사보고서 작성

사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사건 정황, 쟁점 사항을 사안조사보고서에 기록한다.

- 신고자·목격자·관련자의 진술 내용을 비교 및 분석하여 도출된 객관적인 사실을 기록
- 서로 의견이 대립하거나 주장하는 내용이 다르고 객관적인 증거를 찾기 어려운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관련 학생 및 목격자 등의 의견과 주장을 모두 기록
- 행위 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목격자가 증언을 거부하여도 다른 자료에 의해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 근거 자료를 명시하여 관련 내용 기록
- 사건 정황, 사건 경위 파악에 도움이 되거나 평소 행실 및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등 해당 학생의 조치 결정에 참고할 수 있는 의견(참고인: 현장지도교원, 담임교사 등) 기록

사안 조사 결과 보고 및 통지

사안 조사가 마무리되면 생활교육 담당자는 '사안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관련 내용을 위원장,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관련 학생과 보호자가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정보공개를 청구한 학생측(학생과 보호자)이 작성, 제출한 자료만을 공개하고 신고자목격자의 신상정보나 구체적 진술이 기재된 자료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 생활교육위원회 위원장, 학교의 장 보고:사안조사보고서(내부결재)
- 담임교사 및 관련자 통지:사안 조사 내용 통지
- 관련 학생 및 보호자 통지:해당 학생의 사안 조사 내용 통지, 차후 선도(징계) 절차 안내



사안조사보고서의 사안 개요 작성 요령(예시)

[사례] 2025년 00월 00일(○요일) 13시 30분 5교시 수학 시간, 2학년 5반 교실에서 학생 A, B가 교실 벽에 낙서함. 같은 반 친구들이 이를 목격하여 해당 수업 종료 직전 수학 선생님께 이 사실을 신고함. 이에 해당 교원은 수업을 마친 14시 10분경 낙서로 더러워진 벽을 발견하였고 A, B에게 낙서를 지우도록 지도함. B군은 낙서한 사실을 부인하며 해당 교원의 지도에 불응함.

작성 방법	작성 요령		
	① 2025년 00월 00일 5교시 수학 수업 중(13시 30분경) 2학년 5반 교실에서 A, B가 벽에 장난으로 낙서함. ※ [A 주쟁 : 심심해서 장난으로 낙서함(사실 확인서) ※ [B 주쟁] : 낙서한 사실 없음(사실 확인서) ※ [목격자 주쟁] : A, B가 낙서하는 장면을 목격함(사실 확인서)(증거1 : 낙서 사진)		
규정 위반 시간순 정리	② 수업 종료 직전(14시경) 같은 반 목격 학생이 이를 수학 선생님께 신고함. ※ [A 주쟁]: 그때 낙서하는 장난을 그만함(사실 확인서) ※ [B 주장]: 낙서한 사실 없음(사실 확인서)		
	③ 수업 종료 후(14시 10분경) 선생님이 A, B에게 낙서를 지우도록 지도함. ※ [A 주쟁]: 낙서한 사실 인정하고 반성함(사실 확인서) ※ [B 주장]: 낙서한 사실 없는데 지우라고 해서 억울함(사실 확인서)		
	④ A는 지도에 따르며 낙서 지움. B는 지도에 불응함. ※ [B 주장]: 벽에 낙서한 사실이 없으니 지울 이유 없음(사실 확인서)		
규정 위반 사안별 정리	① [낙서] 2025년 00월 00일 5교시 수학 수업 중(13시 30분경) 2학년 5반 교실에서 A, B가 벽에 장난으로 낙서함. ※ [A 주쟁] : 심심해서 장난으로 낙서함(사실 확인서) ※ [B 주장] : 낙서한 사실 없음(사실 확인서) ※ [목격자 주쟁] : A, B가 낙서하는 장면을 목격함(사실 확인서)(증거1 : 낙서 사진)		
	 ② [지도 불응] 2025년 00월 00일 5교시 수학 수업 종료 후(14시 10분경) B는 낙서를 지우라는 수학 선생님의 지도에 불응함. ※ [B 주장]: 낙서한 사실 없는데 지우라고 해서 억울함(사실 확인서) 		
규정 위반	① [A의 위반 행위: 낙서] 2025년 00월 00일 5교시 수학 수업 중(13시 30분경) 2학년 5반 교실에서 A가 B와 함께 벽에 장난으로 낙서함. ※ [A 주정]: 심심해서 장난으로 낙서함(사실 확인서) ※ [목격자 주정]: A, B가 낙서하는 장면을 목격함(사실 확인서)(증거1: 낙서 사진)		
학생별 정리	② [B의 위반 행위: 낙서, 지도 불응] 2025년 00월 00일 5교시 수학 수업 중 2학년 5반 교실에서 B가 A와 함께 벽에 장난으로 낙서함. 수학 수업 종료 후(14시 10분경) B는 낙서를 지우라는 수학 선생님의 지도에 불응함. ※ [B 주장]: 낙서한 사실 없는데 지우라고 해서 억울함(사실 확인서) ※ [목격자 주장]: A, B가 낙서하는 장면을 낙서함(사실 확인서)(증거1: 낙서 사진)		

Ⅲ-1-3. 생활교육위원회 상정 여부 결정

생활교육위원회 상정 협의

사안 조사가 끝나면 담당 부서는 관련 사안에 대한 생활교육위원회 상정 여부를 협의해야 한다. 이때 협의는 사안의 유형, 심각성,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상정하지 않음' 결정 시 학생징계 이외의 다양한 학생생활교육 방안을 마련·적용해야 한다.

- 위반 행위 유형, 심각성,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 '상정하지 않음'으로 결정 시 학생징계 이외의 다양한 학생생활교육 방안 마련
 - 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 등
 - 조언, 상담, 주의,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문제행동 시정을 위한 대안행동, 성찰하는 글쓰기,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 포함)의 과제를 부여할 수 있음. 훈계 시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 방안과 함께 제시

생활교육위원회 상정 여부 결과 보고

학교의 장은 학생징계의 결정권자로서 생활교육위원회 상정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단, 학교별 '위임· 전결 규정'에서 생활교육위원회 상정에 관한 사항 결정을 담당 부서에 위임한 경우 담당 부서의 결재를 통해 상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학교의 장 결재 필요. 단, 학교별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결재 시행 가능(내부결재)
- 학생 및 보호자 통지:해당 학생의 상정 여부 결과 통지. 차후 선도 절차 안내

근거 「초·중등교육법」제18조(학생의 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 ① 법 제1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 1. 학교내의 복사 2. 사회복사 3. 특별교육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5. 퇴학처분
- ④ 교육감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특별교육이수 및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제5호의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외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 2. 정당한 이유없이 결석이 잦은 자
 - 3. 기타 학칙에 위반한 자
- ⑥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 ⑦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학생 및 학부모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 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Ⅲ-1-4. 생활교육위원회 개최

🍑 계회 수립

해당 사안에 대한 생활교육위원회 개최가 결정되면 이에 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때, 관련 학생과 보호자에게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 개최 시기:규정 위반 내용에 관해 소명을 준비할 수 있는 여유 기간을 고려하여 선정
- 개최 일시:학생 및 보호자가 참여할 수 있는 일자 및 시간으로 선정(사전 협의)
- 개최 장소:학교별 비밀이 보장될 수 있는 별도의 장소에서 실시
- 대기 장소: 여러 학생이 관련된 사안인 경우 별도의 개별 대기 장소 마련

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25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 ① 학생에 대한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 기회의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 요청권의 보장 등 인권의 기준에 부합하는 정당한 규정과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다.
-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상벌점제를 포함한 학생에 대한 지도방법의 결정 및 그 집행의 절차에서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C Tip

생활교육위원회 개최 시 준비사항(예시)

목록	준비사항
장소 확보	회의실, 개별 대기 장소
참석 인원 확인	생활교육위원회 위원, 관련 학생 및 보호자, 참고인(담임교사 등)
관련 서류 준비	학교별 학생생활규정, 생활교육위원회 관련 규정, 사안조사보고서, 사실 확인서, 참고인 의견서, 각종 입증자료, 징계 의결서 등
운영 물품 준비	의사봉, 위원용 필기도구, 간사용 노트북(회의내용 기록) 등

생활교육위원회 개최 통지 및 참석 안내

생활교육위원회 개최 일정이 정해지면 개최 관련 내용을 관련 학생과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해당 학생과 보호자가 생활교육위원회 개최 사실과 사안 내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고, 규정 위반 행위에 관해 소명을 준비할 수 있는 여유 기간(10일 이상 권장)을 제공하여야 한다.

- 생활교육위원회 위원장, 학교의 장:개최 사실, 개최 내용 보고(내부결재)
- 위원, 관련자, 참고인(담임교사): 개최 내용 통지
- 관련 학생 및 보호자: 서면 통지(등기우편, 내용 증명 가능), '서면 의견서' 첨부(진술 기회 보장)
- 관련 학생 및 보호자가 소명을 준비할 수 있는 여유 기간을 두고 통지(개최 전 10일 이상 권장)
- 긴급한 사안의 경우, 학생 및 보호자 동의 시 구두 또는 SMS(문자메세지) 등으로 개최 통지 가능(단, 통지 사실, 방법, 내용 등을 반드시 기록)

생활교육위원회 개최 통지 시 학생·보호자 고지 사항(예시)

- ① 위원회 명칭(생활교육위원회)
- ② 상정 대상 학생의 성명
- ③ 생활교육위원회 개최 일시 및 장소(대기 장소 포함)
- ④ 규정 위반 내용(개최 및 참석 사유), 관련 규정
- ⑤ 대리인 선임 가능함을 고지
- ⑥ 의견 진술의 기회임을 고지(단,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을 함께 고지)
- ⑦ 위원회에 불참하고 서면 의견서 또한 미제출 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함을 고지
- ⑧ 위원회 참석 시 신분증 지참 및 소명 추가자료 제출 가능 고지
- ⑨ 의견제출 기관명, 주소

생활교육위원회 개최

생활교육위원회를 통해 학생징계 조치를 심의할 때에는 관련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학교별 「학생생활규정」에 따라 징계의 내용과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 관련 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 및 소명의 기회 부여
- 필요에 따라 참고인 의견 청취 가능
- 법령과 학칙 내에서 징계 조치 의결
- 이중 징계, 병과 조치 불가:동일한 위반 행위에 대하여 거듭 징계하거나 동시에 두 개 이상 조치를 할 수 없음
- 징계 조치 및 절차의 객관성·공정성·형평성 확보를 위한 방안 모색

| 생활교육위원회 절차(예시) |





징계 조치 시 징계 유형별 유의 사항(예시)

징계 유형 유의 사항	
학교내의 봉사	 각 학교 실정과 학칙에 따라 부과 시간을 정하여 실시하되 고사 및 수행평가 등의 평가 기간을 제외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한다. 1일 부과 시간 및 최대 부과 시간의 범위를 정하여 시행하며, '학교내의 봉사' 처분의 취지 및 내용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정한다. 수업 이외의 시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학생 본인 및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학교의 장이 최종 판단하여 수업 시간에 시행할 수 있다. 학생의 학생생활규정 위반 내용 및 정도에 부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학교내의 봉사 조치 이행 시간은 창의적 체험활동의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사과편지 작성은 학교내의 봉사활동에 포함되지 않음(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두 39185 판결)
사회봉사	 1일 5시간 이내, 조치별 15시간 이내의 기간으로 실시하는 것을 권장한다. 다만, 각 학교 실정과 학칙에 따라 부과 시간을 정하여 실시하되 고사 기간을 제외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한다. 1일 부과 시간 및 최대 부과 시간의 범위를 정하여 시행하며, '사회봉사 처분'의 취지 및 내용과 봉사 기관의 운영 내용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정한다. 학교 밖 행정 및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 봉사활동 인정기관, 학교 및 교육지원청 위탁기관에서 실시한다. 담당부서 및 교원은 사회봉사 실시 기관에 학생생활규정 위반 내용과 정도에 부합하고, 반성 및 개전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운영 여부 등에 관해 확인한다. 사회봉사 조치 이행 확인을 위한 이수증 또는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해당 징계 조치 이행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한다(이수증, 확인서 제출 시 출석인정결석 처리). 사회봉사 조치 이행 시간은 창의적 체험활동의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특별교육이수	 조치별 24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실시하는 것을 권장한다. 각 학교 및 위탁기관 등의 실정과학칙에 따라 해당 부과 시간과 일수를 정하여 실시하되 고사 및 수행평가 등의 평가 기간을 제외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한다. 학교 내에서 자체적으로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교육감이 지정·위탁한 기관에서 실시할 수도 있다. 6시간까지는 학교, 6시간 초과부터 외부 특별교육 기관에 의뢰한다. 교육 지원청을 통한 외부기관 연계는 18시간까지 가능하다. 예 특별교육이수 12시간 조치한 경우 단위 학교에서 6시간+외부기관에서 6시간 이수하는 방식으로 진행 담당부서 및 교원은 특별교육 이수기관에 학생의 선도 및 행동 개선, 재발 방지를 위한 적절한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는지 등을 확인한다. 특별교육이수 조치 이행 확인을 위한 이수증 또는 확인서를 제출한다. 해당 징계 조치 이행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한다(이수증, 확인서 제출 시).
출석정지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부과한다. 출석정지 기간에도 학생의 교육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및 교육 방법을 이용하거나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제공할 수 있다. 출석정지 기간에도 담임교사 등은 수시로 학생 및 보호자와 상담을 진행하여 학생의 반성 및 행동 개선을 지원한다.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상황란에 미인정 결석으로 기재한다.

|||-1

징계 유형	유의 사항		
퇴학처분	 퇴학처분은 학생이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엄격히 판단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각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구체적 판단 기준을 학생생활규정으로 마련한다. ①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이 잦은 경우 ③ 그 밖에 학생생활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위원회는 심의 결과 퇴학 조치가 결정된 경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가정학습 기간을 부과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퇴학 조치를 하기 전 가정학습 기간을 부과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 모든 사안의 징계 조치 과정 및 시행 시 교원은 보호자와 상담, 학생과는 학생생활교육(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 등)을 통하여 학생의 반성 및 행동 개선을 위한 활동을 병행할 수 있다.

근거》「초·중등교육법」제18조(학생의 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학생의 징계 등)

- ① 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 1. 학교내의 봉사
 - 2. 사회봉사
 - 3. 특별교육이수
 -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5. 퇴학처분
- ④ 교육감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특별교육이수 및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제5호의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외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 2. 정당한 이유없이 결석이 잦은 자
 - 3. 기타 학칙에 위반한 자
- ⑥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 ②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학생 및 학부모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 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생활교육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 및 통지

생활교육위원회를 통해 해당 학생의 징계 조치가 결정되면 최종적으로 징계 결정권자인 학교의 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되게 된다. 이때, 심의 결과를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 학교의 장 결재:학생징계 조치 최종 결정
- 학생 및 보호자 서면 통지: 등기우편(내용 증명 가능)



생활교육위원회 심의 결과 서면 통지 시 고지 사항(예시)

- ① 처분 제목(생활교육위원회 조치 결정 통지서)
- ② 징계 대상 학생의 성명
- ③ 위반 항목, 처분 근거(초·중등교육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학교 학생생활규정 제○조)
- ④ 징계내용, 징계사유
- ⑤ 재심의·재심 및 행정심판·소송 등의 불복절차(청구 절차 및 기간)
- ⑥ 조치 기관명, 주소

🍑 불복 절차 통지 및 안내

심의 결과를 관련 학생과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경우, 해당 사항에 관한 불복절차²⁾에 대해서도 함께 안내 하여야 한다.

- 재심의·재심 및 행정심판·소송 등의 불복(구제) 제도 및 절차 안내
- 불복 제도 및 절차의 통지는 서면으로 통지

조치 불복 구제 제도

해당 학생 및 보호자는 아래와 같은 불복절차를 통해 학교장의 징계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구분	재심의(再審議)	재심(再審)	행정심판	행정소송
주체	학교 생활교육위원회	서울특별시 학생징계조정위원회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서울행정법원
불복 방식	(국·공립)행정심판· 행정소송 (사립)민사소송	행정심판·소송	행정소송	상소

²⁾ 불복절차: 행정 기관의 처분에 따르지 않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



생활교육위원회 심의 결과 통지 시 학생·보호자 고지 사항(예시)

불복방법 (구제 방법)	내용(안내 사항)		
재심의 (학교)	 학교의 장의 징계 조치 결정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보호자는 조치 결정 통보를 받은 후 5일 이내 1회에 한하여 서면으로 학교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 학생 및 그 보호자는 재심의를 신청할 경우 신청서 서식에 따라 신청 사유 등을 명확히 기재 하여야 함 재심의 신청이 있으면 신청시부터 재심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징계 조치집행을 유보함 학교의 장은 생활교육위원회 조치결정 및 심의 내용, 학생 및 그 보호자의 재심 신청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심의 여부 결정 ※ 재심의 여부 결정은 제소 기간(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등을 고려하여 재심의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재심의 여부 결정 권장 ▶ 안내 사항 아님 재심의 신청이 인용될 시, 생활교육위원회는 재심의 실시 생활교육위원회는 원 조치 절차와 같이 재심의를 하며, 재심의 결과가 원 조치보다 가중될 수 없음 재심의와 관련된 사항(위원 구성, 의결 정족수 등)은 학생생활규정으로 정하여 운영 		
재심 (시·도 교육청)	 징계 처분 중 퇴학 조치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대상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함 재심이 청구되면 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퇴학 조치의 집행이 유보됨 재심청구는 아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함 (1) 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② 피청구인 ③ 퇴학 조치 일자 및 퇴학 조치가 있음을 안 날 ④ 청구 취지 및 이유 퇴학 조치 재심 청구 시 학생에 대한 퇴학 조치 집행은 정지됨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 퇴학 처분에 대한 재심청구의 징계조정위원회 심사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심판청구의 구체적 방식은 「행정심판법」에 따름 		
행정소송	 행정소송의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행정소송의 구체적 방식은 「행정소송법」에 따름 		

- ※ 국·공립학교의 경우 학교장의 조치에 대하여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장의 조치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다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제25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① 학생에 대한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기회의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인권의 기준에 부합하는 정당한 규정과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초·중등교육법」제18조의2(재심청구)

- ① 제18조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 중 퇴학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8조의3에 따른 시·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제18조의3에 따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심사·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 제2항에 따른 심사 절차와 결정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거 「초·중등교육법」제18조의3(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 (이하 "징계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근거》「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의2(퇴학 조치된 자의 재심청구 등)

-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법 제18조의3에 따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이하 "징계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1. 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 2. 피청구인
 - 3. 퇴학 조치가 있음을 안 날
 - 4. 청구의 취지 및 이유
- ② 징계조정위원회는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에게 심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징계조정위원회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청구인, 피청구인 또는 관련 교원 등을 징계조정위원회에 출석 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④ 징계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가 등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근거》「서울특별시학생징계조정위원회 운영규정」제8조 제6항

⑥ 청구인이 재심을 청구하여 피청구인이 이를 알게 된 때부터 징계조정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학생에 대한 퇴학 조치의 집행은 정지된다.



조치 불복 제기 시 징계 조치의 집행 방법

행정심판·소송의 제기	집행정지 결정
별도의 집행정지 결정이 없는 이상	집행정지 결정일부터 집행정지 결정문에 기재된
징계 조치 시행 및 이행	일시까지 징계 조치 집행정지(징계 시행 유보)

근거 「행정심판법」제30조(집행정지)

- ①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續行)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 ② 위원회는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근거 「행정소송법」제23조(집행정지)

- ①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 ②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 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생활교육위원회 조치내용 기록·관리

학교의 장의 최종 징계 결정을 통해 해당 학생의 징계 조치가 결정되면 해당 학생의 징계 사실과 내용을 징계 대장에 기록하되. 관련 내용이 유출되지 않도록 비밀에 유의하여 비공개 문서로 관리한다.

- 징계의 대상, 내용, 수준, 기간, 사유 등 기록
- 비밀에 유의하여 비공개 문서로 관리

Ⅲ-1-5. 조치 이행

징계 조치 이행 계획 수립

최종 징계 결정의 내용을 확인하여 적합한 의뢰·이행 기관을 선정하고 알맞은 이행시기를 선정해야 한다. 단, 출석정지에 대한 이행 계획 수립 시 학습결손 대책을 마련하도록 한다.

- 징계 이행 일자 선정(고사, 수행평가 등 평가 기간 제외)
- 징계 기관 및 담당자 선정에 따른 징계 이행 의뢰
- 징계 이행에 따른 학습결손 대책 마련(출석정지에 따른 학습권 보장)

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④ 교육감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특별교육이수 및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II	р	출석정지에 따른 학습결손 대책 방안(예시)
	방안	내용
	과제 제공	■ 교과별 일정 과제를 수합하여 해당 학생에게 부여
	비대면 수업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 대면 수업 장면 실시간 중계 대면 수업 장면 녹화 후 제공
2	수업 컨텐츠 제공	수업 컨텐츠 제작 후 제공제작된 관련 수업 컨텐츠 제공(YouTube, EBS 등)
E	방과 후 보충학습	■ 방과 후 교과별 보충수업 실시

징계 조치 이행 계획 통지

수립된 징계 조치 이행 계획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관련 학생 및 보호자에게는 서면으로 관련 내용을 통지해야 하다.

- 학교의 장 보고:징계 조치 이행 계획(조치이행 예정 일자, 내용, 방법, 의뢰·이행기관 등)
- 학생 및 보호자 서면 통지:징계 이행 관련 내용(기관, 일시, 장소 등), 유의사항, 보호자 협조 사항 등
- 의뢰·이행 기관(담당자) 통지:관련 내용 통지(사전 협의 및 협조 필요)

🍑 징계 조치 이행

학교의 장의 최종 징계 결정에 의거 해당 학생에게 부과된 징계 조치는 빠른 시일 내에 이행시키도록 한다. 단, 학생과 보호자가 '생활교육위원회 조치결정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징계 조치를 이행시켜야 한다.

- 소속 교원(담임교사 등) 또는 담당교원을 통한 징계 이행
- 담임교사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해당 학생의 출결 사항 안내(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등)
- 학교 밖 위탁기관에서의 징계 이행 시 해당 담당자와의 연락체계를 확보하여 협력
- 징계기록 및 관련 학생의 개인정보 등을 포함한 징계 관련 내용 일체 공고 금지



징계내용 고지 및 공고 금지

징계기록 및 내용, 징계대상 학생의 개인정보 등은 모두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며, 징계 시행과 관련하여 해당 내용을 학교 구성원들이 볼 수 있도록 공고하여서는 안 됨.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제25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피징계자를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이나 방법을 사용하여 징계내용을 공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징계 조치 이행 결과 보고

해당 학생이 징계 조치를 모두 이행하면 관련 이행 결과를 학교의 장에 보고한다. 이때, 징계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학교별 학생생활규정에 따라 징계 조치 미이행에 대하여 생활교육위원회 상정 및 징계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 학교의 장 보고: 징계 조치 이행 보고(내부결재)
- 관련 학생 및 보호자 안내: 징계 조치 이행 완료 사실 안내
- 생활교육위원회 징계 대장 기록·관리(징계내용, 징계 이행 일시 및 여부 등)
- 징계 조치 미이행 시 재차 생활교육위원회 상정 및 징계 가능(단, 근거 규정 필요)
- ※ 생활교육위원회 징계 조치 미이행 또는 불성실한 이행 시 지도 방안 및 생활교육위원회 회부 근거 조항이 학생생활규정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추수 지도

해당 학생징계 조치 이후 업무담당교원 및 담임교사는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관련 학생의 생활 태도를 수시로 관찰 점검하고, 수시 또는 정기 면담과 상담 등을 통해 해당 학생의 태도와 인식변화를 꾀할 수 있는 교육적 노력(추수 지도)을 기울여야 한다.

-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학생 생활 태도 관찰 및 점검
- 수시·정기 면담 및 상담 실시
- 학생생활교육(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 등)을 통한 추수 지도
- 학생의 성찰, 회복, 학교생활로의 복귀를 목표로 한 별도 특별 프로그램 운영 가능

생활교육위원회의 운영 Q&A



Q&A (?)



기존 선도위원회, 학생징계위원회 등 기구의 명칭을 모두 반드시 "생활교육위원회"로 변경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생활교육위원회"는「초·중등교육법」상의 징계를 심의·의결하는 학교의 기구입니다. 그러나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기구는 아니기 때문에 명칭을 반드시 변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Q&A (?)



생활교육위원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심의 대상 사안의 유형에 따라 세 가지 위원회로 구분됩니다.

- "생활교육위원회"는 학교 규칙 위반 사안을 심의하는 징계(선도) 위원회입니다.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 사안 심의를 하는 위원회입니다.
-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학생이나 보호자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심의하는 위원회입니다.



각종 위원회별 사안처리 구분표(예시)

사안 유형	생활교육위원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근거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학교폭력예방법 및 시행령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및 시행령		
사안 유형	학생생활규정 (학교 규칙) 위반	학교폭력	교육활동 침해		
운영 기관	학교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위원회 구성	[재량]학교 규칙으로 정함	[필수]법령에 근거하여 구성	[필수]법령에 근거하여 구성		
징계 조치	[1호] 학교내의 봉사 [2호] 사회봉사 [3호] 특별교육이수 [4호]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5호] 퇴학처분 (퇴학:의무교육 대상 제외)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 (퇴학:의무교육 대상 제외)	[1호] 학교에서의 봉사 [2호] 사회봉사 [3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4호] 출석정지 [5호] 학급교체 [6호] 전학 [7호] 퇴학처분 (퇴학: 의무교육 대상 제외)		
학교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의 시간·일수 상한	상한 제한 없음	상한 제한 없음	상한 제한 없음		
출석정지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	상한 제한 없음	상한 제한 없음		
징계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1항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교원지위법 제25조 제2항		

Q&A (?)

하나의 사안에 대해 생활교육위원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동시에 열릴 수 있나요?



없습니다.

하나의 사안 내용으로 동시에 개최할 수는 없습니다. 사안 유형 및 내용에 따라 해당하는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예시1)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없음' 결정이 있는 경우 동일 사안으로 생활교육위원회 심의를 할 수 없음.



사안 유형에 따른 해당 위원회 구분(예시)

- ① B가 A의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 A 물건을 가져간 구체적인 정황과 내용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 (예시 1) B가 A의 물건을 몰래 가져간 경우 ☜ 절도; 생활교육위원회 회부
- (예시 2) B가 A에게 물건을 주지 않으면 때리겠다고 협박을 하였고. 이에 A가 공포심을 느껴 B에게 물건을 가져가게 한 경우 ☜ 공갈: 학교폭력 사안처리

Q = 04

Q&A (?)



생활교육위원회 징계 양정 기준에 관한 사항도 학생생활규정으로 제정하고, 제·개정 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대상인가요?



네, 맞습니다.

징계 양정 기준도 학생생활규정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절차에 따라 제·개정해야 하고 최종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학교 규칙으로 명문화시켜야 합니다.



근거》「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학교 규칙의 기재사항 등)

- ① 법 제8조에 따른 학교의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 7. 학생 포상, 징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법, 학업 중단 예방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Q&A (?



생활교육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법령에 있는 징계 기준 외 학교별 세부 징계 방법 및 내용도 학생생활 규정에 넣어야 하나요?



네, 맞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를 바탕으로 세부 내용을 학생생활규정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중등학교 학생생활규정 내 징계 기준 및 방법 명문화(예시)

【중등(예시) 2022 학교 규칙 운영 길라잡이(교육부)】

제**조(징계의 종류)**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 1. 학교내의 봉사
- 2. 사회봉사
- 3. 특별교육 이수
- 4. 출석정지
- 5. 퇴학

제○조(징계의 방법) 각 징계 조치는 다음의 내용과 범위에서 시행한다.

- ① 학교내의 봉사
 - 1. 하루 0시간 이내로 하며, 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 2. 수업 이외의 시간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학생 본인 및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수업 시간에 시행할 수 있다.
 - 3. 창의적 체험활동의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② 사회봉사
 - 1. 하루 0시간 이내로 하며, 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 2. 해당 기관의 봉사활동 이수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 3. 사회봉사는 학교 외 행정 및 공공기관 등 봉사활동 인정기관에서 실시한다.
 - 4. 학생은 사회봉사 조치이행 확인을 위한 이수증 또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수증 등을 제출하지 않을 시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 5. 창의적 체험활동의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③ 특별교육 이수
 - 1. 최대 0시간 이내로 하며, 특별교육이수기관과 협의하여 실시 일수를 정한다.
 - 2. 특별교육 이수는 교육감이 지정 또는 위탁한 기관에서 실시한다.
 - 3. 학생은 특별교육 이수 조치이행 확인을 위한 이수증 또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수증 등을 제출하지 않을 시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 ④ 출석정지
 - 1.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시행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 2. 출석정지 기간에도 학생의 교육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호자와 협의하여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운영 하도록 하며, 출석정지 기간에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및 교육 방법을 이용하여 교육을 할 수 있다.
- 3. 출석정지 기간에도 담임교사 등은 수시로 학생 및 보호자와 상담을 진행하여 학생의 반성 및 행동 개선을 지원 한다.
- ⑤ 퇴학
 - 1. 퇴학 조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만 하여야 한다.
 - 가.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전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이 잦은 경우
 - 다. 그 밖에 학생생활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 2. 학교의 장은 퇴학 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학생 및 그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 조(퇴학 처분 전 가정학습 기간) 학교의 장은 생활교육위원회 심의 결과 퇴학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 퇴학 조치를 하기 전에 반성 및 행동 개선을 위하여 10일 이내의 가정학습 기간을 부과할 수 있다.

제○조(징계 사유 및 기준) 징계 사유와 기준은 다음과 같다.

	징계사유		징계 기준				
항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이수	출석 정지	퇴학	
1	상습적으로 미인정 지각, 미인정 조퇴, 미인정 결과를 하는 학생						
2	상습적으로 미인정 결석을 하는 학생						
3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방조한 학생						
4	시험문제를 절취한 학생 또는 대리 시험에 관여한 학생						
5	학교에서 음란물을 소지, 탐독, 배포한 학생						
6	흡연 또는 음주를 상습적으로 한 학생						
7	청소년 유해 약물을 소지 또는 복용 등을 한 학생						
8	교내·외에서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한 학생						
9	학생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상습적으로 출입한 학생						
10	도박, 사기, 불법 상행위 등을 한 학생						
11	공문서를 위조한 학생(진단서, 성적표 등)						
12	학교의 공공기물, 교내 차량을 고의로 훼손, 파손한 학생						
13	흉기를 휴대한 학생						
14	교원 외 학생 교육을 담당하는 강사 등의 교육 활동을 침해한 행위						
15	징계 조치에 불응한 학생						
16	징계 기간 중 위 본조의 규정을 위반한 학생						

근거》「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학교 규칙의 기재사항 등)

- ① 법 제8조에 따른 학교의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7. 학생 포상, 징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법, 학업 중단 예방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에 관한
 -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근거 「초·중등교육법」제18조(학생의 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학생의 징계 등)

- ① 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 1. 학교내의 봉사
 - 2. 사회봉사
 - 3. 특별교육이수
 -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5. 퇴학처분
- ④ 교육감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특별교육이수 및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제5호의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외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 2. 정당한 이유없이 결석이 잦은 자
 - 3. 기타 학칙에 위반한 자
- ⑥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 ⑦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학생 및 학부모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Q&A (?

징계 기준과 내용을 수정하고자 할 때 관련 절차. 적용 시점. 수정 공고 방법이 궁금합니다.



징계 기준 수정 시 생활교육위원회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각 학교의 학생생활규정의 제·개정 절차를 따릅니다. 수정한 징계 기준 내용의 적용 시점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내용에 대해 학교의 장 결재가 이뤄진 이후 부칙에 명시된 시행 시기부터 적용하면 됩니다.

수정 공고는 결재 이후 학교 구성원이 제·개정된 규정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시행 전 충분한 기간을 두고 학교 게시판, 학교 홈페이지, 학교알리미,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사전 공지합니다.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학교 규칙의 기재사항 등)

① 법 제8조에 따른 학교의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9. 학칙개정절차



Q&A (?)



학생 및 보호자에게 생활교육위원회 개최 안내를 하였으나. 학생이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생 및 보호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개최할 수 없는 것인가요?



학생 및 보호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개최할 수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제18조 제2항에서는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는 사안을 조시하는 과정과 생활교육위원회 개최 시에 학생과 보호자에게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의견 진술은 직접 생활교육위원회에 출석하여 구두로 하는 방법 외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학교에서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하고 다양한 의견 진술 방법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생과 보호자가 이를 거부하고 포기할 때는 학교는 '의견 없음'으로 간주하고 생활교육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기간을 정하여 의견 진술이나 제출을 요청하고 위원회 불출석 또는 서면 미제출 시 '의견 없음'으로 처리된다는 점에 대한 사전 안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활

교 육 위

원 회

의

유 영 O

Q&A (?)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가 규정하고 있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초·중등교육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 관련 내용과 그 범위 안에서 학교 규칙으로 정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 등에 따라 징계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통해 민주적인 절차와 인권이 존중되는 사안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근거》「초·중등교육법」제18조(학생의 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0 |

Q&A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 제2항에서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학교내의 봉사 ⇨ 사회봉사 ⇨ 특별교육이수 ⇨ 출석정지 ⇨ 퇴학처분 순으로 낮은 단계부터 징계 조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이 스스로 행동을 반성하고 바뀔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음주를 한 학생의 경우, 처음 적발 시'학교내의 봉사'가장 낮은 단계의 징계 조치를 부과하고, 이후 반복된 음주로 재차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될 경우 그다음 단계의 징계 조치를 순차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바람직 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징계의 단계별 적용이 학생에게는 개전의 기회를 주고, 교육적 선도라는 교육적 취지에 부합하기 때문 입니다. 단순 흡연, 복장 및 근태 불량을 누적하여 한 번에 퇴학처분하는 경우와 같이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지 않는 경우 학생장계조정위원회에 재심청구 시 인용(퇴학처분 취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Q&A (?)

생활교육위원회에서 같은 학생에게 두 가지 징계조치를 동시에 내릴 수 있나요?



없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따라 징계는 병과할 수 없으며, 하나의 사안에 대하여 제1호에서 제5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학생의 징계 등)

- ① 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 1. 학교내의 봉사
 - 2. 사회봉사
 - 3. 특별교육이수
 -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5. 퇴학처분



Q&A (?



학생생활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유로 징계 조치를 할 수 있나요?



징계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학생생활규정을 통해 학생은 위반 사항과 조치 기준을 사전에 숙지하여 위반 행동을 예방할 수 있고, 학교는 학생 징계의 자의적 행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생활규정에 명시되지 않아 학생이 미처 알지 못한 사유로 학생을 징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글거 「초·중등교육법」제18조(학생의 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Q&A (?

징계 기준에 해당이 되는 사안이지만 생활교육위원회에서 징계를 하지 않을 수도 있나요?



위원회에서 징계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생활교육위원회의 첫 번째 목적은 학생의 교육적 선도를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생활교육위원회에서 사안을 심의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징계가 아니라 학생의 교육적 선도입니다. 즉, 해당 사안을 일으킨 학생을 어떻게 지도하는 것이 교육적 목적에 맞는 것인지 검토한 후 징계를 내리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교육적 지도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징계 이외의 다른 교육적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징계의 형평성과 공정성 확보. 학생 지도에 관한 근거와 기준 마련을 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 판단 기준과 학생 지도방안 등을 학교 규칙으로 명시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거》「초·중등교육법」제18조(학생의 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근거》「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⑧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QI

Q&A (?)



징계 시 학년별, 사건별 형평성 있는 징계가 이루어지게 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같은 위반 행위에 교원별 다른 기준과 방법으로 서로 다른 징계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생징계에 있어 교육 3주체가 하나된 교육적 잣대와 기준 마련은 필수적이며 징계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일관된 징계 기준과 방법을 고안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시)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학생, 보호자 및 교원 대상 연수, 학년별 업무 담당자 연수 등

Q&A (?)

11월에 생활교육위원회 개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개최 사유는 해당 학생의 흡연 및 절도이며, 흡연은 9월에. 절도는 10월에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생활교육위원회에서 흡연에 대해서 학교 내의 봉사. 절도에 대해서 특별교육이수 조치를 나누어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사안별로 위원회를 개최하고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 학교가 11월경에 이르러서야 9월의 흡연과 10월의 절도를 인지하였거나 생활교육위원회가 필요하다는 교육적 판단을 하였다면 각 행위를 종합하여 하나의 조치를 부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A (?)



생활교육위원회 심의 결과 퇴학처분이 의결되어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고자 합니다. 이때 가정학습 기간을 반드시 부과해야 하나요?

A 반드시 부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 제6항에서는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 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정학습 기간 부과가 필수는 아닙니다. 단, 학생생활규정으로 퇴학 처분 시 가정학습 기간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생활교육위원회는 퇴학처분을 의결하면서, 가정학습 부과 여부와 기간을 함께 심의하여야 합니다.



근거》「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⑥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영

O

III-2

Q&A (?



퇴학 처분 전에 이루어지는 가정학습은 며칠 동안 부과할 수 있을까요?



10일 이내로 부과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에 관하여 법령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퇴학처분 전 이루어지는 가정학습 기간은 출석정지 처분에 따른 처리 결과와 마찬가지로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나 징계 조치의 의미를 갖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퇴학처분 전 이루어지는 가정학습 기간도 출석정지 처분의 상한 기준에 따라 1 일 이내의 범위에서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가정학습은 퇴학 조치에 앞서 다른 학교에서 학업을 지속하거나 직업교육, 기타 진로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학생의 징계 등)

- ① 법 제1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 1. 학교내의 봉사
 - 2. 사회봉사
 - 3. 특별교육이수
 -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5. 퇴학처분
- ⑥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Q&A (?)



특별교육이수 조치를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제대로 이수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학생이 조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을 별도의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징계 처분 미이수 또는 불성실한 이행"에 대하여 징계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학생생활규정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Q&A (2)

학교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등의 징계 조치를 할 때, 시간과 일수에 상한은 없는 것인가요?



🔼 🕽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상한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학생생활규정으로서 해당 징계 조치의 시간과 일수의 상한을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에서는 각 징계의 종류를 학교내의 봉사 ➡ 사회봉사 ➡ 특별교육이수 ⇒ 출석정지 ⇒ 퇴학 순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를 단계별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 조치의 상한 기준을 정할 때에도 각 징계 조치의 내용과 성격에 맞게 규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내의 봉사 시간과 일수 상한을 길게 규정하여 사실상 특별교육이수 조치나 출석정지 조치보다 과중한 결과가 발생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Q&A (?)



학교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 징계 처분에 따른 실효성 있는 이행 방법 등이 궁금 합니다.



학교내의 봉사는 학교 환경미화 작업, 교재교구 정비, 도서관 정리 등의 교내 봉사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사회봉사는 학교 밖 행정 및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 봉사활동 인정기관(1365 지원봉사포털),학교 및 교육지원청 위탁기관 등에서 실시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소속 학교 관내 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의 사회봉사 기관 연계 신청을 통해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이행시킬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학교통합지원센터에서 안내되는 공문 참고).

특별교육은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뿐만 아니라 학교의 장이 계획한 학교내 특별교육 프로그램이나 외부기관에 위탁교육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허가한 단체의 특별교육 과정 이수,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허가한 특별교육 과정의 이수(약물, 마약, 환각제, 알콜 중독치료 등), 행동과 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심리치료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 교육 이수, 부적응 학생 교육을 위한 대안학교의 교육이수, 상담자원봉사자. 사회복지사 등과 연계하여 1 로 상담 치료를 받게 하는 개별 교육이수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출석정지 기간에도 자기주도학습을 할 수 있도록 과제를 제공하고, 상담 등 특별교육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센터, 대안교육위탁기관 등에 위탁하여 상담·치료 등 특별교육을 제공하고, 출석정지 기간동안 담임교사는 학생이 가정에서 자기주도학습을 하도록 과제를 부여해 학습결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며, 학생 및 보호자와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학생에 대한 생활교육이 공백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O

III-2

Q&A (?



재심의(再審議)신청과 재심(再審)청구는 어떻게 다른 것인가요?



재심의신청과 재심청구 모두 「초·중등교육법」상 징계에 대한 불복방법이라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그러나 위 두 절차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재심청구는 「초·중등교육법」제18조의2에 따라. 「초·중등교육법」상 징계 처분 중 퇴학 조치를 받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시·도징계조정위원회에 청구하는 불복방법입니다.

반면 재심의신청은 재심청구와 달리 법정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학교 자체적으로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이의제기가 있을 시 이에 관하여 재심의를 하는 것으로 학생생활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불복방법입니다.

즉 재심청구는 법정 사항으로 퇴학 조치에 관해서만 청구할 수 있으며 시·도징계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재심의 신청은 학생생활규정으로 정하는 시항으로 모든 징계 조치에 관하여 청구할 수 있고, 이는 학교에서 판단하여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근거 「초·중등교육법」제18조의2(재심청구)

- ① 제18조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 중 퇴학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8조의3에 따른 시·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제18조의3에 따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심사·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 제2항에 따른 심사 절차와 결정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의2(퇴학 조치된 자의 재심청구 등)

-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법 제18조의3에 따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이하 "징계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1. 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 2. 피청구인
- 3. 퇴학 조치가 있음을 안 날
- 4. 청구의 취지 및 이유
- ② 징계조정위원회는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에게 심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징계조정위원회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청구인, 피청구인 또는 관련 교원 등을 징계조정위원회에 출석 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④ 징계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가 등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⑤ 징계조정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Q&A (2)

생활교육위원회 징계 결과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하면 같은 위원회에서 재차 심의하나요?



맞습니다.

같은 위원회에서 재심의 처리를 진행합니다. 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해 학생 및 보호자는 조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학교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학교는 재심의 청구서 서식을 제공하고. 신청 사유 등을 분명히 기재하도록 안내합니다. 단. 위와 같은 재심의는 학생생활규정에서 재심의에 관한 사항을 교정하고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Q&A (?)



재심의 신청을 학생 또는 그 보호자뿐만 아니라 학교의 장도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학교들이 있는데, 학교의 장의 재심의 요청 규정을 삭제해야 하는 것인가요?



삭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학교 단위 재심의는 생활교육위원회 심의에 다른 징계에 대한 불복방법의 하나로 징계 과정에 있어서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고 확대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학교의 장에게 재심의 요청권을 부여하여 행사하도록 하는 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

징계 조치의 최종 결정권자는 학교의 장이므로 학교의 장이 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해 재심의를 요구하는 것이 부자연스럽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Q&A (?)



생활교육위원회에 상정하지 않을 경우 학생징계 이외의 지도방안으로 학생들에게 성찰문을 쓰도록 할 수 있나요?



🔼 학생에게 강제로 잘못을 시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과 타인의 기분을 돌아보기 위한 시간과 기회를 갖도록 하는 교육방법으로서 성찰문을 작성하게 하는 것은 학생 인권에 대한 침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성찰하는 글쓰기를 지도할 수 있습니다.

※ (반성문과 성찰문 차이) 반성문은 어떤 행위에 대한 외부적 판단에 근거하여 학생에게 그 판단을 인정하고 맞추도록 하는 성격이 강한 반면, 성찰문은 학생 내면의 생각이나 감정을 깊이 있게 생각하여 돌아보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행동에 대한 개선점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음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13조(훈계)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 1.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행동
 - 2. 성찰하는 글쓰기
 - 3.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한다)







단 학교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한 학생생활규정 운영은 적절한가요?



학생생활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사안에 비하여 과중한 조치를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동일 학년에 흡연 2회 적발 시 퇴학, 3년간 흡연 누적 3회 적발 시 퇴학, 출결에 의한 퇴학 등과 같이 사안의 경중과 비교하여 과하다고 판단될 수 있는 퇴학처분은 학생생활규정에 따른 것이라도 학생장계조정위원회에 재심 청구 시 인용(퇴학처분 취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령·고시가 정한 학생생활지도의 범위를 벗어난 지나치게 엄격한 규정의 경우 개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학생생활규정을 제개정할 때에는 학생생활규정이 적절한 수준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알리미'(초중등 교육정보 공시 서비스)를 통해 타 학교의 학생생활규정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징계 사유 및 경위, 사안의 경중에 따라 적절하게 징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교풍 확립의 사유라 할지라도 학교 3주체 간 충분한 합의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Q&A (?)



공직선거법이 제한하지 않는 교내 선거운동은 무엇이든 가능한가요?



🔼 학교에서의 질서유지와 학생의 학습권 및 교사의 교육권 보장을 위하여 학교 관리자인 학교의 장이 교육 관계 법령 또는 내부 지침 등에 따라 학교 내 선거운동을 위한 출입을 제한·통제하거나 학교 시설의 이용을 거부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바, 학교 내에서의 선거운동 및 정당활동은 학교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가능할 것입니다. 피선거권 및 정당가입 연령 하향에 따른 정치관계법 운용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체적인 문의는 각 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 민주시민교육 업무담당자 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학교시민교육 업무담당자에게 문의

생활교육위원회 관련 서식(예시)

※ 필요한 경우 서식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음

단계	내 용	서 식
1	사안 발생	【서식 1】학생생활교육 사안접수대장
2	사안 조사	【서식 2】학생 사실 확인서 【서식 3】교직원 사실 확인서 【서식 4】외부인 사실 확인서 【서식 5】생활교육 사안조사보고서
3	상정 여부 결정	【서식 6】생활교육위원회 상정 여부 협의록
4	생활교육위원회 개최	【서식 7】생활교육위원회 출석 및 의견 진술 요청서 【서식 8】학생·보호자 서면 의견서 【서식 9】참고인 의견서 【서식10】생활교육위원회 징계 의결서 【서식11】생활교육위원회 회의록 【서식12】조치결정통지서
5	징계 시행 및 불복절차	【서식13】학생 징계 대장 【서식14】징계 조치 이행 계획서 【서식15】학생 학교내의 봉사 활동 일지 【서식16】학생 사회봉사 신청서 【서식17-1, 17-2】학생 특별교육 이수 의뢰서 【서식18】학교 재심의 요청서 【서식19】학생징계조정위원회 재심청구서
	참고자료	【참고1】학생생활교육 사안 처리 체크리스트 【참고2】생활교육위원회 사안 처리 점검 사항 【참고3】생활교육위원회 회의 진행 시나리오

서식 1 학생생활교육 사안접수대장 [생활교육위원회 업무담당자]

20○○학년도 학생생활교육 사안접수대장

사안 번호	신고자 (기관)	접수 일시	접수자	접수내용 (육하원칙)	관련 학생·보호 자 통보	학교의 장 보고	비고
25-1	○○○경위 (○○경찰서)	2025.00.00	OOO (교원)	2025년 0월 0일 00시경 김○○ 학생이 ○편의점에서 친구들과 함께 흡연할 목적으로 ○담배 한 갑을 구매함	2025.00.00. 00:00 (유선)	2025.00.00. 00:00 (대면)	

[참고] 사안 번호는 모든 관련 서류에 동일하게 작성

서식 2 학생 사실 확인서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업무담당자]

학생 사실 확인서

				0 11	크 국 다시	
성명 / 구분	Ē			□관련자 □목격자	보호자 성명 / 관계	/
학년 / 반			/		본인 연락처	
성별		1	남 / 여		보호자 연락처	
*	사건 경	위, 목격	사실 등	등을 육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세	히 기재하세요.
		뷰 oì	0 0101	ا الألاما	지시이오 하나하니 Irl	
		돈 인	<u>:</u> 는 뉘의	1 네퓽이	사실임을 확약합니다.	
작성일	20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참고]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가능

서식3 교직원 사실 확인서 [교직원→생활교육위원회 업무담당자]

교직원 사실 확인서

성명 / 구년	란		/	□관련자 □목격자	학생	성명	/
소속 / 직칙	4		/		ਖ ′ ਹ	학년 / 반	/
*	선생 경	위, 목격	사실 -	등을 육하	원칙에 의거하	l여 상세히 :	기재하세요.
		본인	<u>민</u> 은 위의	리 내용이	사실임을 확익	합니다.	
작성일	20	년	월	일	작성지	}	(서명)

[참고]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가능

서식 4 외부인 사실 확인서 [외부인→생활교육위원회 업무담당자]

외부인 사실 확인서

				TL: ^	[글 쉭인^	`I	
성명 / 구년	<u>l</u>		/ -	□관련자 □목격자		성명	/
소속 / 직조	4		/		학생		,
연락처						학년 / 반	/
*	사건 경]위, 목격	사실 ·	등을 육하	원칙에 의거하	l여 상세히 7	기재하세요.
		본인	인은 위의	의 내용이	사실임을 확익	합니다.	
작성일	20	년	월	일	작성지	}	(서명

[참고]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가능

생활교육위원회 서식(예시)

서식 5 생활교육 사안조사보고서 [생활교육위원회 업무담당자→생활교육위원회 위원장]

생활교육 사안조사보고서

사안 번호	25-0	학생생활규정	학생생활규정 위반 사항		① 흡연을 하거나 이에 동조한 학생 ② 반복적으로 흡연을 한 학생			
	소속	학년 / 반 (직책)	성명	구분 (위반/관련/	목격)	징계 이	미력	
	00학교	0/0	김○○	위반자 (위반 사실 '		통연 2회/학교내 (20 .0.00.~2		
관련자	○○학교	0/0	이)))	위반자 (위반 사실 불	·명확)	없은	<u>)</u>	
	○○학교	교원	000	관련자 (지도교원				
	○○학교	0/0	박○○	목격자				
	○ 2025년 0월 0일 00시경 김○○ 학생이 ○편의점에서 친구(이○○)와 함께 ○담배 한 갑을 구매함(사실 확인서)(증거1 : 편의점 CCTV 영상). ○ 2025년 0월 0일 00시경 본교 근처 ○아파트 놀이터에서 김○○는 흡연을 하였고 이○○는							
사안 개요	함께 그 자리에 있었음. 이 모습을 지나가던 박○○ 학생이 목격하여 교원 ○○○에게 신고 (사실 확인서).							
	○교원 ○○	○가 즉시 현장	y에 도착하여 ·	흡연 학생을 지	도함(사실	확인서).		
쟁점 사항		흡연 동조 여부 멋이라고 주장힘 시함.						
					징	계 기준		
기네 그리	성명	징계	규정	학교내의 봉사	사회봉시	· 특별교육	출석정지	
징계 규정	김○○	반복적으로 근	흡연을 한 학생			0	0	
	0)00	흡연을 하거나 (이에 동조한 학생		0	0	0	
기타								
작성일	20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첨부] 사실 확인서, 학생 서면 의견서, 보호자 서면 의견서, 참고인 의견서, 기타 입증자료 등

서식6 생활교육위원회 상정 여부 협의록 [생활교육위원회 업무담당자→담당 부서/학교의 장]

생활교육위원회 상정 여부 협의록(필요 시)

제○회 ○○초(중·고) 생활교육위원회 상정 여부 협의록								
사안 번호	25-0	00	일시 / 장소	/				
참석자	교 감 〇〇〇 생활교육부장 〇〇〇 생활교육 교원 〇〇〇 상 담 교 사 〇〇〇		징계 이력	음주 1회/학교내의 봉사 5시간 (20 .0.00.~20 .0.00.)				
협의 대상	성명	학년/ 반	위반 사형	장계 규정				
및 내 용	김○○ ○ / ○		흡연	흡연을 한 학생				

사안 개요

- 2025년 0월 0일 00시경 김○○ 학생이 ○편의점에서 친구(이○○)와 함께 ○담배 한 갑을 구매함(사실 확인서)(증거1 : 편의점 CCTV 영상).
- 2025년 0월 0일 00시경 본교 근처 ○아파트 놀이터에서 김○○는 흡연을 하였고 이○○는 함께 그 자리에 있었음. 이 모습을 지나가던 박○○ 학생이 목격하여 교원 ○○○에게 신고함(사실 확인서).
- 교원 ○○○가 즉시 현장에 도착하여 흡연 학생을 지도함(사실 확인서).

협의 내용

성명	위반 사항	심각성	징계 이력 여부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상정 여부
김○○	<u> </u>	낮음	같은 항목 위반 행위 없음	노0	<u>노</u> 0 표묘	'상정 않음'

종합의견: 일회성 위반 행위(반복, 지속, 해당 행위로 인한 과거 징계기록 없음 등)에 따른 개전 기회 부여

협의 결과

성명	위반 사항	상정 여부	결정 사유	징계 이외 지도 방법
김〇〇	흡연	'상정 않음'	일회성 위반 행위(반복, 지속, 해당 행위로 인한 과거 징계기록 없음 등)에 따른 개전 기회 부여	상담·면담 1시간 (담임교사)

[참고] 최종 생활교육위원회 상정 여부 결정은 학교의 장의 결정에 따라 변동 가능함



서식 7 생활교육위원회 출석 및 의견 진술 요청서 [생활교육위원회→관련 학생/보호자]

생활교육위원회 출석 및 의견 진술 요청서

본 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의거 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니 관련 학생과 보호자께서는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리인 선임을 통한 의견 진술 역시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부득이 출석이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고 출석하지도 않는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합니다.

개최 일시			사안번호	
	개최 장소		대기 장소	
	관련 학생 성명		학년/반	/
개	사안 발생 일시			
최 사	사안 발생 장소			
유	위반 행위 내용			
	관련 규정			
	담당자	교원 〇〇〇	연락처	00-0000-0000

※ 참고사항

- 1. 출석하실 때는 이 요청서,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기타 소명 자료 제출 또한 가능합니다.
- 2. 관련 학생·보호자께서는 회의 당일 출석이 어려운 경우 첨부한 서면 의견서(별지 양식)를 작성하여 OO초등(중·고등)학교 담당교원에게 생활교육위원회 심의 전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문의 사항 및 의견제출 기관 / 주소: ○○초등(중·고등)학교 / ○○시 ○○구 ○○길 00-00, 위 담당자

20 년 월 일

○○초등(중·고등)학교장 (직인)

서식8 학생·보호자 서면 의견서 [관련 학생/보호자→생활교육위원회]

학생·보호자 서면 의견서

사안 번호				
소속 학교		학생 성명		
학년 / 반	/	보호자 성명		
		생활교육위원회에 참석할 대신하고자 의견서를 제출		
※ 사안에	대한 소명, 요구사항 등의	의견을 자유롭게 기재하시	기 바랍니다.	
※ 의견서	를 제출하지 않을 시 진실	울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경	간주합니다.	
	20. 14	0] 0]		
	20 년	월 일	학생	(서명)
		<u> </u>	보호자	(서명)

○○초등(중·고등)학교 생활교육위원회 귀중

[참고]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가능

서식 9 참고인 의견서 [참고인→생활교육위원회]

참고인 의견서

	0			
관련 학생		학년 / 반	/	
참고인 성명		소속 / 직책	/	
관련 학생과의 관계		연락처		
※ 사연	반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i>7</i>	사유롭게 기재해 주시기 바	랍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00초	.등(중·고등)학교	1 생활교육위원회	회 귀중	

[참고]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가능

서식 10 생활교육위원회 징계 의결서 [생활교육위원회 업무담당자→생활교육위원회 위원]

생활교육위원회 징계 의결서

제○회 ○○초(중·고)학교 생활교육위원회 징계 의결서

성명	학년 / 반	의결 사항						
7973	약단 / 번	징계내용	징계 수준	비고				
김00	0/0	특별교육이수	○시간					
0)00	0/0	학교내의 봉사	○시간					

위 조치의결 사항이 이상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직책	성명	서명	직책	성명	서명
위원장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초등(중·고등)학교 생활교육위원회

[참고] 참석위원 자필 서명 필요(참석위원이 전자결재 가능한 경우에는 자필 서명 생략 가능)



서식 11 생활교육위원회 회의록 [생활교육위원회→학교의 장]

생활교육위원회 회의록

제○회 ○○초등(중·고등)학교 생활교육위원회 회의록								
사안 번호	25-	00	일시 / 장소		/			
참석 인원	위원정수 참석위원 불참위원 참 고 연	참석위원 및 참고인	보호	교 원 위 원 OOO, OOO 보호자 위원 OOO, OOO 외 부 위 원 OOO, OOO				
회의 안건	학생생활규정 위반	(흡연 및 동조) 학생	생의 징계 결정	d d				
	성명	학년/ 반	위반 사형	}	징계 규정			
심의 대상 및 내 용	김○○	0/0	반복적 흡	연	반복적으로 흡연을 한 학생			
23	0)00	0/0	흡연 동조		흡연을 하거나 이에 동조한 학생			

회의내용 (발언 요지)

※ 발언자의 내용을 발언 순서대로 발언 요지를 기재하되 의미가 왜곡되지 않도록 유의

위원장 ○○○:

위원 ○○○:

학생 ○○○:

○○○의 보호자:

참고인 ○○○:

회의 결과

성명	학년 /	징계 결정 심의 결과					
79.9	반	징계내용	징계 수준	징계 기간	징계 기관 / 부서 (담당자)	징계사유	
김〇〇	0/0	특별교육이수	○시간	20 .00.00.~ 20 .00.00.	○○학교/ 위클래스 (교원 ○○○)	반복적 흡연	
이 ○ ○	0/0	학교내의 봉사	○시간	20 .00.00.~ 20 .00.00.	○○부 (교원 ○○○)	흡연 동조	

※ 징계내용과 수준은 변경 불가. 단, 징계 기간 및 기관 등은 학교 및 기관의 여건상 변동될 수 있음

기록자

간사 〇〇〇

[참고] 회의 내용을 발언 순서에 따라 기재하고 임의 수정하거나 누락하지 않도록 하되 발언 요지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작성할 수 있음

서식 12 조치결정통지서 [생활교육위원회→관련 학생/보호자]

조치결정통지서

사안 변	<u> </u>						
조치 결정 통	트님 대사	학교명		학년	/ 반	성명	
고시 결정 전	5 T 41 0						
위반 항목 /	처분 근거	상습적 흡연을 한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습적 흡연을 한 학생 / 같은 법 시행령 제31				
				•	학생생활-	규정 ○○조 ○○항	
751 110	징계내용	징계 수준		징계 기간		징계 기관 / 부서 (담당자)	
조치 내용	특별교육 아수	○시간	20 .0	00.00. ~ 20	.00.00.	○○학교 / 위클래스 (교원 ○○○)	
조치 사유	○○시경 본교	2025년 ○월 ○일 ○○시경 ○편의점에서 ○담배 한 갑을 구매한 후, 2025년 ○월 ○일 ○○시경 본교 근처 ○아파트 놀이터에서 흡연을 한 것으로 인정됨. 또한 과거 징계 이력 (흡연 2회)에 따라 반복적으로 흡연한 것으로 인정됨.					
	방법	ਪ ੀ8					
	재심의	본 조치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는 조치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0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학교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					
불복절차	재심		안 날투	부터 10일 이내	에 서울시고	- 날부터 15일 이내, 퇴학 2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18조의2)	
	행정심판 (국·공립만 가능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심판법」제27조)	
	행정소송 (국·공립만 가능	행정소송의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능)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음(「행정소송법」제20조)					
담당자	교원 000	연락치	7		(T. 00-0	0000-0000)	

※ 참고사항

- 1. 문의 사항이 있으면 ○○초등(중·고등)학교 담당교원 ○○○(00-0000-0000)로 연락 바랍니다.
- 2. 재심의(재심) 요청 시 학교 및 관련 기관에 신청 사유를 작성하여 기한 내 해당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3. 기관/주소: ○○초등(중·고등)학교 / ○○시 ○○구 ○○길 00-00, ○○부 담당자 ○○○

20 년 월 일

○○초등(중·고등)학교장 (직인)

서식 13 학생 징계 대장 [생활교육위원회]

20○○학년도 학생 징계 대장

사안 번호	학년 / 반	성명	징계내용	징계 수준	징계 기간	징계사유	이행 여부
25-1	0/0	000	학교내의 봉사	5시간	20 .00.00. ~ 20 .00.00.	흡연	

[참고] 생활교육위원회 징계 조치가 누락되지 않도록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비공개 문서로 관련 징계 내용이 공개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단, 보존기간 30년 보존³⁾이 만료되면 즉시 폐기한다.

^{3)「}학교 공통업무 보존기간 준칙(2025년)」



서식 14 징계 조치 이행 계획서 [생활교육위원회 업무담당자→학교의 장, 관련 학생/보호자]

징계 조치 이행 계획서

사안 번호	25-0	학생생활규정 위반 사항		① 흡연을 하거나 이에 동조한 학생 ② 반복적으로 흡연을 한 학생				
대상 학생 (학년 / 반)								
			징계	이행(시형	H) 계획			
000 (0 - 0)	징계내용	징계 수준	징계 기간 / 시간		방법	징계 기관 / 부서 (담당자)		
(3 3)	학교내의 봉사	○시간	20 .00.00.~20 .00.00. 방과 후 ○시간씩		교내외 환경정화 활동	○○부 (교원 ○○○)		
	징계 이행(시행) 계획							
000 (0 - 0)	징계내용	징계 수준	징계 기간 /	'시간	방법	징계 기관 / 부서 (담당자)		
(0 - 0)	특별교육 이수	○시간	20 .00.00. 00:00 ~ 00:00		상담	○○학교 / 위클래스 (교원 ○○○)		
	징계 이행(시행) 계획							
000 (0 - 0)	징계내용	징계 수준	징계 기간 /	' 시간	병법	징계 기관 / 부서 (담당자)		
(0 - 0)	출석정지	○일	20 .00.00.~20 .00.00. 시험기간 제외		과제 부여 후 가정학습 실시 (가정학습프로그램)	○○부 (교원 ○○○)		
※ 징계내용과 수준은 변경 불가. 단, 징계 기간 및 기관 등은 학교 및 기관의 여건상 변동될 수 있음								

서식 15 학생 학교내의 봉사 활동 일지 [해당 학생→생활교육위원회 담당자]

학생 학교내의 봉사 활동 일지

1. 학생 개요

이 름		규정 위반 내용	흡연
학년 / 반	/	징계 조치 내용	학교내의 봉사
학생 연락처		징계 조치 일수	○시간
보호자 연락처		징계 이행 기간	20~

○○초등(중·고등)학교 ○○부 담당자 ○○○ **☎** 00-000-0000

2. 봉사 일지

일차	활동 일시 (시간)	집합 장소	활동 내용	지도교원 확인	비고
1	20 (○시간)	○층 ○교무실	교내외 환경미화	교원 〇〇〇 (서명)	
2					
3					
4					
5					
	하게 잘한 내용 도교원 작성)				
	일하게 임한 내용 도교원 작성)				

[☞] 활동에 불성실하게 임하거나 미이행 시 학생생활규정에 따라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음

3. 보호자 지도계획(의견서)

학교내의 봉사에 관한 보호자 지도 계획, 가정 지도 내용 등	
보호자 성명 :	(인)

○○초등(중·고등)학교장 귀하



서식 16 학생 사회봉사 신청서 [학교→학교통합지원센터]

학생 사회봉사 신청서

사회봉사는 학교계획에 따라 학교에서 주관하여 시행할 수 있음

1. 학교 정보

		*학교연락처	
		*휴대전화	
*학교	*담당교사	(긴급통화용)	
		이메일	
		팩스	

00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 담당자 연락처:☎ 02-000-0000

2. 학생 개인정보

*성 명			*성 별		□ 남	□ 여	
*생년월일			*학년/	'반			
학생 연락처			*보호자 연락처				
*기능] 법 기.	1순위						
*사회봉사 희망기관	2 순 위						
의장기헌	3순위						
*생활교육 유형 (중복체크 가능)	□ 상습적'□ 상습적'□ 교내봉□ 교내외		□ 시험부정행위 □ 도박, 사기, 불법 상행위 등 □ 학교의 공공기물 등 고의로 훼손 및 파(□ 기타(하단의 사유 작성 필요)				
*사유 및 조치내용 (상세히 기재)	* 시간 단약	 사유: 조치내용: 사회봉사 조치시간 (시간×일) * 시간 단위로 기재함 * 2025학년도 기준 사회봉사 최대 연계시간 변경: 20시간→15시간 					
학생특성에 대한 교사 소견							

3. 참고사항

(동행인 유무,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학교 일정, 기존 사회봉사활동 이력 등)

^{*} 표시가 되어 있는 항목은 필수기재 항목입니다.

〈뒷면〉

본인은 위와 같이 사회봉사 수행을 의뢰하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귀 기관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사회 봉사자로 참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1.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목적
 - 사회봉사 활동 참여 희망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 및 의사 확인 등
-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항목: 이름(교원·학생),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봉사 가능 시기
 - 선택항목:이메일, 희망 분야, 징계 사유 및 조치내용, 학생 특성에 대한 교원 소견
-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원본 자료 및 전산시스템에 입력된 개인정보는 제증명서 발급 등을 위해 3년 보존
 - 사회봉사활동 중단 시 즉시 폐기
-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 시의 불이익
 - 귀하는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 시에는 사회봉사 활동 진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 . . .

학생 보호자 성명: (인)

학생 성명: (인)

사회봉사 수행기관 귀중

III-3

서식 17-1 학생 특별교육 이수 의뢰서 [생활교육위원회 업무담당자→Wee센터]

학생 특별교육 이수 의뢰서(Wee센터 의뢰)

1. 학교

학교명		연락처	사무실:	학교팩스:
담당자명			담당자 이메일:	
			담당자 휴대폰:	

2. 학생 정보

ķ	성 명		성 별	□남 □여	연락처	보호자:			
õ	학년 반	학년 반	생년월일	년 월 일	인덕시	학생:			
	사 안	예: 폭언 및	폭행, 사이버	폭력, 성 사안 등					
	성교육]요여부	□ 성 사안으	로 교육 반	드시 필요함 □ 해당없음	ī				
	학교폭력	□ 2호 -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 3호 - 학교에서의 봉사 □ 4호 - 사회봉사 □ 6호 - 출석정지 □ 7호 - 학급교체 □ 8호 - 전학							
조치 결과	대책심의 위원회 □ 5호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u>일(시간:</u>) 지 □ 5호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치료 (시간:)								
	생활교육 위원회	□ 특별교육	□ 특별교육 <u>일(시간:</u>) 이수(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_	조치시간	예: 18시간						
	별교육 1소기기	의뢰시간	예: 12시간(*학교에서 이수한 조치시간 제외, 6시간 단위로 신청 가능)						
	수신청 수입력)	희망날짜	예: 2025년 3월 13일 ~ 15일, 3일간						
	- 1 H V	참고사항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학교 일정(중간고사, 수학여행 등) 기재						
학생 개인의 특성		학교생활 특성에 관한 교사 소견	예) 학업성취도, 심리·성저적 측면, 생활 태도 등						
중시	식비 처리	중식비 담당	· 가 성명		중식법	기 추후안내			
관련 정보		행정실 정보	전화번호		팩스번	<u>ই</u>			
	20 년 월 일								
	○○초등(중·고등)학교장 (직인)								

- ※ 기관장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하되, 전자문서로 제출 시 관인 생략
- ※ 학교 자체 교육 실시 예정인 경우, 해당 양식을 참고하여 학교의 장 내부결재 실시

서식 17-2 학생 특별교육 이수 의뢰서 [생활교육위원회 업무담당자→Wee센터]

학생 특별교육 이수 의뢰서(학교에서 외부 특별교육 이수기관에 직접 의뢰)

1. 학교

학교명		사무실:	학교팩스:		
1,222 ()		연락처	담당자 이메일:		
담당자명			담당자 휴대폰:		

2. 학생 정보

Z	성 명		성 별	□남 □여	A-1-1	보호자:			
학년 반		학년 반	생년월일	년 월 일	연락처	학생:			
	사 안	예: 폭언 및	폭행, 사이버	폭력, 성 사안 등					
	성교육 !요여부	□ 성 사안으	로 교육 반	드시 필요함 □ 해당없음	ī				
조치 결과	생활교육 위원회	□ 특별교육	<u>일</u> (시	<u>일(시간:</u>) 이수(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조치시간	예: 18시간						
		의뢰시간	예: 12시간(*학교에서 이수한 조치시간 제외, 6시간 단위로 신청 가능)						
	별교육	신청날짜	예: 2025년 3월 13일 ~ 15일, 3일간						
	수신청 수입력)	이수기관 (직접 연계시)	은평청소년경찰학교						
		참고사항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학교 일정(중간고사, 수학여행 등) 기재						
학생 개인의 특성에 관한 교사 소견			예) 학업성취도, 심리·성저적 측면, 생활 태도 등						
_	식비 처리	중식비 담당	}자 성명		중식1	비 추후안내			
관련 정보 행		행정실 정보	전화번호		팩스번	<u>ই</u>			
20 년 월 일 ○○초등(중·고등)학교장 (직인)									

- ※ 기관장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하되, 전자문서로 제출 시 관인 생략
- ※ 학교 자체 교육 실시 예정인 경우, 해당 양식을 참고하여 학교의 장 내부결재 실시

서식 18 학교 재심의 요청서 [관련 학생/보호자→생활교육위원회 업무담당자]

학교 재심의 요청서

	학생	성명		소속	() ইয়	2 ()학년 ()반	
청 구 인	주소							
	보호자	성명		연락처			[학생과의 관계]	
	조치를 받은 날 (학교장 결재일)	Ľ	년 월 일					
	치가 있음을 안 날 지결정통지서 수령일)		년 월 🤉	일				
	징계 조치 내용			징계	조치 사유			
재심의 청구 취지 (목적, 원하는 사항)		<i>※ 생</i> 홀 필요		에 대한 재	심의 청구의 경우	-, <i>A</i>	심의 청구 취지 명시	
ズ	개심의 청구 사유	<i>※ 생</i> 홀 필요		에 대한 제	심의 청구의 경우	-, A)	심의 청구 사유 명시	
ж х	내심의 요청은 본교	학생생활	할규정 제00조에	따라 1회	로만 가능합니다	} .		
	20 년 월 일							
	(청구인) : (인)							
	○○초등(중·고등)학교장 귀하							

서식 19 학생징계조정위원회 재심 청구서 [조치 대상 학생/보호자→학생징계조정위원회]

학생징계조정위원회 재심 청구서

	학생	성명			소속	() 학	교 ()호	ř년 ()변	<u>}</u>
청 구 인	주 소								
ų.	보호자	성명			연락처		[학	생과의 관계	
피청구인	학교명	학교소	00학 ·재지 : 00		학교장 성 명		조 치	퇴호	}
	받은 날 결재일)	20 년	월	일		있음을 안 날 통지서 수령일)	20 મ	를 월	일
청구	¹ 취지	피청구인	[o] <i>2025.</i> .	1. 1.	청구인에 エ	대하여 한 퇴호	· 조치의 최	취소를 구현	합니다.
(요지만 작성하	' 이유 간단하게 고 별지에 히 기술)								
초중등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2에 의하여 재심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기명+날인')

서울특별시학생징계조정위원회 귀중

- ◎ 재심청구 기한은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입니다.
- ◎ 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필요시 자료 및 정보 제출, 학생과 보호자의 출석 진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학생과 보호자가 출석 진술을 원하는 경우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석 진술 가능 여부는 별도로 알려드립니다.

첨부서류 (증빙서류 첨부가능)

- 1. 청구 이유 기재서
- 2. 조치결정통지서
- 3.
- 4.



※ [활용 방법]

본 체크리스트는 학생생활규정 위반 학생에 관한 징계 절차 추진을 위해 제작된 자료입니다. 학교 및 사안의 특성, 상황 및 여건 등에 따라 적절히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학생생활교육 사안처리 체크리스트

		25-○차		
단계	체크 사항	체크 항목	체크 결과	서식
	사실 확인	사건 정황·경위 파악	확인자[] 확인일[]	
	학생 지도	1차 면담 및 학생생활교육	지도자[] 지도일[]	
사 안	사안 접수	신고내용 '사안접수대장' 기록	보고자[] 보고일[]	[서식1] 사안접수대장
발 생		생활교육위원회 위원장, 학교의 장 보고	통지자[] 통지일[]	
	사안 보고	관련 교원, 담임교원, 관련자 통지	통지자[] 통지일[]	
		관련 학생 및 보호자 통지	기록자[] 기록일[]	
	관련자 조사	사실 확인서 작성	확인자[] 확인일[]	[서식2~4] 사실 확인서
	입증 자료 수집	물증·증거 수집	여[] □부	
사 안	조사보고서 작성	사안조사보고서 작성	작성자[] 보고일[]	[서식5] 사안조사보고서
조 사		생활교육위원회 위원장, 학교의 장 보고	보고자[] 보고일[]	
	조사 결과 통지	관련 교원, 담임교사, 관련자 통지	통지자[] 통지일[]	
		관련 학생 및 보호자 통지	통지자[] 통지일[]	
상	상정 여부 협의	생활교육위원회 안건 상정 여부 결정	상정 □ 미상정	[서식6] 상정 여부 협의록
~a 정		(미상정 시)징계 이외 지도방안	지도방안[]	
여	학교의 장 재가	학교장의 상정 여부 결정(내부기안)	상정 □ 미상정	
부 결		관련 교원, 담임교사, 관련자 통지	통지자[] 통지일[]	
정	심의 결과 통지	관련 학생 및 보호자 통지	통지자[] 통지일[]	

		25- ○차			
단계	체크 사항	체크 항목		체크 결과	서식
	계획 수립	위원, 관련자, 학생 및 보호자 참여 가능 일시·장소 선정		선정	
		생활교육위원회 개최 내부기안		기안자[] 결재일[]	
		관련 교원, 담임교사, 관련자 통지		통지자[] 통지일[]	
생활 교육 위	개최 안내·통지	관련 학생 및 보호자 서면 통지		통지자[] 통지일[]	[서식7] 출석 및 의견 진술 요청서 [서식8] 서면 의견서
원 회	징계 심의	징계 조치 심의·의결	_ ;	징계 🗆 없음	[서식10] 징계 의결서
개 최	학교의 장 재가	학교의 장 징계 최종 결정	_ ;	재가 🗆 불허	[서식11] 회의록
	심의 결과 통지	관련 교원, 담임교사, 관련자 통지		통지자[] 통지일[]	
		관련 학생 및 보호자 서면 통지		통지자[] 통지일[]	[서식12]
		불복절차 통지·안내		통지자[] 통지일[]	조치결정통지서
	이행 계획 수립	징계 조치 이행 계획 수립	☐ -	수립	[서식14] 조치이행 계획서
		학습결손 대비책 마련		여[] □부	
		학교의 장 보고		보고자[] 보고일[]	
징	이행 계획 통지	관련 교원, 담임교사, 관련자 통지		통지자[] 통지일[]	
계 시 행		관련 학생 및 보호자 서면 통지		통지자[] 통지일[]	[서식14] 조치이행 계획서
	징계 조치 시행	조치별 징계 이행 여부		이행 🗆 미이행	[서식13] 학생 징계 대장
	징계 이행 보고	학교의 장 보고		보고자[] 보고일[]	
	일세 시성 포고	관련 교원, 담임교사, 관련자 통지		통지자[] 통지일[]	
	불복	징계 조치 불복 여부		수용 🗆 불복	



생활교육위원회 사안처리 점검 사항

추진 단계	추진내용	점검 사항	점검 내용
	사안 구분	사안 유형별 올바른 처리 방법을 적용하였는가?	☞ 생활교육, 학교폭력, 교육활동 침해 사안 구분 여부
01	사실 확인	오인 신고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 신고내용 사실 확인 여부
사안 발생	학생 지도	현장에서 생활교육이 이루어졌는가?	☞ 1차 현장 지도교원에 의한 적시적 생활교육 실시 여부
	사안 접수	신고내용을 사안접수대장에 기록하 였는가?	rs '사안접수대장' 기록 여부
	관련자 조사	강압·회유에 의해 조사하였는가?	☞ 객관적·공정한 시안 조사 실시 여부
02	입증 자료 수집	객관적 입증자료를 수집하였는가?	☞ 증거를 통한 사실 확인 여부
사안 조사	조사보고서	사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는가?	☞ 사건 경위, 정황, 쟁점 사항 포함 여부
	결과 통지	해당 학생의 조사 내용을 보호자에게 통지하였는가?	☞ 해당 학생 조사 내용 통지 여부
03	상정 결정	생활교육위원회 상정 여부를 협의하 였는가?	☞ 시안의 경·중에 따른 생활교육위원회 상정 협의 여부
상정 여부 결정	학교의 장 재가	협의 내용 결과를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였는가?	☞ 학교의 장 재가를 통한 최종 상정 결정 여부
04 생활교육 이의점	계획 수립	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 및 보호자가 참여 가능한 장소와 시간으로 선정하 였는가?	☞ 개최 일시 및 장소의 적절성 여부
위원회 개최	개최 안내·통지	개최 일시, 장소, 상정 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였는가?	☞ 개최 통지 시 서면 통지 여부

추진 단계	추진내용	점검 사항	점검 내용
	개최 안내·통지	학생 및 보호자가 그 의견을 충분히 소명·진술할 수 있는 기회와 방법을 제공하였는가?	☞ 서면 의견서 통지 여부
	징계 심의	징계내용과 방법은 법령과 학칙의 규정 내에서 이루어졌는가?	☞ 법령·학칙에 근거한 징계 결정 여부
04 생활교육 위원회 개최	결과 통지	생활교육위원회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는가?	☞ 조치 내용, 결정 이유, 위반 조항 등 조치 결과의 서면 통지 여부
	불복절차 통지	학생 및 보호자에게 불복절차 및 청구 기간을 통지하였는가?	☞ 불복절차 및 청구 기간의 서면 통지 여부
	학생생활교육 조치 대장 (징계 대장)	징계 관련 내용이 비공개로 작성· 보관되고 있는가?	☞ 징계대상의 비공개 작성·보관 여부
	계획 수립	징계 조치이행에 따른 학습결손 대비책이 강구되었는가?	☞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는 프로그램 실시 여부(출석정지)
	계획 통지	학생 및 보호자에게 징계 시행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였는가?	☞ 징계 시행계획 안내 여부
05 징계 시행	징계 시행	퇴학처분 전 진로상담을 실시하였는가? (고등학교만 해당)	☞ 퇴학처분 전 진로상담 실시 여부
	이행 보고	징계 이행 여부를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였는가?	☞ 징계 이행 여부 학교의 장 보고 여부
	추수 지도	재발 방지를 위한 담임 및 관련 교원의 지속적 생활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rs 지속적 재발 방지 노력 여부

[참고 3] 생활교육위원회 회의 진행 시나리오 [생활교육위원회 업무담당자, 위원회 참석자]

생활교육위원회 회의 진행 시나리오



1 개회

절차	세부 진행 발언	비고
정족수 확인	(위원장) 간사는 성원을 보고해주세요. (간 사) 재적 위원 ○○명 중 ○○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재적 위원 회의 종료 시까지 성원 유지
개회 선언	(위 원 장) 본교 생활교육위원회 규정에 의거 회의 개최 성원이 충족되었으므로 ○○학년도 ○○차 생활교육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인사	(위원장)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번 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2항에 의거 ○○초등(중·고등)학교학생징계에 관한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회의 운영 목적과 규정에 의거 충분히 협의하셔서, 초·중등교육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교육적 선도결정을 내려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② **안건 상정**

절차	세부 진행 발언	비고
주의사항	(위 원 장) 본격적인 심의에 앞서 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위해 몇 가지 안내합니다. (위 원 장) 첫째, 생활교육위원회는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적인 선도를 위한 목적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둘째, 위원들은 사안의 본질과 핵심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교 학생생활규정 제00조 제00항에 의거 생활교육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위원회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대상 학생에 관한 정보, 심의 내용 및 결과, 그 밖의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에 관하여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	유인물을 통한 주의사항 교육 가능
안건 상정	(위 원 장) 다음으로는 본 위원회 심의 안건 상정이 있겠습니다. (위 원 장) 안건 사안 번호 25-00호, ○학년 ○반 ○○○학생에 관한 징계 심의안을 본교 00차 생활교육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합니다.	

③ **제적·회피 여부 확인**

절차	세부 진행 발언	비고
	(위 원 장) 안건 심의에 앞서 위원의 제척, 회피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간사께 서는 생활교육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제척, 회피 사유에 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척·회피	(간 사) 본교 생활교육위원회 제00조 제00항 규정에 의거 제척, 회피 사유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제척, 회피 사유 설명)	
	(***, ***	



절차	세부 진행 발언	비고
제척·회피	2. 해당 징계 조치에 관여한 경우 ② 관련 학생이나 보호자는 제1항 각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으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 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위 원 장)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의할 사안과 관련하여 제척 사유에 해당하시거나 회피하실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척·회피 '해당 없음'	[제착·회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회피 신청이 없는 경우] (위 원) 없습니다. (위 원 장) 제착 사유에 해당하거나 회피하실 위원분이 없는 것으로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위 원) 네. 그렇습니다. (네. 확인하였습니다.)	
제척· 회피 '해당'	[제착·회피 사유에 해당하거나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 (위 원) ○○○위원께서는 본교 생활교육위원회 제00조 제00항 제00호에 제척 (또는 회피)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위원께서는 이 사안을 심의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 원 장) 본교 학생생활규정 제00조 제00항 제00호 규정에 의거 ○○○위원이 제척(또는 회피) 사유에 해당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위 원) 네, 동의합니다. (위 원 장) 본교 학생생활규정 제00조 제00항 제00호 규정에 의거 ○○○위원은 제척(또는 회피) 사유에 해당함에 따라 제척(또는 회피) 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해당하는 ○○○위원께서는 이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착·회피 신청위원은 표결에 참여할 수 없음 제착·회피 시 위원 정족수등 성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유의하고, 제착·회피 해당자는 회의에서 제외

4 사안 보고

절차	세부 진행 발언	
	(위 원 장) 다음은 안건별 사안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 원 장) 위원님들께서는 사안의 내용 및 사안의 경위, 사안조사보고서, 사실 확인서 등을 참고하시고, 조치 결정을 위해 관련 학생 및 보호자에게 확인하실 사항에 대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원 장) 먼저 간사께서는 사안별 사안조사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 사) 네, 사안 번호 25-00호의 조사된 사건 내용 및 경위에 대해 말씀드리 겠습니다.	
	(사안 설명)	
	☞ 사안조사보고서	
사안 보고	사안 번호 25-00, ○○○학생의 '흡연'규정 위반 사안입니다.	
	2025년 0월 0일 00시경 김○○ 학생이 ○편의점에서 친구(이○○)와 함께 ○담배 한 갑을 구매하였습니다. 2025년 0월 0일 00시경 본교 근처 ○아파트 놀이터에서 김○○는 흡연을 하였고 이○○는 함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나가던 박○○학생이 목격하여 교원 ○○○에게 신고였고 교원 ○○○가 즉시 현장에 도착하여 흡연 학생을 지도하였습니다.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매한 CCTV 영상 증거를 확보하였고, 현재 이○○는 흡연할 목적이 없었고 김○○가 함께 가자며 억지로 끌고 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가 흡연할 당시 실제로 이○○는 흡연하지 않은 사실을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간 사)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사안조사보고서와 관련 자료 중에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 간사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내용	(위원의 질의와 간사의 답변)	
확인	☞ 조사 내용 확인	



절차	세부 진행 발언	비고
	(간 사) CCTV 영상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김〇〇도 함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위 원 장) 다음으로는 사안에 대한 주요 쟁점과 관련 학생 및 보호자에게 확인할 질의 내용에 관해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위 원 장) 위원들께서는 상반된 주장이나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학생의 반성	
논의사항	정도, 선도 가능성 및 주요 참고인의 의견 등을 종합할 수 있는 주요 질의 내용과 논의사항에 관해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의 주요 논의 및 질의 사항 협의)	
협의	 (위 원) 이○○는 흡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 원) 이○○가 흡연하지 않았다는 점이 사실로 드러나도 흡연을 하는 친구와 함께 있었던 정황을 볼 때 흡연에 동조한 학생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동조 정황에 대해서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5 관련 학생 소명 및 의견 진술

절차	세부 진행 발언	비고
대리인 참석 확인	(위 원 장) 다음으로 시안 번호 25-00호 관련 학생 및 보호자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당 학생 및 보호자께서 대리인 참석을 요청하였는지 간사께서는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간 사) 네, 알겠습니다. (대리인 참석 여부 확인)	
'대리인 미참석'	[대리인 미참석] (간 사) 사안 번호 25-00호 학생 및 보호자는 대리인 참석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대리인 참석'	[대리인 참석] (간 사) 사안 번호 25-00호 학생 및 보호자는 대리인 참석을 요청하였습니다.	

절차	세부 진행 발언	비고
	(위 원 장)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25조 제1항 '대리인 선임권 보장'에 근거하여 해당 대리인을 사안 번호 25-00호 학생 및 보호자의 대리인으로 참석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위 원) 이의 없습니다.	
	□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25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① 학생에 대한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기회의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인권의 기준에 부합하는 정당한 규정과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학생 및 보호자 (대리인) 입장	(위 원 장) 사안 번호 25-00호 학생 및 보호자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해당 학생과 보호자(대리인)를 본 위원회에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간 사) 네, 알겠습니다. (학생 및 보호자, 대리인 입장)	
	(학생 및 보호자, 대리인과의 인사)	
	(위 원 장) 바쁘신 외중에도 학생의 교육과 선도를 위한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 원 장) 먼저 신원 및 해당 학생과의 관계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학생과 보호자, 대리인의 신원과 해당 학생과의 관계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간 사) 네, 알겠습니다.	해당 학생 및
신원 및 관계 확인	(신원 및 관계 확인)	보호자, 관련 대리인이 아닌
	□	경우 퇴장 조치
	(간 사) 위원장님, ○○○학생과 보호자, 대리인의 신원과 해당 학생과의 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위 원 장) 네, 알겠습니다.	



절차	세부 진행 발언	비고
	 (위 원 장) 신원확인에 이어서 기피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 원 장) 기피 신청에 관한 본교 학생생활규정 제00조 제00항의 기피 사유에 관해 간사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 사) 네, 본교 학생생활규정 제00조 제00항에 의거 당사자의 본 위원회 위원 기피 해당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피 사유 설명)	
기피 신청	 □ ○○초등(중·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제00조(제척·회피·기피) ①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00조 제00호부터 제00호에 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과 관련된 학생의 보호자였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된 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② 관련 학생이나 보호자는 제1항 각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으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간 사) 이상입니다. (위 원 장) 그럼, 학생과 보호자께서는 오늘 심의할 사안과 관련하여 공정한 심의를할 수 없다고 생각되거나 제척 및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이 있다고 생각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척·기피 '신청 없음'	[제착·기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기피 신청이 없는 경우] (학생 및 보호자) 없습니다. (위 원 장) 네. 그럼,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기피 신청하실 위원분이 없는 것으로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학생 및 보호자) 네, 그렇습니다.	

절차	세부 진행 발언	비고
절차 제착·기피 '신청'	## 전형 발언 [제착·기피 사유에 해당하거나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 (보호자) ○○의원을 ~시유로 기피 신청합니다. *** 학생 및 보호자, 대리인의 기피 신청 (보호자) ○○의원은 당일 흡연 학생을 지도했던 선생님으로서 본 사건을 공정하게 심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 원 장) 네, 보호자께서 신청하신 기피 신청은 기피 신청 사유를 바탕으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위 원 장) 이를 위해 본교 학생생활규정 제00조에 의거 ○○의원이 기피 여부 결정을 위한 회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학생과 보호자 (대리인)께서는 기피 여부 결정이 끝날 때까지 잠시 대기실로 이동하시어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에 의해 학생 및 보호자 대기실로 이동) (위 원 장) 이제부터 보호자께서 신청하신 ○○의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협의하겠습니다. (위원 장) ○○의원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간 상호 협의) *** 위원 간 상호 협의 (위 원) ○○의원은 "당일 흡연 학생을 지도했던 선생님으로서 본 사건을 공정하게 심의할 수 없다"라는 해당 학생 측의 기피 신청 사유가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 원 장) 저 또한, 현장에서 지도했던 ○○의원이 해당 학생의 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장계 심의에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 원 장)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위 원 장) 기피 여부 결정은 본교 학생생활규정 제00조에 의거 기피 신청 ○○의원은 기피에 대해 위원들의 의결로 결정됩니다. ○○의원 기피에 대해	비고 기피 여부 결정은 기피 신청 대상 위원을 제외한 위원들의 의결로 결정



절차	세부 진행 발언	비고
	(위 원) 모두 손을 듦(만장일치) (위 원 장) 만장일치로 ○○○위원에 대한 기피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원 장) ○○○위원은 이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학생과 보호자를 다시 입장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간 사) 네, 알겠습니다. (학생 및 보호자 (대리인) 재입장)	
주의사항	(위 원 장) 다음으로 생활교육위원회 주의사항에 관해 설명하겠습니다. (위 원 장) 첫째, 발언하기 위해서는 먼저 발언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위원장에게 동의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욕설, 폭언, 폭행할 경우 퇴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본교 학생생활규정 제00조 제00항에 의거 회의 참석자 전원은 위원회에 참여하여 알게 된 모든 사항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교육적 선도조치를 결정하기 위함임을 알려드립니다. (위 원 장) 이에 따라 학생과 보호자께서는 위원회의 조치 결정에 협조해 주시고, 조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심의(재심) 및 행정심판 등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위 원 장) 그 밖에 위원회 진행과 절차에 관해 질문 있으십니까? (학생 및 보호자의 질문 사항 응답)	주의사항의 경우 별도 유인물 제작·안내 가능
조사 내용 사실 확인	(위 원 장) 다음은 본교에서 조사한 ○○○학생의 사안 조사 내용입니다. 학생과 보호자께서는 관련 내용을 잘 듣고 사실과 다르거나 이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분께서는 ○○○학생의 사안 조사 내용에 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 사)○○○학생의 사안 조사 내용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절차	세부 진행 발언	비고
	(사안 설명)	
	☞ ○○○학생 사실 확인서 (사안조사보고서 일부 활용 가능)	
	사안 번호 25-00, ○○○학생의 '흡연' 규정 위반 사안입니다. 2020년 0월 0일 00시경 김○○ 학생이 ○편의점에서 친구(이○○)와함께 ○담배한 갑을 구매였습니다. 2020년 0월 0일 00시경 본교 근처 ○아파트 놀이터에서 김○○는 흡연을하였고 이○○는함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후 ○○○선생님에게 들켜지도받았습니다.	
	(간 사) 이상입니다. (위 원 장) ○○○학생과 보호자께서는 설명한 ○○○학생의 사안조사 내용이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본 사안에 관해 소명하실 내용이나 의견 또는 질문이 있으실 경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있으실 경우 지금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진술, 질의응답, 추가자료 제출 등)	
	(위원장) 위원님들은 본 사인과 관련하여 확인하실 내용이나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해당 학생과 보호자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학생과 보호자께 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이 이해되지 않으면 재차 질문을 요청해주시고, 답변하기 어려운 내용은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지나치게 긴장하지 마시고, 사실에 근거하여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학생측 질의응답)	
	(위 원 장) 마지막으로 학생과 보호자께서는 이번 사안에 대한 입장과 의견, 소명하실 내용, 요구사항 등에 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및 보호자	(학생 및 보호자 최종 의견 진술 및 소명)	
최종 진술	(위 원 장) 더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학생 및 보호자)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으로 사안 번호 25-00호 학생과 보호자님의 사실 확인 및 의견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절차	세부 진행 발언	비고
사후 과정 및 불복절차 안내	(위 원 장) 성실히 응답해 주신 ○○○학생과 보호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위 원 장) 생활교육위원회의 조치 결정은 서면으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본 위원회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또한 서면으로 통지되며, 궁금하신 내용은 담당교원 ○○○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위 원 장) 고생 많으셨습니다. ○○○ 학생과 보호자께서는 귀가하셔도 좋습니다.	불복절차에 관한 별도 유인물 제작·제공 가능
학생 및 보호자, 대리인 퇴장	(학생 및 보호자, 대리인 퇴장)	

6 참고인 진술

	비고
(위 원 장) 다음은 참고인 진술이 있겠습니다. (위 원 장) 본교 학생생활규정 제00조 제00항에 의거 위원분들께서는 참고인 대상자를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선정은 위원장의 결정 또는 위원회 의결로 선정 가능합니다. (위원들의 참고인 선정 협의) (위 원 장) 위원님들의 협의를 통해 본 사안의 사실확인 및 징계 조치 결정을 위해 ○○학생의 담임교사 ○○○, 상담교사 ○○○를 참고인으로 최종결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없으신가요? (위 원) 이의 없습니다. (위 원 장) 이의 없으시면, 간사께서는 해당 참고인분들이 순치적으로 입장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인 예시 1. 해당 학교 교직원 : 해당 학교의 관리자, 생활교육 담당교사, 담임교사, 학생 보호인력 등을 출석하도록 하여 사안 관련 사실, 관련 학생의 교우관계, 사안 발생 이후 학교생활 태도, 반성 정도 등을 확인할 수 있음. 2. 청소년 상담사 : 관련 학생의 심리상태 관련 등을 확인 3. 특수교육 전문가 : 장애 학생의 인지, 심리, 행동 특성 등을 확인 4. 다문화교육 전문가 : 다문화 학생의 언어 및 문화적 특성 등을 확인 5. 의사, 법률전문가 등도 필요에 따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조언을 구할 수 있음. ※ 유의 사항 : 생활교육위원회 회의는 비공개이므로 참고인은 필요한 때에만 회의에 출석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회의에 참석하거나, 징계 결정에	위원회 개최 이전 참고인 사전 조사 필요

절차	세부 진행 발언	비고
참고인 입장	(위원장) 간사께서는 참고인 ○○○를 입장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간 사)네, 알겠습니다. (참고인 입장)	상황에 따라 개별 또는 집단 의견 청취 가능
신원 및 관계 확인	(위원장) 본 위원회에 참고인으로의 출석 요청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먼저 신원 및 해당 학생과의 관계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참고인의 신원과 해당 학생과의 관계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간 사) 네, 알겠습니다. (신원 및 관계 확인) □ 신원 및 관계 확인 순서 및 방법 1. 신분증을 통한 신상 확인(성함, 생년월일, 주소 등으로 파악) 2. 대면 확인(신분증 사진과 얼굴 대조) 3. 구두 확인 (간 사) 위원장님, 참고인 ○○○의 신원(해당 학생과의 관계)을 확인하였습니다. (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해당 요청 참고인이 아닌 경우 퇴장 조치
주의사항	(위 원 장) 다음으로 생활교육위원회 주의사항에 관해 설명하겠습니다. (위 원 장) 첫째, 발언하기 위해서는 먼저 발언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위원장에게 동의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욕설, 폭언, 폭행할 경우 퇴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본교 학생생활규정 제00조 제00항에 의거 회의 참석자 전원은 위원회에 참여하여 알게 된 모든 사항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교육적 선도조치를 결정하기 위함임을 알려드립니다. (위 원 장) 이에 따라 참고인께서는 위원들의 질문에 있는 사실대로 성의껏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 원 장) 그 밖에 위원회와 관련된 질문 있으십니까? (참고인 질의응답) (위 원 장)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위원들의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사항의 경우 별도 유인물을 제작·안내 가능

생활교육위원회

절차	세부 진행 발언	비고
참고인 질의응답	(위 원 장) 위원들은 본 사안과 관련하여 확인하실 내용이나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해당 참고인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참고인께서는 위원들의 질문이 이해되지 않으면 재차 질문을 요청해주시고, 답변하기 어려우신 내용은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지나치게 긴장하지 마시고, 사실에 근거하여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참고인 응답)	
	(위 원 장)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참고인 ○○○의 이번 사건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 원 장) 참고인 ○○○께서는 이번 사건에 대한 의견이나 소견을 가감 없이 말씀해 주시되,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자신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소견 청취	(참고인 소견 청취)	
611	(위 원 장) 더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위 원 장) 네, 없습니다.	
	(위 원 장) 이상으로 참고인 ○○○에 대한 질의응답 및 의견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참고인 퇴장	(위 원 장) 성실히 응답해 주신 참고인 ○○○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참고인 퇴장)	

7 조치 심의·의결

절차	세부 진행 발언	비고
규정 위반 여부 확인	(위 원 장) 이제부터 학생생활규정 위반 여부에 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원 장) 지금까지 청취한 진술 자료 및 조사·제출자료 등을 토대로 이번 사안의 사실관계를 통한 해당 학생의 학생생활규정 위반 행위의 여부에 관해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간 학생생활규정 위반 행위 여부 협의)	
'조치 없음'	['조치 없음'의 경우] (위 원 장) 사안 번호 25-00호 사안은 (~의 이유로) 위원 협의를 통해 만장일치로 위반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사안에 대한 본 위원회 결정은 재적 위원 ○명 중 ○명의 출석과 출석위원 ○명 중 ○명의 의결에 따른 만장일치로 본교 학생생활규정 제00조에 제00항에 의한 과반수의 의결조건을 충족하였기에, 본 위원회는 해당 사안에 관해 '조치 없음'으로 결정합니다. (图 '폐회'로 이동) [8] '징계 조치 없음' 의결 사항 1. 행위가 학생생활규정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위반 행위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는 경우 3. 위반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생생활규정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징계 조치 없음'으로 의결
'징계 조치'	[규정 '위반 행위'의 경우] (위 원 장) 사안 번호 25-00호 사안은 (~의 이유로) 위원 협의를 통해 본교 학생 생활규정 위반 항목 ○○○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사안에 대한 본 위원회 결정은 재적 위원 ○명 중 ○명의 출석과 출석위원 ○명 중 ○명의 '위반 행위'의결로 본교 학생생활규정 제00조 제00항에 의거 괴반수의 의결조건을 충족하였기에, 본 위원회는 해당 사안에 관해 '본교 학생생활규정 위반 항목 ○○○'을 위반한 것으로 결정합니다. □ ○조등(중·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제00조 제00항(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괴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저구니	게다 고생 바이	ul¬
절차	세부 진행 발언	비고
	(위 원 장) 다음으로 관련 학생에 대한 징계에 관해 논의하겠습니다. 사안 번호 25-00호 ○○○학생에 대한 징계 조치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간 상호 논의)	
	(위 원 장)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징계 결정	(위 원 장) 사안 번호 25-00호 ○○○학생의 징계 조치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위원 ○명 중 ○명이 '사회봉사 5시간' 조치의견을 주셨습니다. 본교 학생생활규정 제00조 제00항에 의거 ○○○학생에 대한 징계 조치로서 재적 위원 ○명 중 ○명이 참석하였고, 참석위원 ○명 중 ○명이 '사회봉사 5시간'에 대한 징계 의견을 주셨기에 본교 학생생활규정 제00조 제00항 과반수의 의결조건을 충족하여 ○○○학생에게 '사회봉사 5시간' 징계(선도) 조치를 결정합니다.	조치 기준 상한선을 넘지 않도록 유의, 병과 조치 불가
	☞ ○○초등(중·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제00조 제00항(징계 방법)	
	학생 선도는 다음 각 항에 따라 실시한다.	
	② 사회봉사	
	3. 하루 ○○시간 이내로 하며, 총 ○시간으로 한다.	
	2. 해당 기관의 봉사활동 이수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3. 사회봉사는 학교 외 행정 및 공공기관 등 봉사활동 인정기관에서 실시	
	한다.	
	(위 원 장) 다음으로는 사안 번호 25-00호 〇〇〇학생의 '사회봉사 5시간' 조치에 관한 이행기관(장소), 이행 기간, 담당교원 등의 세부 내용에 관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 간 상호 논의)	
	(위 원 장)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징계 세부 내용	(위 원 장) 시안 번호 25-00호 ○○○학생의 징계 조치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위원 ○명 중 ○명이 '이행 기간 2020년 00월 00일까지, 이행기관 ○○봉사센터 또는 해당 부서에서 결정'으로 의견 주셨습니다. 본교 학생생활규정 제00조 제00항에 의거 ○○○학생에 대한 징계 세부내용으로 재적 위원 ○명 중 ○명이 참석하였고, 참석위원 ○명 중 ○명이 해당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본교학생생활규정 제00조 제00항에 의거 과반수의 의결조건을 충족하여 ○○○학생에게 '사회봉사 5시간'의 조치에 대해 '이행 기간 2020년 00월 00일까지, 이행기관 ○○봉사센터 또는 해당 부서에서 결정'으로 결정합니다.	
	2017.	

세부 진행 발언	
^^+C/* 75/5/7 5/14/45/777 7/007 7/005//7/7/ HHH/	
☞ ○○초등(중·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제00조 제00항(징계 방법)	
학생 선도는 다음 각 항에 따라 실시한다.	
① 학교내의 봉사	
1. 하루 ○○시간 이내로 하며, ○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2. 대상 학생의 수업결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② 사회봉사	
1. 하루 ○○시간 이내로 하며, 총 ○시간으로 한다.	
2. 해당 기관의 봉사활동 이수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3. 사회봉사는 학교 외 행정 및 공공기관 등 봉사활동 인정기관에서 실시한다.	
③ 특별교육이수 1. 관련 교육 기관의 일정에 따르며,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최대	
○○시간 이내로 일수를 정하여 실시한다.	
2. 특별교육 기관은 다음과 같다.	
가.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	
나. 교육감이 위탁한 기관(금연, 약물, 마약, 환각제, 알코올, 중독치료)	
교육과정 이수	
3.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④ 출석정지	
1.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시행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2. 출석정지 기간에도 학생의 교육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호자와	
협의하여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운영하도록 하며, 출석정지 기간에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및 교육방법을 이용하여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3. 출석정지 기간에도 담임교원 등은 수시로 학생 및 보호자와 상담을	
진행하여 학생의 반성 및 행동 개선을 지원한다.	
⑤ 퇴학처분 1. 티호터브 프로브 디오 7년에 웨드턴트 피에 호텔에 해결에야 한다.	
1. 퇴학처분 조치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가.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나. 기타 학생생활규정을 위반한 자	
다. 기다 약경경들#경을 위한한 시 2. 학교장은 퇴학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학생 및 그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절차	세부 진행 발언	비고
	(위 원 장) 그럼 지금까지 논의된 사안 번호 25-00호 ○○○학생의 징계(선도) 조치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학생생활규정 제00조 제00항에 의거 ○○○학생에 대한 징계 조치로 '사회봉사 5시간', '이행 기간 2020년 00월 00일까지, 이행기관 ○○봉사센터 또는 해당 부서에서 결정'으로 최종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위 원) 이의 없습니다.	
최종 조치 결정	(위 원 장) 이의가 없으므로 사안 번호 25-00호 ○○○학생의 징계(선도) 조치로 학생생활규정 제00조 제00항에 의거 '사회봉사 5시간', '지도교원은 담임교사, 이행 기간 2020년 00월 00일까지, 이행기관 ○○봉사센터 또는 해당 부서에서 결정'으로 의결합니다.	
	(위 원 장) 위원들께서는 위원회 종료 후 본 위원회 의결서 내용을 확인하시고 서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간사께서는 이번 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학교장에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간 사) 네, 알겠습니다.	

8 폐호			
폐회 선언	(위 원 장) 이상으로 00학년도 ○○초등(중·고등)학교 제00차 생활교육위원회를 마치며 폐회를 선언합니다. (위 원 장) 참석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의결서 서명	('징계 의결서'위원 서명)	'징계 의결서' 위원 서명 (전자서명 가능)	



학생생활규정 길라잡이

학생생활규정 길라잡이 (2025 개정판)

IV.

생활평점제

Ⅳ-1. 생활평점제의 이해 ///////100

IV-2. 생활평점제 운영 Q&A //// 103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생활평점제

IV-1

생활평점제의 이해

🥠 생활평점제란?

- 생활평점제4)는 학생의 기본 생활 습관 교육 및 인성 지도를 위한 생활교육 방안으로 도입
- 학생생활규정을 모범적으로 준수하는 학생, 봉사 및 선행활동이 돋보이는 학생에게 상점을 부여하여 그 누계에 따라 다양한 보상을 부여함으로써 바람직한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상점제와 학생생활규정을 위반하는 학생에게 벌점을 부여하고 그 누계에 따라 단계별 선도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학생들 스스로가 자기 행동에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벌점제를 통합한 생활교육 방안

👀 생활평점제의 의의

- 학생들이 학교 규칙을 준수하고 기본 생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생활평점제를 운영할 수 있다.
- 생활평점의 항목과 운영 방안을 정하는 과정에서 학생, 보호자, 교원이 공감대를 형성하여 규칙과 약속이 살아 숨 쉬는 민주적인 학교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다.
- 교원은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 유지를 보조하기 위한 생활평점제를 실시한다.

沙 생활평점제의 목적

대상	생활평점제 목적
학생	 바람직한 생활 태도 자세 및 부정적인 행동 교정 준법정신의 함양, 규정 준수의 생활화 올바른 가치관 확립
학교	 학생의 기본 생활 습관 교육 및 인성 지도 교원과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올바른 존중 문화 교육 3주체의 공감대 형성으로 민주적인 학교 문화 기여

⁴⁾ 생활평점제는 상벌점제, 그린마일리지 등의 용어로 사용되기도 함

IV-1

🧼 생활평점제 운영 원칙

- 학교 자체 시스템 및 상·벌점 운영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단, 시스템을 구축하고 문자발송서비스 등을 활용할 때에는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장치를 확보한다.
- 벌점 과다 학생을 징계할 경우에는 징계 규정에 생활평점제 규정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 단, 생활평점제의 운영 목적은 기본 생활 습관과 인성 지도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생활교육(소)위원회 회부 전까지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반복적으로 위반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생활교육(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할 수 있다.
- 생활평점제는 학교에 따라 교육적 효과를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한다.
- 생활평점제는 상점제와 벌점제를 조화롭게 운영하여 긍정적인 행동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생활평점제 운영 절차(예시)

주요 내용 ■ 생활평점제 세부규칙 제·개정(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절차에 따름) (상·벌점 항목 및 배점은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 준비 ■ 교내 온라인 시스템 구축(선택 사항), 교원 시스템 등록 및 권한 부여 ■ 상·벌점 시행에 필요한 소요 품목(예:카드 등) 준비 ■ 생활평점제 운영 동의서 발송 및 수합 • 학생, 교원, 보호자 대상으로 상·벌점 조항에 대한 교육 (학기 초, 개정 직후 등 수시) 연수 및 홍보 ■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게시물 등을 활용한 홍보 등 ■ 생활평점제 시행 홍보(시범 운영) 기간 운영 ■ 전 교원 상·벌 점수 입력 또는 선정된 담당자에 의한 입력 생활평점제 시행 • 학생별/학급별 상·벌점 누계 통계처리 • 이의 신청 및 의견 진술의 기회 부여 ■ 우수 학생에 대한 포상 및 선행 사항을 생활기록부에 기재 학생 선도 및 표창 ■ 과벌점 학생에 대해서 생활교육(소)위원회 등을 통해 징계 절차 진행

적용의 실제(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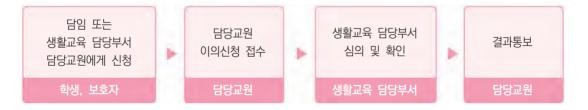
- 1) 준비 단계
 - ▶ 상점과 벌점 항목에 대한 세부 규칙을 제·개정한다.
 - ▶ 상점과 벌점의 배당 점수를 정할 때 편차를 심하게 두지 않는다.
 - ▶ 벌점을 상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이행시 벌점을 차감할 수 있도록 한다.

2) 연수 및 홍보 단계

- ▶ 상점과 벌점 항목 및 운영 규정에 대해 학교 홈페이지 탑재 및 가정통신문 발송, 교내 게시물 홍보 등으로 자세히 안내한다.
- ▶ 상·벌점 부여 절차 및 규칙에 대해서는 사전에 교직원 연수를 충분히 실시하여 운영상의 공정성을 확보한다.
- ▶ 생활평점제 시범 운영 기간을 두고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학생. 교원. 보호자의 이해와 공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3) 생활평점제 시행 단계

- ▶ 가급적 상점 부여를 통한 긍정적 변화를 유도하고 처벌보다는 선도에 중점을 둔다.
- ▶ 모든 교원들이 공정하고 일관성 있게 점수를 부여한다.
- ▶ 이중 부과, 중복 부과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 ▶ 문제 행동 발생 시 학생이 즉시 잘못을 인정하고 수정할 때에는 가급적 벌점을 부여하지 않는다.
- ▶ 생활평점제는 일년 단위로 운영할 것을 권장한다.
- ▶ 누적 상·벌점은 연도별로 말소한다.
- ▶ 서면 또는 구두에 의한 이의신청이 가능하게 한다.



4) 학생 선도 및 표창 단계

- ▶ 학생자치법정, 학교 내 대안교실(Wee 클래스, 성찰교실 등), 관련 제도와 연계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 ▶ 생활평점제는 매 학년도 단위로 운영할 것을 권장한다.

🧼 적용상의 유의점

- 교원은 학생의 상·벌점 해당 행위에 대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상·벌점을 부과하도록 한다.
- 다양한 생활평점제를 운영하여 긍정적 행동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Q &

생활평점제 운영 Q&A



Q&A (2



생활평점제는 꼭 필요한가요?



생활평점제는 학생생활교육 수단의 하나이며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생활평점제의 목적은 학생들의 바람직한 생활 태도 형성입니다.

학생의 문제 행동에 대해 바로 벌점을 부여하지 않고 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 등을 통해 지도한 후 문제행동이. 재발했을 때 벌점을 부여하는 방식 등과 같이 학생들에게 교정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생활 평점제를 활용해야 합니다. 생활평점제를 운영하지 않는 학교에서는 생활교육위원회 등 학생생활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생활평점제에 대한 견해

긍정적 견해	부정적 견해
 학생 스스로 내용을 인지하여 자율적으로 학칙 위반 수준에 대한 관리가 가능 학칙 위반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제도 시행에 대한 신뢰감 상승 	 학생의 인성적인 측면을 점수화하여 평가하는 방식이 바람직하지 못함 벌점은 학생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도록 하는 자극이 되지 못하며 상점은 벌점은 상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됨



Q&A (2



생활평점제를 대체할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생활평점제를 대체할 방법으로 학생생활협약 및 공동체생활협약, 학생자치법정, 학생 생활교육 방법(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 등이 있습니다. 학교 여건과 상황에 따라 학생생활규정으로 제·개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학생생활협약 및 공동체 생활협약

- 학생생활협약은 학생생활규정 중에서 학생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필수적인 사항이나 일상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규칙을 간추려 협약 형태로 정한 것을 의미함
- 공동체 생활협약은 학생, 교원, 보호자가 각 주체별로 공동체 생활협약 내용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하여 협약안을 정하는 것을 의미함
- 운영의 장점
 - 학생들이 생활협약 제정 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규칙을 만드는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생각을 가질 때, 규칙을 지키는 문화가 형성됨
 - 생활협약을 통해 교원과 학생, 보호자가 지향하여야 할 공동선을 충분히 인식하면 교육 3주체가 학교생활에 애착과 관심이 발생함
 - 학생들이 스스로 만든 생활협약을 지킬 때 준법정신이 향상되어 민주주의 사회의 바람직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음

학생자치법정

- 경미한 학교 규칙 위반 학생들에게 교원이 벌을 부과하거나 생활교육위원회에서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자치 법정을 개최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긍정적인 대안행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
- 학교 규칙을 위반한 학생에 대해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학생자치법정을 개최하여 긍정적 행동 실천, 개선 의지 표현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학교의 생활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높이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기르도록 함
- 운영의 장점
 - 학교생활에 필요한 규정의 제·개정 및 운영과 해석에 이르기까지 학생들이 참여함으로써 학생자치의 의미를 높이는 계기가 발생함
 -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며 갈등 상황에 대한 문제해결 방식을 폭력과 같은 부정적 방법이 아닌 규범적 개념에 따라 해결하려는 의식이 함양됨

🥟 교원의 학생생활교육에 관한 고시에 따른 생활교육 방법

- 조언: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정보를 제공 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
- 상담: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체의 소통 활동
- 주의 :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
- 훈육:학교의 장과 교원이 지시, 제지, 분리, 소지 물품 조사,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 행위
- 훈계: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 행동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깨닫게 하는 지도 행위
- 보상: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
- ※ 생활교육의 구체적 방식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 참고



Q&A (?

생활평점제의 바람직한 운영 방향은?



생활평점제는 학생징계에 반영하기 위한 근거 자료가 아닌 학생 스스로 문제행동을 인식하게 한 후 교정의 기회를 제공하여 바람직한 생활태도가 형성되도록 해야 합니다.

▶ 운영 방향

- 생활평점제 목적의 개선
- 현재 생활평점제는 학생들의 바람직한 생활태도 형성을 위한 목적과 달리 학생징계에 반영하기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있음. 학생생활규정 위반에 따른 처벌을 위한 벌점 부여가 아니라 학생 스스로 문제행동을 인식 후 교정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운영해야 함
- 생활평점제 규정의 개선 방안(항목의 최소화 예시)

질서	 실내 소란행위(고성방가) 복도 및 계단에서 뛰기 급식질서 위반(새치기, 식기 및 잔반처리 미흡)
수업	수업태도 불량수업준비 미비상습적인 과제 불이행
복장	 교복 변형(길이 및 폭 변형) 교복 미착용 교표, 명찰 미부착 블라우스, 와이셔츠 노출 등
물품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학칙으로 정하여 소지·사용을 금지한 물품

• 안전사고 우려 및 질서 위반 ■ 수업태도 미흡 ■ 규정에 맞지 않는 복장 착용 ■ 제한 물품의 소지

- 교원의 교육활동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한다는 가치를 표현함과 동시에 그 외의 학교활동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보장해주겠다는 의미 포함
- 벌점 부여의 세부 규칙 마련은 상황에 따라 같은 교원이 학생별로 다르게 벌점을 부여하거나 혹은 교원들 간에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음

Q 04 Q&A (?)

생활평점제를 운영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생활평점제의 항목과 운영 방안을 정하는 과정에서 학생, 교원, 보호자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민주적 합의와 합리적 절차를 통하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 현장에서 물리적·정신적인 체벌을 대신하여 학생의 기본 인권을 존중하기 위한 제도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교원은 상·벌점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학생에게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상·벌점을 부과하는 사유를 반드시 안내해야합니다.

생활평점제에 명시된 항목에 대한 벌점만 부여해야 하며, 벌점 부과 시 상황에 따라 학생 행동 개선에 대한 별도의 생활교육 적용도 필요합니다.

다양한 상점제를 운영하여 긍정적 행동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상·벌점을 부여하는 경우에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운영 방안

구분	내용
생활평점제 계획 단계	 생활평점제 규정 제정 시 학생 및 보호자의 적극적 참여 유도 학생들이 수긍할 수 있는 생활평점제 규정의 제정 교육 3주체 간의 다양한 의견 교환 및 협의를 통한 생활평점제 운영 계획 수립
생활평점제 운영 단계	 교원(지도를 하는 입장)과 학생(지도를 받는 입장) 간의 인식 차이를 최소화하는 운영 방안의 마련 벌점 부여보다 상점 활용의 강화 생활평점제 운영에 대한 교원들의 적극적 참여 상·벌점 부과 시 공정성과 형평성 강화

▶ 운영 시 고려할 점

- 생활평점제 운영과정에서 학교 구성원들 간의 인권친화적 관계를 지원하며 학교 구성원 전체가 주체의식을 가지고 운영에 참여한다.
- 생활평점제를 생활교육 차원에서만 바라보지 않고 교육과정과 특별활동, 수업방식 속에서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학교생활 전반의 과정에서 지도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학생 생활교육의 문화를 개선한다.
- 학생, 교원, 보호자가 협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이를 수렴하여 더욱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생활평점제가 운영되도록 한다.
- 생활교육과 관련하여 '지도를 하는 입장'과 '지도를 받는 입장' 간의 인식 차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한다.

- 벌점을 부여하기보다는 상점을 활용함으로써 보다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유도한다.
- 공정성과 객관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교원들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일관된 적용이 필요하다.
- 학교 실정에 맞게 학생들이 수긍하고 따를 수 있는 생활평점제 규정을 제정한다.
- 학교 자체 상·벌점 운영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제·개정 운영 유의점

- 생활평점제가 필요한 경우 및 생활평점제 각 기준에 대해 수정 사항이 있는 경우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절차를 따른다.
- 생활평점제를 운영 중인 학교에서 교육 3주체가 이를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절차를 거쳐 폐지할 수 있다.
- 생활평점제 제·개정 과정에서 교육 3주체의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결정하며, 결과와 내용은 모두에게 공유되어야 한다.

Q&A (?)



생활평점제 세부항목 구성 시 고려사항은?



생활평점제 벌점 항목에 학교폭력, 학생인권 침해, 교육활동 침해, 이중 부과, 이중 처벌 등의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학교폭력	 학교폭력은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며 생활교육위원회 회부 및 벌점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학교폭력 관련 규정 예시
	1. 학생간 싸움이나 학생에 대한 괴롭힘 2. 학생에 대한 집단 폭행 모의, 선동, 직접 가담행위 3. 학생에 대한 금품 갈취
	 속옷 색깔을 규정하거나 여학생 치마만 허용 등 교육활동과 무관하며 인권침해 요소가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권침해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 규정 예시
CCG	1. 속옷의 색깔은 비치지 않는 백색 착용 2. 교복 미착용(※ 남학생은 바지, 여학생은 치마 착용만 허용한 경우 인권침해 우려) 3. 여학생은 흰색 양말만 착용
교육활동	■ 교육활동 침해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절차 및 「교원지위법」등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침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 예시
	1.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정신적·물리적 폭력 행위
이중 부과	■ 학생생활규정에 생활교육위원회 징계 대상인 항목을 생활평점제 벌점 부여 등으로 이중 부과 및 이중 처벌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특히, 생활교육위원회에서 징계 및 벌점을 부여받았으나 과벌점 대상으로 재차 생활교육위원회를 통하여 이중처벌이 내려지면 안 됩니다. 단, 정량적으로 1차 벌점 부여, 2차 생활교육위원회 상정(교내봉사), 3차 생활교육위원회 상정(사회봉사 등)은 가능합니다.
이중 처벌	이중으로 벌점 부여 및 징계 대상 항목 예시
	1. 고사 중 부정행위 2. 게임 아이디 해킹, 아이디 불법 거래, 주민등록번호 도용

Q&A (?

생활평점제 상벌점 항목 수정은 어떤 절차에 따라 하나요?



생활평점제 상벌점 항목 수정은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에서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절치를 따릅니다.

▶ 생활평점제 제·개정 절차

• 학교 구성원의 발의, 설문조사·개정 요구 사항에 대한 토론·공청회·투표 등 의견수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확정, 공포·시행의 과정으로 진행

▶ 생활평점제 제·개정 시 유의점

- 상벌점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학생들의 눈높이를 반영
- 🥟 생활평점제 상벌점 항목 수정 절차는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절차 참고

Q 07 Q&A (?)

생활평점제와 관련된 내용을 학생과 보호자에게 공지해야 하나요?



생활평점제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학교 규칙으로 항목뿐 아니라 운영 방법과 절차까지 학생과 보호자에게 공지되어야 합니다.

🎤 운영 원칙

- 생활평점제가 의미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제도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므로 학교는 제도의 구체적인 사항을 보호자에게 안내하기 이전에 제도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구성원들과 공유해야 한다.
- 생활평점제 관련 사항은 책자, 홈페이지, 게시물의 형태로 구성원들이 확인하기 쉽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 생활평점제를 포함한 모든 학교 규칙은 반드시 제·개정 즉시 그 내용을 공시해야 함(NEIS 정보공시 참조)
- 상벌점 항목은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이 명확한 표현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 생활평점제와 관련된 규정이 개정될 때마다 학생 및 보호자에게 공지함으로써 불이익을 예방해야 한다.
- 생활평점제가 학생징계, 포상 등 다른 영역과 연계되는 경우 이를 분명히 밝혀 안내해야 한다.

학생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할 사항(예시)

제도의 목적

■ 제도의 취지와 목적

운영

- 상벌점 부여 절차: 부여 주체, 방법, 제한사항(부여 횟수 등)
- 점수의 활용: 징계, 포상 등 연계 사항
- 상벌점 확인 및 이의제기

■ 항목과 점수

상벌점 항목

〈예스	>	
	상점 항목	점수
1	0000000	3
2	0000000	2
3	00000000	1
	벌점 항목	

	상섬 항목	섬수
1	0000000	3
2	0000000	2
3	00000000	1
	벌점 항목	
1	00000000	1
2	00000000	3
3	0000000	3

V-2

Q&A (?

생활평점제 벌점 누적에 의한 징계도 생활교육위원회를 통해 결정해야 하나요?



벌점 누적에 의한 징계 또한 학생에 대한 징계 사항이므로 학생생활규정에 따라 징계를 결정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생활교육소위원회' 등 담당 부서 내 소규모 자체 위원회를 통해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이때에도 징계 과정은 절차를 갖추어 진행되어야 합니다.

🦫 운영 워칙

- 벌점으로 인한 징계 절차 이전에 징계 대상 학생의 벌점 항목 및 점수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 벌점에 따른 자동 징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반드시 생활교육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 조치를 결정한다.
- 생활교육소위원회를 통하여 징계 조치를 부과하더라도 위원회 개최, 징계 사유, 위원회 참석, 징계 결과, 처분 내용, 재심(의) 안내 등에 대해 학생생활규정에서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생활평점제 벌점 항목과 징계 규정의 항목이 중복되어 이중으로 조치가 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 운영 사례

■ 고등학교 예시

생활평점제

제00조(운영 및 결과 처리)

- ① 상점과 벌점은 학년도 단위로 운영하여 다음해에 소멸된다. 단, 재학 중에는 기록 · 보관한다.
- ② 학생은 벌점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생활교육부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벌점을 상쇄하여야 한다.
- ③ 생활평점제는 교육적 목적으로 운영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생활교육위원회에 징계대상자로 상정된다.

1. 벌점 ○○점 이상 : 학교내의 봉사

2. 벌점 ○○점 이상 : 사회봉사

3. 벌점 ○○점 이상 :특별교육 이수

4. 벌점 ○○점 이상 : 출석정지

〈생활평점제 상·벌점 기준표(예시안)〉

□ 상점 항목

내용	상점 항목	상점
교내·외생활	 학교전체를 위해 열심히 일했다고 인정될 때 급우들에게 도움을 주었다고 인정될 때 	1-3 3
기타	• 수업 적극 참여	1

□ 벌점 항목

내용	벌점 항목	벌점
용의 복장	교복 미착용, 가방 미지참교복 착용 상태 불량, 슬리퍼 신고 등교	3 2
교내·외생활	 음주 및 술 소지 절도 행위 학교 기물 파괴 및 훼손 도박 및 외설물 소지 	15 15 15 10
출결 상태	• 미인정 결과/조퇴	3
수업 태도	• 면학 분위기 저해 행위 (학습태도불량, 타인학습방해 등)	5

- 해당 상·벌점 기준표는 예시안이므로 학교 상황에 맞춰 활용할 수 있음
- 벌점 누적으로 인한 징계 사항을 징계기준표에 명시함
- 이중 부과 및 이중 처벌이 되지 않도록 필요한 경우 벌점에 해당하는 항목을 징계기준표에 삽입



Q&A (?

생활평점제의 민주적 운영 방법은?



학생자치에 기초한 생활평점제 규정 제정, 학생 선택의 벌점 경감 제도 마련, 생활평점제 정보 제공 방법 개선 등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생활평점제의 항목과 운영 방안을 정하는 과정에서 학생, 교원, 보호자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하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생자치에 기초한 생활평점제 규정 제정

• 학생자치를 통해 규정을 만들고 이를 생활평점제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학생들을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시키는 행위는 학생들 스스로 생활교육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로서 인식하게 함으로써 지발적으로 규정을 준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수 실천 사례로서 학생회가 규정 및 생활평점제 규정의 개정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이행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근거 「초·중등교육법」제17조(학생자치활동)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30조(학생자치활동의 보장)

학교의 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한다.

학생 선택의 벌점 경감 제도 마련

- 생활평점제의 운영은 벌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람직한 생활태도 형성을 위하여 학생 스스로 벌점 경감을 위한 행동을 선택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 학생 자신의 문제행동에 대해 경중을 판단하고 다시 한번 반성하며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평점제 정보 제공 방법 개선

- 교원의 경우 생활평점제 운영의 일관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 어떻게 운영하고 개선할 것인지에 연수를 통하여 서로 의견을 나누고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학생의 경우 학기별 1회 이상(권장) 명시적인 대면교육을 통하여 일괄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채 벌점을 받게 되면 자신이 어떤 행동을 교정해야 하는지 알 수 없어 교육 효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 보호자의 경우 가정통신문, SMS(문자메세지), 알림서비스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상벌점 부여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Q 10 Q&A (?)

생활평점제 운영 학교의 실제 사례를 알 수 있을까요?



생활평점제를 운영하는 학교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아래의 사례는 참고용이며 학교 알리미(초·중등 교육정보 공시서비스)와 같은 누리집을 통해 생활평점제 운영학교의 실제 운영 규정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상·벌점 누적에 따른 학생 지도 사례

■ ○○중학교 예시 참고

- 1. 상점 누적 관리
 - 가. 상점 관리
 - 1) (상점부여) 상점기준표에 따라 상점을 부여
 - 2) 한 학기당 상점 누계 15점 이상 20점 미만 시상(학교 차원 반영)
 - 3) 한 학기당 상점 누계 20점 이상 시상(학교 차원 반영)
 - 4) 학교생활기록부 행동발달상황란 예시 내용기재
 - 나. 상점 누적에 따른 벌점 상쇄
 - 1) (벌점부여) 학교 내·외에서 문제 행동 발생 시 즉시 현장 지도 상황에 따른 적합한 행동 부과 / 벌점 적용
 - 2) 벌점 누계 15점 이상일 경우 학교 상황에 맞는 선도 활동
 - 3) 활동 종료 후 벌점 상쇄서에 벌점, 날짜, 활동 내용을 기입한 후 확인 서명을 받음
 - 4) 벌점상쇄서를 생활교육부에 제출
 - 5) 학년말 기준으로 벌점을 ()점으로 미 상쇄시, 학교생활기록부 행동발달상황란 예시 내용 기재
- 2. 과벌점학생 선도절차: 학생생활규정의 징계 기준 및 절차에 근거하여 교육 실시
- 3. 적용상의 유의점
 - 가. 방침
 - 1) 상·벌점은 상·벌점 관리프로그램 또는 관리카드에 체계적으로 기록하여 관리한다.
 - 2) 전체 교원이 참여하여 공정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한다.
 - 3) 상·벌점은 상·벌점 기준표에 의거하여 부여함으로써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 4) 학생들이 '생활평점제 운영에 관한 규정'의 기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도록 사전지도를 철저히 한다.
 - 5) 공정하고 정확한 생활평점제 정착을 위해 학생, 교원,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추진방법, 내용 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수정·보완한다.
 - 6) 학생들의 준법정신과 질서 의식, 봉사 정신을 함양하도록 지도한다.

V-2

나. 상점

- 1) 자발적인 선행을 한 학생에게는 상점을 부여하고, 일정한 점수에 도달하면 시상한다.
- 2) 상점으로 벌점을 상쇄할 수 있도록 한다.

다. 벌점

- 1) 벌점부과로 지적된 행동은 즉시 수정하도록 한다.
- 2) 벌점부과로 지적된 행동을 수정하지 않을 경우, 학생의 보호자를 내교하도록 하여 담임교사 및 생활교육부 담당교원과 상담 및 지도를 받도록 한다.
- 3) 위 항의 지도조치에도 불구하고, 행동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을 경우, 생활교육위원회에 상정하여 징계 기준에 따라 지도한다.
- 4) 벌점이 누적된 학생은 벌점 상쇄 절차에 따라 벌점을 상쇄한다.
- 5) 벌점이 20점을 초과할 경우 징계 기준에 따라 징계한다.
- 6) 벌점기준표 이외의 사안에 대해서는 학생생활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라. 벌점상쇄

- 1) 해당 학년도에 받은 벌점은 해당 학년도 내에 0점으로 상쇄하여야 한다.
- 2) 위 항과는 별도로 생활교육부장이 교육적 목적을 위하여 벌점상쇄기간을 특별히 지정할 수 있으며, 벌점누적 학생은 그 기간 내에 벌점을 상쇄하여야 한다.
- 3) 벌점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상쇄할 수 있다.
 - 가) 상점으로 상쇄
 - 나) 환경정화활동(시간 당 1점) / 과제물수행활동(1편 당 1점) / 정서함양활동
 - 다) 학교 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 라) 해당 학년도의 벌점을 모두 상쇄하지 않을 경우, 규정에 따라 지도하고 벌점은 소멸된다.

마. 적용

- 1) 학기 말에는 학년별로 상점 최우수자 5명을 선정하여 소정의 상품을 주어 칭찬한다.
- 2) 상·벌점 집계 점수에 따라 최초벌점 15점 이상에 도달한 학생이 발생한 경우 담임교사가 현재 상황을 알려주고 개전을 위한 성찰 기간 일주일을 부여한다. 성찰 기간 내에 개전이 이뤄지지 않으면 벌점 15점 이상의 모든 학생은 생활교육위원회에 상정한다.

바. 상·벌점 열람

- 1) 학생 개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다른 학생의 열람은 제한하도록 한다.
- 2) 생활교육부장 및 기획, 학년부장은 학생 생활교육을 위해 열람할 수 있다.
- 3) 각 학급 담임교사는 해당 학급 학생의 상·벌점을 열람할 수 있다.

4. 기대효과

- 가. 교원과 학생 간의 무리한 생활교육에 따른 감정적인 마찰의 감소로 학교 구성원들의 활기차고 즐거운 학교생활 정착
- 나. 생활평점제 시스템을 통한 학생들의 자율성과 준법정신 함양
- 다. 상·벌점 프로그램을 통한 단위학교 생활교육의 효율성과 책무성 증대
- 라. 학생들의 생활태도에 대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학생교육에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생활교육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학생생활규정 길라잡이

학생생활규정 길라잡이 (2025 개정판)

V.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생활규정 예시안

V-1.	[太三]	학생생활규정	예시하	/////120

V-2. [중등] 학생생활규정 예시안 //// 134

V-3. 학생생활규정 예시안 Q&A 147

V-4. 학생생활규정 예시안 관련 서식 166

V-5. 학생생활규정 예시안 현장 적용 사례 183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생활규정 예시안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생활규정 예시안은 2017년에 처음 만든 이래로 2020년부터 매년 개정을 거쳐 2023년 제정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반영하여 학교현장에 맞게 다시 개정한 것입니다. 학생생활규정의 제·개정은 교육 3주체가 중심이 되어 학교 상황에 맞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 예시안은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생활규정 예시안 제시 목적

- 학생인권을 존중하는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으로 민주시민 의식 학양 및 인권 존중의 학교 문화 정착
- 제·개정에 참고할 수 있는 예시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학교의 자율성도 함께 존중

학생생활규정의 내용

• 학교 규칙은 학교라는 조직 내에서 그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규범들의 집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는 각호에서 학교 규칙으로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제7호부터 제9호에 해당하는 '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이 학생생활규정에서 규정하는 부분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 규칙의 기재사항 등) ①법 제8조에 따른 학교의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 1.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 2.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 3. 교과·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
- 4.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퇴학·수료 및 졸업
- 5.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 6. 수업료 · 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 7. 학생 포상, 징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법, 학업 중단 예방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 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5)
- 9. 학칙개정절차
- 10.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너울특별시교육청 학생생활규정 예시안



-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은 교육 3주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별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음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제4항)(단, 학업 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은 제외)
- 생활평점제는 제개정을 통하여 학생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교육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학생에 대한 징계는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정당한 규정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

학교구성원별 학생생활규정의 의의

- 학생에게는 학습권을 폭넓게 보호하면서, 학교 내·외에서 학생 행동의 범위를 정하는 법규이자, 학생들이 여러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해가는 학생자치활동의 원동력
- 보호자에게는 보호자로서 학생의 학교생활교육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갖도록 하는 기본적인 안내서 역할
- 교원에게는 학생에 대한 교원의 학교생활교육 기준으로써 학생의 잘못된 행동을 교육하는 규범이자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지원하는 수단이며, 학생 및 보호자와 소통하고 공감대를 넓혀가는 역할

•) 법적 근거

-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제13조(보호자)
-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 규칙), 제18조(학생의 징계),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 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31조(징계),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 서울특별시학생인권조례
- 교원의 학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학생생활규정 예시안 구조

- 제1장 총칙
- 제2장 학생생활교육
- 제3장 생활교육위원회 운영 및 징계
- 제4장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규정

학교규칙(학칙)의 제·개정 절차에 따라 '학생생활규정'이 제·개정되었고, 학교규칙의 다른 부분과 상충되는 규정은 없는 지 확인 필요

⁵⁾ 제8호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은 본 예시안에 포함하지 않음

V-1

[초등] 학생생활규정 예시안

제1장 학생생활규정 총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의 이름은 '○○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이고 '생활규정'이라고 간단히 쓴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과 관련한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들이 공동체 속에서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 의식을 가지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의식을 갖추어, 학생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근거) 이 규정은 「대한민국 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 및 「서울특별시학생인권조례」(이하 "조례") 등에 근거하여 학생생활규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4조(기본 원칙) ① 이 규정은 학교생활에서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무차별의 원칙, 최선의 이익 원칙, 생존·보호·발달의 원칙, 참여의 원칙을 적용한다.

- ②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③ 이 규정은 자의적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명확한 용어로 분명하게 제정되어야 하며, 학생인권에 대한 제한은 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제한을 하는 경우에도 학생 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5조(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 2. "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3.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 4. "학생생활교육6"이란 자신의 삶의 주체로서 학생이 일상의 전반에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일련의 모든 교육 활동을 말한다.
- 5. "조언"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6. "상담"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든 소통 활동을 말한다.
- 7. "주의"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8. "훈육"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지시, 제지, 분리, 소지 물품 조사,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 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9. "훈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깨닫게 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10. "보상"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6) 「}고시」 "제2조(정의)" 4항에서 "학생생활지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지도 행위(이하 "생활지도"라 한다)를 말하며,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학생을 삶의 주체로서 인정하는 교육적 가치를 반영하여 "고시"의 '학생생활지도'를 '학생생활교육'의 용어로 안내함

지도 행위를 말한다.

- 제6조(교육 3주체의 책무) ①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교육을 존중하고 따르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1. 다른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인권 존중
 - 2. 학교공동체 구성원 간에 합의된 학교 규범의 준수
 - 3. 다른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신체적 · 언어적 폭력의 금지
 - 4. 다른 학생의 학습권 존중과 수업활동에 대한 방해 금지
 - 5.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수업 및 생활지도 등)에 대한 존중 및 방해 금지
 - 6. 휴기, 마약, 음란물 등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해하거나 학습권을 침해하는 소지품의 소지 금지
 - ③ 학교의 장("학교의 설립자, 경영자 및 법인" 등을 포함)과 교원은 생활교육을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학생 및 교원과 보호자 가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교육을 위하여 시설,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 ⑤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교육을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 제7조(보칙) 이 규정에 적혀 있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위원회와 생활교육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제2장 학생생활교육

- 제8조(생활교육의 범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업 및 진로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가.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 나.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 및 사용
 - 다.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보거 및 안전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가.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 나.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다.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인성 및 대인관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가.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 나.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 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8조1항부터 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가.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 나.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 다. 비행 및 범죄 예방
 - 라.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 **제9조(생활교육의 방식)**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이 학생생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방식으로 학생생활을 교육할 수 있다.
 - 1. (조언)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이 때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문제 개선을 위하여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 2. (상담)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상담은 수업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하지만 아래의 경우 상담을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 가.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 나.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 다. 근무 시간 외의 상담
 - 라. 폭언, 협박, 폭행 등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3. (주의)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육활동 중 학생이 위험한 행동을 하거나 자신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 수업 중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상황 등에서 학생에게 지적과 경고 등의 주의를 줄 수 있다. 이 때,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 4. (훈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거나 조언, 주의 등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경우, 법령과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하는 경우, 지시, 제지, 분리, 물품 분리보관 등의 훈육을 할 수 있다. 특히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수 있고, 이후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 5. (훈계)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생활교육에 따른 조언, 상담, 주의,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말과 행동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이 때 학생에게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하며, 대안 행동, 성찰 글쓰기, 훼손된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한다) 등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 6. (보상)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 제10조(학습할 권리) ① 학생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 도움을 받으며 학습하고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키워갈 권리가 있다.
 - ② 학생은 교원의 수업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자신과 친구들의 학습을 위해 힘써야 한다.
- 제11조(휴식시간) ①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발달을 위하여 적절한 휴식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의사에 반하여 정규 교육 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을 실시하는 등으로 학생의 휴식권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 제18조에 따라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학생을 특정 장소로 분리할 때에는 학생의 휴식권이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제12조(머리모양이나 옷차림 등 차림새)** ① 학생은 자신이 원하는 옷차림이나 머리모양, 액세서리 등을 하여 개성을 실현할 권리가 있다.
 - ② 학생은 차별적인 문구나 그림이 담긴 옷을 입거나 액세서리 등을 착용해서는 안 된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으며, 지도에 관한 사항은 학생이 참여한 학생생활규정의 제·개정 절차를 거쳐 정할 수 있다.

너울특별시교육청 학생생활규정 예시안



- 제13조(정보통신유리) ① 학생은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인권과 정보, 사생활을 존중·보호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하여야 한다.
 - ② 학생은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 ③ 학생은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 및 불법 유해 매체물을 소지하거나 유통해서는 안 된다.
 - ④ 학생은 사이버 도박과 같이 위법한 방법으로 영리를 취하기 위해 인터넷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제14조(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①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정보통신 기능을 가진 휴대용 전자기기"를 포함)를 사용 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전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한 경우 학생에게 주의 등 제9조에서 정하는 방식의 생활교육을 할 수 있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휴대전화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휴대전화를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이러한 주의 및 훈육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 ※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생활규정을 근거로 교육활동 과정에서 휴대전화의 소지·사용 시간과 장소를 정할 수 있다. 다만, 이와 관련된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시에는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 제15조(물품 소지 제한과 분리 및 소지품 검사)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한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단, 2회 이상의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학생이 가지고 다니거나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학생으로부터 해당 물품을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단. 교육활동을 위해 허락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 1.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 성냥. 라이터. 폭죽 등 불을 일으키거나 잘 타는 물질(인화성 물질), 칼, 장난감 총, 레이저 포인터 등 날카롭거나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맞혀 다치게 할 수 있는. 기타 다른 사람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 2.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담배. 술 등 어린이가 이용할 경우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물건, 음란물 등
 - 3. 그밖에 교육과 상관없고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험하게 만들 수 있는 물건, 도박과 관련된 놀이 도구 등
 - ③ 물품에 따른 분리 요건·기간장소·방법 등은 아래 표에 따른다.

[예시7)]

	분리요건	분리기간	분리장소	분리·보관방법				
1 호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수업 시간	교실 지정 장소 (파손·분실 위험이 적은 장소)	 1회차: 주의 실시 2회차: 주의와 함께 분리할 수 있음을 알림 3회차: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 수업 종료 후: 학생에게 되돌려줌 				
2 호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3일	교무실 (교실 외	• 지도교원은 분리보관 사유, 기간, 반환 방법 등을 해당 학생에 알림 ↓				
3 호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 —	(교실 외	(교실 외	(교실 외	(교실 외
4 호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3일		 물품 분리보관 사안(일시, 경위, 반환 방법, 폐기 관련사항 등) 보호자에게 알림([서식 20] 활용) ・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간 경과 후 보호자에게 되돌려줌 ↓ ・ 보호자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⁸⁾ 가능 ([서식 21] 물품 폐기 확인서) 			

- ※ 제15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는 반환의 대상은 보호자로 한다.
- ※ 폐기의 경우는 소유물 포기의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보호자의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단, 문자메세지(SMS), 유선 연락 등 통상적인 연락을 여러 번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하지 못한다면 폐기할 수 있다.
- ※ 주의 및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예시 :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행동, 성찰하는 글쓰기, 훼손된 시설 및 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 포함)].
- ※ 물품 분리 보관 지도에 관한 사항은 담임교사, 생활교육위원회 등이 유기적으로 업무를 연계

※ 본 예시는 참고 자료로 활용하며, 분리장소 지정 등에 대해 단위 학교 여건에 맞게 정하여 실시

- ④ 교원은 제3항에 따라 분리 및 보관을 한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⑤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⁹⁾가 있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¹⁰⁾

제16조(학교생활) 학생들은 모두가 학습에 집중하고 평화롭고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수업이나 방과 후 수업, 그 외 교육활동이 끝나면 바로 하교해야 한다.

⁷⁾ 예시는 참고 자료로 활용하며, 단위 학교 여건에 맞게 정하여 실시

⁸⁾ 물품을 폐기하는 경우 학생 및 보호자의 의견을 듣고 진행함으로써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⁹⁾ 해당 학교 구성원이나 CCTV에 의해 학생의 소지·사용을 금지한 물품을 목격 및 구체적인 소지 신고가 있거나 절도 등이 명확히 식별되었을 경우, 자해 또는 자살 등의 가능성이 있는 물품 소지 신고가 들어왔거나 목격한 경우, 약물 오·남용 등의 가능성이 있거나 목격한 경우

¹⁰⁾ 단, 불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불특정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 조사는 실시할 수 없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생활규정 예시안



- 2. 학생은 등하교시 승용차를 이용할 경우에는 주정차가 불가능한 어린이 보호 구역을 지나 지정된 일시 승하차 구간에서만 내리도록 한다. 단, 몸이 불편한 학생은 교문 안에서 내릴 수 있다.
- 3. 등교 후 마음대로 교문 밖으로 외출(조퇴)하지 않는다. 단, 필요할 때에는 담임교사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외출(조퇴)할 수 있다.

※ 단, 외출 및 조퇴의 허가 방식은 학교 실정에 따른다.

- 4. 수업 시간 중에는 수업 장소에서 교사의 허락 없이 나가지 않는다.
- 5. 복도에서 오른쪽으로 다니기, 차례 지키기, 실내에서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기 등 예의를 지킨다.
- 6. 장소에 따라 실내화와 실외화를 구분하여 신는다.
- 7. 다음 각 목의 사항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와 상의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해당 교사와 함께 활동할 수 있다.
- 가. 실외 활동 시간에 교실에 남고자 할 때
- 나. 교내에서 외부인과 만나고자 할 때
- 다.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 라.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 ※ 학교 실정에 맞게 학생 생활에 필요한 내용을 학생, 보호자,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안전상의 이유로 통학로를 지정하거나, 자전거로 통학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조항을 추가할 수 있다.
- 등교는 정해진 통학로를 이용해야 한다.
- 학생은 등하교시 자전거 이외의 이동 수단을 사용하지 않는다.
- 자전거름 이용하여 등하교할 때는 반드시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지정된 자전거 거치대에 안전하게 보관 하다.

제17조(동아리활동) ① 학생은 자율적으로 동아리를 만들고 활동할 수 있다.

- ② 동아리활동을 위한 학교 공간 사용이나 시간은 담당 교원과 상의하여 결정한다.
- ③ 동아리가 구성되면 학교에서 적절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④ 동아리 운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동아리 운영 규정에 따른다.

제18조(교육활동 중 학생 분리)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예시]11)

생활교육	요건	분리장소(시간)	절차 및 방법	학습지원	
1호 수업 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 이동	수업 중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가 있어 2회 이상의 주의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한 경우 ¹²⁾	교실 내 다른 좌석 등 수업 교원 지정 장소 (수업 시간 내 일부)		해당 좌석 및 위치에서 앉거나 선 상태에서 교원의 지시에 따라 수업 참여	
2호 수업 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	1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수업을 지속해서 방해하여, 교육활동 진행이 심각하게 어려울 경우 ¹³⁾	사물함 앞, 교실 뒤편, 운동장 스탠드, 강당 뒤편 등 (수업 시간 내 일부)	 단, 실외 공간일 경우 공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분리 위치를 교원이 정할 수 있음 학생이 교육활동에 참여하 고자 하는 의사를 보일 때 복귀를 지시할 수 있음 		
3호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가. 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계속해서 방해할 경우 나. 교사에게 욕을 하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신체적으로 위협을 가하는 경우 다. 수업 중 학생 간 신체적 폭력이 발생하여 교사가 정당한 지도를 했음에도 수업 진행에 어려울 정도로 진정되지 않는 경우 라. '가, 나, 다'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교무실 등 (수업 종료 시까지)	교원이 학생보호인력에게 학생 인계 요청 해당학생은 학생보호인력과 함께 학교별 지정 장소로 이동 보호자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필요시 추수 지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안내	행동성찰문 ¹⁴⁾ ,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4호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가. 위 제3호의 지도에 의한 분리를 했음에도 지도감독 교원의 지시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나. 위 제3호 지도에 따른 분리에도 불구하고 1일 이내 재차 수업을 방해하거나 교사의 신변을 위협하는 행동을 한 경우	교무실 등 (쉬는 시간, 점심 시간, 정규수업 종료 후) (최대 60분 내외, 식사시간 20분 보장,)	 정규수업이 아닌 시간에 학생을 분리하여(남겨) 교육하고자 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 	성찰하는 글쓰기 등 과제 부여	
가정학습	 가.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는 경우 나. 제3호 및 제4호 분리를 1일 2회 이상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해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한 경우 	교무실 등 (보호자와 연락이 닿아 학교에 방문하는 시간까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및 자료 공유 적극 협조해야 함.	가정학습 보호자 확인서 ¹⁵⁾ 제출	

- ※ 학교별 지정 장소는 교장(감)실, 교무실, 성찰교실, 학교 내 유휴교실 등 사안의 경중 및 학교 여건을 반영하여 지정
- ※ 상시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상담실, 보건실 등)는 분리조치 장소로 지정하는 것을 지양
- ※ 학생보호인력은 교직원, 학습지원튜터, 교육활동보조인력, 학교보안관 등 학교 여건과 교직원 간 협의를 통해 정하되, 지도 감독 총괄은 교장이 담당
- ※ 학교별 지정 장소에서의 분리 학생 지도 방법은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정하되, 지도 감독 총괄은 교장이 담당
- ※ 관련 학생의 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학교별 생활규정에 따라 생활교육 절차 진행
- ※ 본 예시는 참고 자료로 활용하며, 단위 학교 여건에 맞게 정하여 실시

- 12) (예시) 교사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주변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여 학생들로부터 불만이 제기되는 경우
- 13) (예시) 수업 활동과 무관하게 떠들어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수업과 무관한 질문을 계속하여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수업 활동과 무관하게 교실 내를 돌아다니거나, 교실 밖을 교사의 허락 없이 지속해서 드나들어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수업 활동과 무관한 활동을 하여 학습 분위기를 저해하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 14) [서식 25] 행동성찰문 활용
- 15) [서식 24] 가정학습 보호자 확인서 활용

¹¹⁾ 예시는 참고 자료로 활용하며, 단위학교 여건에 맞게 정하여 실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생활규정 예시안



- ② 교원은 제1항제3호, 제4호에 따라 생활교육을 한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16
-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의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호자에게학생 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19조(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제59조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2조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 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제20조(생활교육 불응 시 조치) ①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생활교육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 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학생생활규정 제2장(학생생활교육)의 생활교육에 대해 학생이 지속적으로 불응하는 경우 교원의 요청에 따라 '생활교육위원회'에서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
- 제21조(이의 제기)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교육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제3장 생활교육위원회 운영 및 징계

- 제22조(생활교육위원회의 설치) ①「초·중등교육법」제18조 제2항에서 정하는 학생 징계에 관한 적정한 절차로서, 학생의 생활교육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학교에 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 ② 학교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의결 없이 학생에게 징계 조치를 할 수 없다.
- 제23조(원칙) 위원회의 운영 및 학생에 대한 징계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 1. 모든 과정에서 학생의 인격은 존중되어야 한다.
 - 2. 학생의 징계는 교육적 관점에서 학생 선도에 중점을 둔다.
 - 3. 징계의 종류는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4. 징계의 종류, 기준 및 징계 절차 상의 권리 등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미리 안내하여야 한다.
 - 5. 조사와 징계 과정에서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6.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안 된다.

^{16) [}서식 22] 분리지도학생 관리 대장 활용

※ 단계별 징계란 제2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로, 경징계 단계부터 점차 중한 징계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함. 학생이 징계를 받고 그 징계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자발적인 행동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 징계 제도의 목적이라는 점에서 낮은 단계의 징계를 부과하여 행동 개선을 도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동이 개선되지 않았다면 다음 단계에서는 이전 징계보다 중한 징계를 부과할 수 있다는 의미임.

제2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는 교감, 생활교육 담당부장(또는 생활교육 담당 교원), 해당 학년 부장, 상담부장, 전문상담교사(또는 전문상담사) 및 학부모 대표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감으로 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지정한 위원에게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생활교육 담당부장(또는 담당교원)을 간사로 둔다.
- ※ 생활교육위원회의 구성원 수, 직무대행자 및 간사 등은 학교 실정과 여건을 고려하여 편성할 수 있으나 위원장은 반드시 교감으로 정하는 것을 추천함.

제2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간사의 위원회 개최 요청이 있으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서 제척된다.
- 1. 위원이 징계대상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2. 해당 징계 조치에 관여한 경우
- ④ 학생 등은 위원이 불공정한 결정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 ⑤ 위원이 제3항 또는 제4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 ⑥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 한다.
- ⑦ 위원회는 징계 사안 심의 전에 간사의 사안 설명 및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의견을 담임교사(또는 상담교사)로부터 청취할 수 있다. 단, 의견 청취는 의견서로 대신할 수 있다.

제26조(징계 절차에서의 권리) ① 위원회가 학생 등의 위원회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말 또는 서면으로 하되, 학생 등에게 징계 절차를 개시한 이유에 대해 사전에 알려야 한다.

- ② 위원회는 학생 등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불출석 확인서】를 받은 후, 서면 심사로 의결을 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학생 등에게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하며, 학생 등은 말 또는 의견서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 ④ 학교의 장은 장애학생, 다문화 학생, 미혼모 등 소수자 학생이 생활교육(소)위원회에 회부될 경우 진술권 보장을 위한 특별 지원 절차(신체적, 언어적 측면 모두 포함) 및 학생의 개인정보(폭력 피해 경험 포함) 보호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조사와 징계 과정에서 학생의 인격권이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27조(징계의 종류와 기준)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고, 학생징계의 단계별 징계 내용과 기간은 다음 표와 같다.

- 1. 학교 내의 봉사
- 2. 사회봉사
- 3. 특별교육이수
- 4. 1일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생활규정 예시안



[단계별 징계 내용 및 기간]

징계 단계		징계 내용	징계 기간	
1호	학교 내의 봉사	학생은 등교해서 수업에 참여하고 수업시간 전후로 생활교육 담당부장(교사) 등의 지도를 받아 학교 안에서 봉사활동을 한다. 필요한 경우 외부 봉사단체와 협력해서 지도할 수 있다.	1회당 15시간 이내 (창체 봉사활동으로 인정 안함)	
2호	사회봉사	학교는 학생을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 위탁하여 봉사하게 한다. 학교는 학생을 맡기는 기관과 협력하여 사회봉사가 교육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1일 최대 5시간 이내, 조치별 15시간 이내 (창체 봉사활동으로 인정 안함) 이수증 또는 확인서 제출 시 출석인정으로 처리	
3호	특별교육 이수	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시설 또는 교육방법을 이용하거나 학교 에서 정한 특별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교육을 받는다.	징계 사유에 따라 기간 협의 이수증 또는 확인서 제출 시 출석인정으로 처리	
4호	출석정지	출석정지 기간 동안 수업에 출석하지 않고 보호자가 책임지고 교육하거나 학교에서 정해주는 활동을 한다. 교육감이 정한 시설 또는 교육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다.	1회당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	

② 제1항의 징계는 학생의 행동 개선 가능성을 살펴 경징계부터 중징계로 나아기는 단계적인 과정을 통해 부과되어야 하며, 징계 사유와 기준 예시는 다음과 같다.

- ※ 학교 여건과 실정에 따라 시간 또는 일수로 지정할 수 있음(단, 학교내의 봉사, 사회봉사와 특별교육은 시간 단위로 부과)
- ※ 5호 '퇴학처분'은 고등학교에서만 포함해야 함

		징계 기준(단계적인 과정)			
항	징계사유(예시)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이수	출석 정지
1	상습적으로 미인정 결석을 하는 학생				
2	공중도덕, 기초 질서 위반 행위를 한 학생				
3	교내·외에서 남의 물건을 절취, 편취 하는 등의 행위를 한 학생				
4	학생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지속적으로 출입한 학생				
5	학교 출입시 정후문이 아닌 곳으로 다닌 학생				
6	학교의 공공기물, 차량을 비롯하여 타인의 물건을 고의로 훼손한 학생				
7	음란물 제작, 은닉, 소지, 배포한 학생				
8	안전을 위협하는 물건(흉기 등)을 소지하거나 휴대한 학생				
9	문서(진단서, 성적표 등)를 위조하거나 정당하지 못한 목적으로 문서를 사용한 학생				
10	공연히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여 다른 사람(학생 제외)이나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11	수업 또는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한 학생				
12	수업 중 허용되지 않은 전자기기를 사용한 학생				
13	교사나 교육보조자의 정당한 교육 및 지도 활동에 대한 지시를 불이행한 학생				
14	교사의 생활지도에 지속적으로 불응하는 학생				
15	교사에 대한 언행이 불손하고 예의가 바르지 못한 학생				
16	징계 조치에 불응한 학생				
17	징계 기간 중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학생				
18	징계 지도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나 노력의 의지가 없는 학생				
19	기타 학교의 자체 학생생활규정을 위반한 학생				

제28조(위원회의 의결) ①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 ② 위원회는 학생 등의 진술 내용(의견서 포함)을 토대로 학생의 행동 개선 가능성을 교육적인 차원에서 살핀후 징계를 의결한다.
- ③ 각 위원은 해당 징계를 결정하게 된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며, 그 발언의 요지를 회의록에 기재한다.

제29조(징계 통보) 학교의 장은 제28조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 사항과 불복 절차를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보호자와 상담을 통해 학생 생활교육에 협조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30조(징계에 대한 재심의 요구) ① 학교장의 징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등은 1회에 한하여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학교의 장에게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 조치의 집행은 재심의 결정까지 그 효력을 중지한다.

- ③ 학생 등이 재심의를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관련 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 2. 피청구인
- 3. 징계 조치가 있음을 안 날
- 4. 재심의 청구의 취지 및 이유
- ④ 학교의 장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⑤ 재심의는 원칙적으로 서면 심의로 진행하고, 재적 위원 2/3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31조(장계 조치의 이행 등) ①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부과한 장계 조치의 이행을 완료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징계 조치의 이행 완료 전이라도 명백하게 학생의 행동이 개선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징계에 부과된 시간 또는 일수를 단축할 수 있다.
 - ③ 학교의 장은 징계 조치를 받은 학생이 징계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조치를 이행하더라도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를 이유로 하여 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추가 징계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일반적인 징계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32조(사후 조치) ① 담임교사와 상담교사 등은 징계가 종료된 학생을 지속적으로 관찰·지도한다.
 -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징계 대상 학생을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이나 방법을 사용하여 징계 과정 및 결과를 공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3조(평가 응시 및 학습권 보장) 징계 기간 중의 학생이라도 평가(고사 및 수행평가 포함, 이하 같다)에 응할 수 있고, 학교의 장의 허가름 얻어 학교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다. 평가 및 행사 기간은 정계 기간에서 제외한다.
- 제34조(생활교육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학교의 장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생활교육을 위해 생활교육소위원회(이하 "소위워회")를 둘 수 있다.
 - ② 소위원회는 생활교육 담당부장(또는 학년부장), 학년부장, 생활교육 담당교원 및 전문상담(교)사 등으로 구성한다.
 -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생활교육 담당부장(또는 학년부장)으로 하고, 소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생활 교육 담당 교원을 간사로 둔다.
 - ④ 소위원장은 간사의 소위원회 개최 요청이 있으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⑤ 소위원회에서는 '학교 내의 봉사'이하의 징계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 ⑥ 제25조 제2항 내지 제6항, 제26조, 제28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은 소위원회의 경우에 그대로 적용한다.
 - ※ 소위원회에서도 학생 등에게 아래 제25조 이하의 규정을 적용해야 함.
 - ※ 위원회 결정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교내 봉사 이하의 조치만 결정할 수 있다고 봐야 함.
- 제35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소위원회 포함, 이하 같다)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36조(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소지할 수 없다.
 - 1. 녹음기, 카메라, 휴대전화 등 녹음·녹화·촬영이 가능한 기기
 - 2. 흉기 등 위험한 물건
 - 3. 그 밖에 징계 등 사안의 심의와 관계없는 물건
 - ②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1. 녹음, 녹화, 촬영 또는 중계방송
 - 2. 회의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

3.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제4장 학생생활규정 제·개정¹⁷⁾

- 제37조(제·개정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학교의 장은 학생생활규정을 제·개정하기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원 대표로 구성된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이하, "제·개정위원회")를 구성한다.
 - ② 제·개정위원회의 교원위원은 교직원 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중에서 선출한다. 제·개정위원회의 학생 대표는 특정 학년에 치우치지 않게 구성하며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다만 불가 피한 때에만 학생회 대의기구를 통하여 선출할 수 있다. 제·개정위원회의 학부모 위원은 학부모회에서 선출한다.
 - ③ 제·개정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생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의 1/3 이상이 되어야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제·개정위원회의 위원은 학교의 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⑤ 제·개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제·개정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 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 ① 제·개정위원회는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의 방법으로 전체 학생을 비롯한 교육 3주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다만 학생자치조직의 요구가 있거나 학생생활규정의 제·개정안에 서울학생인권조례 제12조, 제13조 및 제17조에서 보장하는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전체 학생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학내 공청회 및 그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⑧ 학교의 장은 학교 규정 제·개정에 대한 심의 절차에서 학생 또는 학생자치조직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해야 하며 자신과 타인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는 방향으로 학칙 등 학교 규정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 ※ 제·개정위원회의 구성·운영은 학교 실정과 여건을 고려하여 편성 운영함
- **제38조(개정안의 발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으며, 발의에 대한 기준은 학교 상황에 따라 정할 수 있다.
 - 1. 제·개정위원회 재적 위원 1/2 이상의 동의
 - 2. 재직 교원 1/3 이상의 동의
 - 3. 학생 또는 학생 대의원 1/3 이상의 동의
 - 4. 학부모회 위원 1/3 이상의 동의
 - 5.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한 학교의 장 발의
 - ②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시기(학기말 또는 학년말 등)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제39조(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① 제·개정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제·개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③ 학생, 학부모 및 교원의 의사 반영 비율은 학교 규정에 따라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에서 정하되 가급적

¹⁷⁾ 근거:「초·중등교육법」제8조(학교규칙) 및 동법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학생의 의견을 50% 이상 반영하도록 한다.

제40조(심의 및 결정) ① 제·개정위원회는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자문을 요청한다.

-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 및 학교의 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 ③ 학교운영위원회의 학생 규정 제·개정 심의 시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41조(교육 및 연수) 학교의 장은 제·개정된 학생생활규정을 공포하고,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며, 학부모에게 학교 게시판, 홈페이지 및 가정통신문 등으로 제·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 **제42조(적용 및 환류)** 학교의 장은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의견수렴 및 분석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학생생활규정의 준수 및 실천 정도를 평가하는 등 상시 개정 체제에 필요한 준거를 마련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1장 제3조에서 규정한 본 생활규정의 근거 법령,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생활규정 개정 전이라 하더라도 개정된 상위 법령, 조례 및 지침 적용(적용일 포함)을 우선으로 한다.

V-2

[중등] 학생생활규정 예시안

제1장 학생생활규정 총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학교 학생생활규정'(이하 "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과 관련한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들이 공동체 속에서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 의식을 가지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의식을 갖추어, 학생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근거) 이 규정은 「대한민국 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 「서울특별시학생인권조례」(이하 "조례") 등에 근거하여 학생생활규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4조(기본 원칙) ① 이 규정은 학교생활에서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무차별의 원칙, 최선의 이익 원칙, 생존·보호·발달의 원칙, 참여의 원칙을 적용한다.

- ②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③ 이 규정은 자의적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명확한 용어로 분명하게 제정되어야 하며, 학생인권에 대한 제한은 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제한을 하는 경우에도 학생 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5조(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 2. "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3.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 4. "학생생활교육18)"이란 자신의 삶의 주체로서 학생이 일상의 전반에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일련의 모든 교육활동을 말한다.
- 5. "조언"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6. "상담"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든 소통 활동을 말한다.
- 7. "주의"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8. "훈육"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지시, 제지, 분리, 소지 물품 조사,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9. "훈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깨닫게 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18) 「}고시」 "제2조(정의)" 4항에서 "학생생활지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지도 행위(이하 "생활지도"라 한다)를 말하며,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학생을 삶의 주체로서 인정하는 교육적 가치를 반영하여 "고시"의 '학생생활지도'를 '학생생활교육'의 용어로 안내함



- 10. "보상"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제6조(교육 3주체의 책무 등) ①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교육을 존중하고 따르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다른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인권 존중
 - 2. 학교공동체 구성원 간에 합의된 학교 규범의 준수
 - 3. 다른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신체적·언어적 폭력의 금지
 - 4. 다른 학생의 학습권 존중과 수업활동에 대한 방해 금지
 - 5.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수업 및 생활교육 등)에 대한 존중 및 방해 금지
 - 6. 흉기, 마약, 음란물 등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해하거나 학습권을 침해하는 소지품의 소지 금지
 - ③ 학교의 장("학교의 설립자, 경영자 및 법인"등을 포함)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고 학생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교육을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⑤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교육을 위하여 시설, 인력 등 모든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 ⑥ 학교의 장은 교원의 상담 활동에 필요한 상담시설을 구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상담 활동 운영에 참여하여야 한다.
 - ⑦ 교원은 상담을 위한 최신의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정보와 지식을 습득·유지하기 위해 교육과 연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 ⑧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교육을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 제7조(보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위원회와 생활교육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제2장 학생생활교육

- 제8조(생활교육의 범위) ① (학업 및 진로)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업 및 진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가.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 나.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 및 사용
 - 다.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 ② (보건 및 안전) 학교의 장과 교원은 보건 및 안전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가.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 나.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다.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학생생활규정 길라잡이

- ③ (인성 및 대인관계) 학교의 장과 교원은 인성 및 대인관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가.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 나,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 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 ④ (그 밖의 분야)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8조1항부터 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해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가.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 나.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 다. 비행 및 범죄 예방
 - 라.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9조(생활교육의 방식)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이 학생생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 보상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교육할 수 있다.

- 1. (조언)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이 때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문제 개선을 위하여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 2. (상담)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상담은 수업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 각 목의 경우 상담을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 가.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 나.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 다. 근무 시간 외의 상담
 - 라. 폭언, 협박, 폭행 등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3. (주의)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육활동 중 학생이 위험한 행동을 하거나 자신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 수업 중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상황 등에서 학생에게 지적과 경고 등의 주의를 줄 수 있다. 이 때,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 4. (혼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거나 조언, 주의 등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경우,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하는 경우, 지시, 제지, 분리, 물품 분리보관 등의 훈육을 할 수 있다. 특히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고, 이후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 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 5. (훈계)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생활교육에 따른 조언, 상담, 주의,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말과 행동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이 때 학생에게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하며, 대안 행동, 성찰 글쓰기, 훼손된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한다) 등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 6. (보상)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10조(휴식시간) ①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발달을 위하여 적절한 휴식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의사에 반하여 정규 교육 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을 실시하는 등으로 학생의 휴식권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 제20조에 따라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학생을 특정 장소로 분리할 때에는 학생의 휴식권이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제11조(용모 및 복장) ① 학생은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두발, 복장, 장식, 화장 등 용모에 관하여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 ② 학생은 용모에 있어서 청결을 유지하여 타인에게 불쾌감을 유발하지 않도록 한다.
 - ③ 학생은 타인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 만한 문구, 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과 장식물을 착용하지 않는다.
 -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으며, 지도에 관한 사항은 학생이 참여한 학생생활규정의 제·개정 절차를 거쳐 정할 수 있다.
- 제12조(정보통신윤리) ① 학생은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인권과 정보, 사생활을 존중·보호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하여야 한다.
 - ② 학생은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 ③ 학생은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 및 불법 유해 매체물을 소지하거나 유통해서는 안 된다.
 - ④ 학생은 사이버 도박과 같이 위법한 방법으로 영리를 취하기 위해 인터넷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제13조(휴대전화의 소지 및 사용) ①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정보통신 기능을 가진 휴대용 전자기기"를 포함)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전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한 경우 학생에게 주의 등 제9조에서 정하는 방식의 생활교육을 할 수 있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휴대전회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휴대전화를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이러한 주의 및 훈육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 ※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생활규정을 근거로 교육활동 과정에서 휴대전화의 소지·사용 시간과 장소를 정할 수 있다. 다만, 이와 관련된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시에는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 제14조(물품 소자사용 금지 및 분리 보관 등)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물품에 대해서는 소지·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학생으로부터 해당 물품을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 1. 수업 중 휴대전화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장난감, 해당 교과와 관련 없는 서적, 허가받지 않은 녹음기, 이어폰, 전자기기, 화장품 등)을 사용하여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 가. 성냥, 라이터, 폭죽, 드라이기, 고대기 등의 인화물질 및 전열기
 - 나. 흉기, 칼, 쇠파이프, 공구류, 장난감 총 등 타인에게 해를 가할 가능성이 현저한 물품
 - 다. 레이저빔 기기 등 빛을 쏘아 실명 등 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 기구
 - 라. 과다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도구 또는 장치
 - 마. 기타 위 각 목에 준하는 물품
 -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 가. 담배(전자담배 포함). 주류. 마약 등 향정신성 약물 일체
 - 나. 부탄가스, 본드 등 환각물질 일체
 - 4. 그 밖에 소지·사용이 금지된 물품

학생생활규정 길라잡이

- 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저속하고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 및 물품
- 나. 모든 형태의 도박에 관한 물품
- 다. 불법적으로 입수했거나. 인권침해 및 폭력적인 행위를 지지하는 의미를 담은 물품
- 라. 개인 이동 수단(PM), 차량 및 오토바이 등의 교내 운행 차량
- 마. 기타 위 각 목에 준하는 물품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수업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한 경우학생에게 주의를 비롯하여 다양한 생활교육을 적용할 수 있다.
- ③ 물품에 따른 분리 요건·기간·장소·방법 등은 아래 표에 따른다

	분리요건	분리기간	분리장소	분리방법			
1 호	수업 중 허가받지 않은 휴대전화 및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	수업 시간	교탁 위 등 교실 지정 장소	 1회차: 주의 실시 2회차: 주의와 함께 분리할 수 있음을 알림 3회차: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 수업 종료 후: 학생에게 되돌려줌 			
2 호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지도교원은 분리 보관 사유, 기간, 방법 등을 해당 학생에게 알림			
3 호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보고([서식 20] 물품 분리보관 신고서) 학교의 장은 보호자에게 지도의 일시 및 			
4	그 밖에 소지·사용이 금지된	3일	교무실 등 (교실 외 교원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	경위 등을 알림([서식 20] 활용) •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간 경과 후 보호자에게 되돌려줌			
4 호	그 낚에 조시·시승이 금시된 물품			※ 보호자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¹⁹⁾ 가능 ([서식 21] 물품 폐기 확인서)			

- ※ 폐기의 경우는 소유물 포기의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보호자의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단, 문자메세지(SMS), 유선 연락 등 통상적인 연락을 여러 번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하지 못한다면 폐기할 수 있다.
- ※ 주의 및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예시 :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행동, 성찰하는 글쓰기, 훼손된 시설 및 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 포함)].
- ※ 물품 분리 보관 지도에 관한 사항은 담임교사, 생활교육위원회 등이 유기적으로 업무를 연계

※ 본 예시는 참고 자료로 활용하며, 단위 학교 여건에 맞게 정하여 실시

- ④ 물품 분리 시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지도 불응 시 학생생활규정에 따라 지도할 수 있다.
- ⑤ 교원은 제3항에 따라 분리 및 보관을 한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5조(소지 물품 조사)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¹⁹⁾ 물품을 폐기하는 경우 학생 및 보호자의 의견을 듣고 진행함으로써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20)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21)

- ② 물품 조사 시 학생에게 검사의 목적과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며, 학생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지 물품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교원은 소지 물품 조사의 목적, 이유, 절차, 학생 의견을 기재하여 이를 생활교육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 ③ 교원은 소지 물품 조사 과정에서 학생 개인 신상 정보를 침범하거나 개인의 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학생이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낄만한 표현이나 언행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6조(학습권 보호) ① 학생은 자신의 소질과 적성 및 환경에 맞게 합당한 학습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임신·출산·이성교제를 이유로 학습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징계를 내려서는 안 된다.

제17조(교육활동 중 학생 분리)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 2.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
- 3.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 4.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 ② 교육활동 중 학생 분리에 따른 요건, 분리기간과 장소, 방법은 다음 표와 같다.

²⁰⁾ 해당 학교 구성원이나 CCTV에 의해 학생의 소지·사용을 금지한 물품을 목격 및 구체적인 소지 신고가 있거나 절도 등이 명확히 식별되었을 경우, 자해 또는 자살 등의 가능성이 있는 물품 소지 신고가 들어왔거나 목격한 경우, 약물 오·남용 등의 가능성이 있거나 목격한 경우

²¹⁾ 단. 불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불특정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 조사는 실시할 수 없다.

생활교육	요건		분리장소(시간)	절차 및 방법	학습지원	
3호	가	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학생을 지도, 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밖 복도 (수업 시간 내 일부)	 학생에게 수업 방해 금지, 자리 이동 금지 등 주의를 준 후 실시 자기 책상과 의자를 복도로 옮겨 성찰 과제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음 	수업 참여, 필요시 성찰 과제 부여 가능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나	①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② '가'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교무실 등 (수업 종료 시 까지)	 교원이 학생보호인력에게 학생 인계 요청 해당 학생은 학생보호인력과 함께 학교별 지정 장소로 이동 보호자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필요시 추수 지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안내 	필요시 성찰 과제 부여 가능	
4호	가	수업 시간에 지각* 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무실 등 (점심시간 내 20분 내외)	• 점심시간 활용 시 식사에 필요한 최소 시간(20분) 보장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나	① 3호 '나'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②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교무실 등 (60분 이내)	• 정규수업이 끝난 뒤 학생을 남겨 교육하고자 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	필요시 성찰 과제 부여 가능	

- ※ 학교별 지정 장소는 교장(감)실, 교무실, 성찰교실, 학교 내 유휴교실 등 사안의 경중 및 학교 여건을 반영하여 지정
- ※ 상시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상담실, 보건실 등)는 분리조치 장소로 지정하는 것을 지양
- ※ 학생보호인력은 교직원, 학습지원튜터, 교육활동보조인력, 배움터 지킴이 등 학교 여건과 교직원 간 협의를 통해 정하되, 지도 감독 총괄은 교장이 담당
- ※ 학교별 지정 장소에서의 분리 학생 지도 방법은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정하되. 지도 감독 총괄은 교장이 담당
- ※ 지각의 기준은 학교 여건에 따라 명확히 설정 가능
- ※ 성찰 과제는 행동 성찰문([서식 25]), 교과서 요약, 학습 용어 정리 등 지도교원이 상황에 맞게 제시
- ※ 관련 학생의 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학교별 생활교육 절차에 따라 진행
- ※ 학생 분리지도에 관한 사항은 담임교사, 생활교육위원회 등이 유기적으로 업무를 연계
- ※ 위 표를 활용하며, 단위학교 여건에 맞게 정하여 실시하도록 함
 -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 시 분리 요청 교원은 필요 시 분리 학생에게 '성찰 과제 부여' 또는 '학생 상담' 등을 실시하고 학생 분리 내용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한다.²²⁾
 - ③ 교원은 제1항제3호, 제4호에 따라 생활교육을 한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학생이 제1항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22) [}서식 22] 분리지도학생 관리 대장 활용



- 제18조(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59조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2조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 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제19조(생활교육 불응시 조치) ①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생활교육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학생생활규정 제2장(학생생활교육)의 생활교육에 대해 학생이 지속적으로 불응하는 경우 교원의 요청에 따라 '생활교육위원회'에서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
- 제20조(이의제기)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교육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제3장 생활교육위원회 운영 및 징계

- 제21조(생활교육위원회의 설치) ①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2항에서 정하는 학생 징계에 관한 적정한 절차로서, 학생의 생활교육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학교에 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 ② 학교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의결 없이 학생에게 징계 조치를 할 수 없다.

제22조(원칙) 위원회의 운영 및 학생에 대한 징계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 1. 모든 과정에서 학생의 인격은 존중되어야 한다.
- 2. 학생의 징계는 교육적 관점에서 학생 선도에 중점을 둔다.
- 3. 징계의 종류는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4. 징계의 종류, 기준 및 징계 절차 상의 권리 등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미리 안내하여야 한다.
- 5. 조사와 징계 과정에서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6.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안 된다.
 - ※ 단계별 징계란 제2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로, 경징계 단계부터 점차 중한 징계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함. 학생이 징계를 받고 그 징계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자발적인 행동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 징계 제도의 목적이라는 점에서 낮은 단계의 징계를 부과하여 행동 개선을 도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동이 개선되지 않았다면다음 단계에서는 이전 징계보다 중한 징계를 부과할 수 있다는 의미임.
- 제2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는 교감, 생활교육 담당부장(또는 생활교육 담당 교원), 해당 학년 부장, 상담부장, 전문상담교사(또는 전문상담사) 및 학부모 대표로 구성한다.

학생생활규정 길라잡이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감으로 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지정한 위원에게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생활교육 담당부장(또는 담당교원)을 간사로 둔다.
 - ※ 생활교육위원회의 구성원 수, 직무대행자 및 간사 등은 학교 실정과 여건을 고려하여 편성할 수 있으나 위원장은 반드시 교감으로 정하는 것을 추천함.

제2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간사의 위원회 개최 요청이 있으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서 제척된다.
- 1. 위원이 징계대상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2. 해당 징계 조치에 관여한 경우
- ④ 학생 등은 위원이 불공정한 결정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 ⑤ 위원이 제3항 또는 제4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건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 ⑥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 한다.
- ⑦ 위원회는 징계 사안 심의 전에 간사의 사안 설명 및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의견을 담임교사(또는 상담교사)로부터 청취할 수 있다. 단, 의견 청취는 의견서로 대신할 수 있다.

제25조(징계 절차에서의 권리) ① 위원회가 학생 등의 위원회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말 또는 서면으로 하되, 학생 등에게 징계 절차를 개시한 이유에 대해 사전에 알려야 한다.

- ② 위원회는 학생 등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불출석 확인서】를 받은 후, 서면 심사로 의결을 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학생 등에게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하며, 학생 등은 말 또는 의견서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제26조(징계의 종류와 기준)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 1. 학교 내의 봉사
- 2. 사회봉사
- 3. 특별교육이수
- 4. 1일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5. 퇴학 처분
- ② 제1항의 징계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여한다.
- 1. '학교 내의 봉사'는 학생을 등교시켜 수업을 받게 하며 학교 생활교육 담당 부서의 지도를 받아 학교 내에서 봉사활동을 하되, 필요에 따라 외부 봉사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실시할 수 있다. '학교 내의 봉사'는 1회 최대 15시간 이내의 시간으로 하되, 창의적 체험활동의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2. '사회봉사'는 학생을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사회봉사'는 1일 최대 5시간 이내, 조치별 15시간 이내 기간으로 하되 반드시 이수증 또는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출석으로 처리하며, 창의적 체험활동의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3. '특별교육 이수'는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및 교육 방법을 이용하거나, 소속 학교에서 운영하는 특별교육 프로그램으로 대체하여 실시할 수 있다. 학교나 지정 위탁 기관의 특별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한



- 후, 이수증 또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출석으로 처리한다. 이수 시간 및 기간은 기관과 협의하여 실시한다.
- 4. '출석정지²³'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나 보호자의 책임 하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며, 출석정지 기간에는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및 교육 방법을 이용하여 특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학생의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 상황란에 '미인정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 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 5. '퇴학 처분'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한하여 행한다.
 - 가.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이 잦은 자
 - 다. 기타 학칙에 위반한 자
- ③ 제1항의 징계는 학생의 행동 개선 가능성을 살펴 경징계부터 중징계로 나아가는 단계적인 과정을 통해 부과되어야 한다.
- ※ 학교 여건과 실정에 따라 시간 또는 일수로 지정할 수 있음(단, 사회봉사와 특별교육은 시간단위로 부과) ※ 5호 '퇴학처분'은 고등학교에서만 포함해야 함
- 제27조(퇴학 처분) ① 학교의 장은 퇴학 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 기간 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 ※ 가정학습은 징계의 일종인 출석정지와 다름
 - ② 학교의 장은 퇴학 처분을 한 때에는 해당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 데 노력하여야 하고, 대안교육, 재입학 및 편입학, 검정고시, 방송통신중·고등학교 등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기회를 안내하여야 한다.
 - ③ 퇴학 처분은 학교 내의 봉사부터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및 출석정지로 최소 3회 이상 순차적으로 중한 징계로 나아가는 단계적 징계를 하였음에도 자발적인 행동 개선 가능성이 없는 경우 퇴학 처분 외에 다른 수단 으로는 징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최후 보충적인 경우에 한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 제28조(위원회의 의결) ①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 ② 위원회는 학생 등의 진술 내용(의견서 포함)을 토대로 학생의 행동 개선 가능성을 교육적인 차원에서 살핀후 징계를 의결한다.
 - ③ 각 위원은 해당 징계를 결정하게 된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며, 그 발언의 요지를 회의록에 기재한다.
- 제29조(징계 통보) 학교의 장은 제28조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 사항과 불복 절차를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서면 으로 통보하고, 보호자와 상담을 통해 학생 생활교육에 협조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 제30조(징계에 대한 재심의 요구) ① 학교장의 징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등은 1회에 한하여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학교의 장에게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 조치의 집행은 재심의 결정까지 그 효력을 중지한다.
 - ② 학교의 장은 재심의 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재심의 여부를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③ 학생 등이 재심의를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관련 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 2. 피청구인
 - 3. 징계 조치가 있음을 안 날
 - 4. 재심의 청구의 취지 및 이유

^{23) &#}x27;출석정지'란 대상 학생이 수업에 출석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로 '등교정지'와는 구분된다.

학생생활규정 길라잡이

- ④ 학교의 장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⑤ 재심의는 원칙적으로 서면 심의로 진행하고, 재적 위원 2/3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31조(퇴학 처분에 대한 재심청구) 퇴학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이나 그 보호자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2에 따라 '서울특별시학생징계조정위원회(이하 "학생징계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퇴학 처분의 집행은 정지된다.
- **제32조(징계 조치의 이행 등)** ①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부과한 징계 조치의 이행을 완료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징계 조치의 이행 완료 전이라도 명백하게 학생의 행동이 개선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징계에 부과된 시간 또는 일수를 단축할 수 있다.
 - ③ 학교의 장은 징계 조치를 받은 학생이 징계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조치를 이행하더라도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를 이유로 하여 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추가 징계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일반적인 징계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33조(사후 조치) ① 담임교사와 상담교사 등은 징계가 종료된 학생을 지속적으로 관찰·지도한다.
 -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징계 대상 학생을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이나 방법을 사용하여 징계 과정 및 결과를 공고하여서는 아니 되다.
- **제34조(평가 응시 및 학습권 보장)** 징계 기간 중의 학생이라도 평가(고사 및 수행평가 포함, 이하 같다)에 응할 수 있고, 학교의 장의 허가를 얻어 학교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단, 평가 및 행사 기간은 징계 기간에서 제외한다.
- 제35조(생활교육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학교의 장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생활교육을 위해 생활교육소위원회 (이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소위원회는 생활교육 담당부장(또는 학년부장), 학년부장, 생활교육 담당교원 및 전문상담(교)사 등으로 구성 한다.
 -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생활교육 담당부장(또는 학년부장)으로 하고, 소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생활교육 담당 교원을 가사로 둔다.
 - ④ 소위원장은 간사의 소위원회 개최 요청이 있으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⑤ 소위원회에서는 '학교 내의 봉사'이하의 징계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 ⑥ 제24조 제2항 내지 제6항, 제25조, 제28조 내지 제30조 및 제32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은 소위원회의 경우에 그대로 적용한다.
 - ※ 소위원회에서도 학생 등에게 아래 제26조 이하의 규정을 적용해야 함.
 - ※ 위원회 결정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교내 봉사 이하의 조치만 결정할 수 있다고 봐야 함.
- 제37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소위원회 포함, 이하 같다)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 해서는 아니 된다.
- 제38조(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소지할 수 없다.
 - 1. 녹음기, 카메라, 휴대전화 등 녹음·녹화·촬영이 가능한 기기
 - 2. 흉기 등 위험한 물건
 - 3. 그 밖에 징계 등 사안의 심의와 관계없는 물건
 - ②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1. 녹음, 녹화, 촬영 또는 중계방송



- 2. 회의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
- 3.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제4장 학생생활규정 제·개정24) 규정

- 제39조(제·개정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학교의 장은 학생생활규정을 제·개정하기 위하여 학생, 학부모 및 교원 대표로 구성된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이하, "제·개정위원회")를 구성한다.
 - ② 제·개정위원회의 교원위원은 교직원 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 중에서 선출 한다. 제·개정위원회의 학생 대표는 특정 학년에 치우치지 않게 구성하며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다만 불가 피한 때에만 학생회 대의기구를 통하여 선출함 수 있다. 제·개정위원회의 학부모 위원은 학부모회에서 선출한다.
 - ③ 제·개정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생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의 1/3 이상이 되어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제·개정위원회의 위원은 학교의 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⑤ 제·개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제·개정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 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 ⑦ 제·개정위원회는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의 방법으로 전체 학생을 비롯한 교육 3주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다만 학생자치조직의 요구가 있거나 학생생활규정의 제·개정안에 서울학생인권조례 제12조. 제13조 및 제17조에서 보장하는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전체 학생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학내 공청회 및 그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8) 학교의 장은 학교 규정 제·개정에 대한 심의 절차에서 학생 또는 학생자치조직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해야 하며 자신과 타인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는 방향으로 학칙 등 학교 규정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 ※ 제·개정위원회의 구성·운영은 학교 실정과 여건을 고려하여 편성 운영함
- 제40조(개정안의 발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으며, 발의에 대한 기준은 학교 상황에 따라 정할 수 있다.
 - 1. 제·개정위원회 재적 위원 1/2 이상의 동의
 - 2. 재직 교원 1/3 이상의 동의
 - 3. 학생 또는 학생 대의원 1/3 이상의 동의
 - 4. 보호자(학부모)회 위원 1/3 이상의 동의
 - 5.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한 학교의 장 발의
 - ②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시기(학기말 또는 학년말 등)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제41조(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① 제·개정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²⁴⁾ 가. 근거: 「초·중등교육법」제8조(학교규칙) 및 동법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나. 출처:학교규칙 운영 매뉴얼(교육부, 2014)

학생생활규정 길라잡이

- ② 제1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③ 학생, 학부모 및 교원의 의사 반영 비율은 학교 규정에 따라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에서 정하되 가급적학생의 의견을 50% 이상 반영하도록 한다.

제42조(심의 및 결정) ① 제·개정위원회는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자문을 요청한다.

-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 및 학교의 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 ③ 학교운영위원회의 학생 규정 제·개정 심의 시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43조(교육 및 연수) 학교의 장은 제·개정된 학생생활규정을 공포하고,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며, 보호자에게 학교 게시판, 홈페이지 및 가정통신문 등으로 제·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 **제44조(적용 및 환류)** 학교의 장은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의견수렴 및 분석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학생생활규정의 준수 및 실천 정도를 평가하는 등 상시 개정 체제에 필요한 준거를 마련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1장 제3조에서 규정한 본 생활규정의 근거 법령,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생활규정 개정 전이라 하더라도 개정된 상위 법령, 조례 및 지침 적용(적용일 포함)을 우선으로 한다.

학생생활규정 예시안 O&A²⁵⁾



Q&A (?)



「평생교육법」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의해 설립된 학교도 이번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의 내용이 적용되나요?



이번에 제정된 고시는「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만 적용이 됩니다.「평생교육법」제31조에 의해 설립된 학교는 법적 근거가 다르므로 이 고시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초등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Q&A (?



특수교육대상자도 생활지도 고시의 내용이 적용되나요?



특수교육대상자가 「초·중등교육법1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在學)중이라면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1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때, 학교의 장과 교원은 고시 적용 과정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차별 행위가 없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이하 생략-

²⁵⁾ 본 Q&A는 교육부·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에서 발행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개정안)의 Q&A (2025)"를 참고하여 제작하였습니다

Q&A (?)

특수교육대상자의 문제행동에 대한 행동중재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하나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제15조제3항에서는 '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제15조③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2조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 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문제행동에 따라 체계적으로 행동중재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부모 동의 절차를 거쳐 개별 학생행동중재계획을 수립하여 개별화교육계획에 포함해야 합니다. 단, 일상적인 생활지도로 충분히 가능한 사항까지 개별화교육계획에 일괄적으로 포함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참고: 장애학생 행동중재 가이드라인』(교육부, 2024. 10.)



Q&A (?)



전문상담사도 학생생활지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나요?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제20조 제1항에 의거 교무를 총괄하므로 학생 분리지도 등에 대한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사항을 전문상담사 등 교직원(학교의 장이 인정한 교육활동 보조 인력 등)에게 분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상담사도 학생생활지도에 부여된 임무에 따라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고시의 내용은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에 관한 기준이며, 고시에 의한 학생생활 지도 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정당행위)에 해당됩니다.

형법 제20조(정당행위)

▶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 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가 법령·고시·학칙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학칙을 제·개정할 때는 이 점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교육감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나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신속히 제출하도록 함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7조 신설, '23. 9. 27.)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7조(이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제출) ①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유아생활지도 및 「초·중등교육법」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행위가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소속 교원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또는 수사기관에 해당시안에 대한 의견을 신속이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시설

Q&A (?)

고시 제정에 따른 학칙 개정 시. 예시안을 기준으로 개정하거나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 등 관련 절차 일부를 생략 또는 간소화할 수 있나요?



상위 법령에서 학칙으로 위임하여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방법이나 방식 등 세부적인 시항을 학칙으로 제·개정할 때에는 교육 3주체의 의견 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학생생활지도 방법이나 방식 등이 기재되어 있는 고시 해설서의 예시나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생활규정 예시안을 기준으로 개정하더라도 반드시 절치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학교의 학칙에 따라 별도 규정을 두거나 일부 절차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소속 학교의 학칙을 추가적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Q&A (?) Q 07

수업 중 졸거나 엎드려 잠을 자는 행위에 대해 학생생활지도가 가능한가요?



학생이 수업 중 졸거나 엎드려 잠을 자는 것은, 비록 적극적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가 아니더라도 교실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지도가 가능합니다.

Q 08

Q&A (?)

학생이 원치 않는 경우에도 진로 및 진학 관련 생활지도가 가능한가요?



교원은 학생이 원하지 않은 경우에도 학생의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하여 고시에 따라 생활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원은 자신의 개인적 신념, 가치 등이 학생생활지도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에 대해 인식하고,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학생에게 강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Q&A (?)

학교의 장과 교원의 학생생활교육만으로 학생의 인성 및 대인관계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는 사항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학생의 인성 및 대인관계 문제로 발생한 절도, 도박, 폭력행위와 같은 범법 행위, 반사회성 성격장애와 품행장애 등 정신 병리적 문제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를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등에 연계하고, 정신 병리적 문제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외에 학교의 장은 범죄소년, 촉법소년 또는 우범소년(아래 법문 참조)을 발견한 경우 서면 또는 말로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1호	범죄소년	죄를 범한 소년(14세 이상 19세 미만)					
제2호	촉법소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					
제3호	우범소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할 우려가 있는 소년(10세 이상 19세 미만)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Q&A (?)



'조언'에 해당하는 특정 요건이 있나요?



조언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로 어느 때든지 조언할 수 있습니다. 조언은 학생생활지도 중 많이 활용되는 방식으로 특정 요건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학교 교육 활동에서 수시로 이루어지는 가장 광범위한 학생생활교육 방식입니다.



Q&A (?)



심리상담 또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조언'을 하였으나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조언은 권고 사항일 뿐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 가급적 학교 내 전문상담인력(예: 전문상담교사, 전문상담사 등)과의 상담이나 교육청 위센터 등을 통한 상담을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Q&A (?)



상담 기록을 반드시 남겨야 하나요?



공식 요청에 의한 상담인 경우에는 기록을 남기는 것을 권장합니다. 학생의 발달 과정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근거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생과의 가벼운 상담인 경우에는 개인 메모 형태로 핵심만 기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A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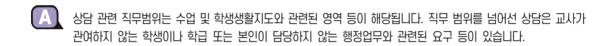
상담을 녹음 및 녹화하려는 경우에 허용해야 하나요?



사전에 녹음 및 녹화가 허용된 장소로 공지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상담에 참여한 사람 모두가 동의하여야 녹음 및 녹화가 가능합니다. 동의하지 않은 녹음 및 녹화가 진행됨을 인지한 경우 상담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 안전을 위해 상담실 등에 설치된 C 등을 통해 영상 녹화는 가능합니다.

Q&A (?)

고시 제10조 제6항과 관련하여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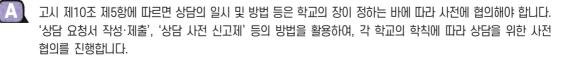
Q&A (?)

고시 제10조 제4항에 해당하는 '명백한 사유'란 무엇인가요?

상담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로는 고시 제10조 제6항, 제7항과 같이 사전에 합의되지 않았을 때, 직무 범위를 넘어섰을 때, 근무시간 외에 상담을 요청했을 때, 보호자의 폭언 등으로 상담이 불가능할 때 등이 있습니다.

Q&A (?)

상담 실시를 위한 사전 협의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Q&A (7

제11조 제3항에 따라 '주의'를 준 후에만 '훈육' 또는 '훈계'를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학생이 법령 또는 학칙에서 금지되는 행동을 하거나, 생명 위해 또는 중대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바로 '훈육' 및 '훈계'를 할 수 있습니다.

Q&A (?)



학교급별, 학생별 지시는 어떻게 달라야 하나요?



학교급별, 학생별로 발달 단계가 다릅니다. 그리고 학생에 대한 최고 전문가는 현장 교사입니다. 개별 교사별로 기준을 잡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동학년 협의회 또는 전체 교사 협의회를 통해 학년 규정, 학교 규정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수정·보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I

Q&A (?



정당한 지시와 부당한 지시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형식적으로 학칙 등에 언급 여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의 목적은 단순히 교사의 말을 잘 듣는 학생을 기르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시가 학생의 지적·정의적·행동적 능력을 함양하여 전인적인 인간으로 발달하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Q&A (?)



학생을 훈육할 때 반드시 조언, 상담, 주의 단계를 순차적으로 거친 후 제지 또는 분리를 실시할 수 있나요?



일반적인 교육활동 상황에서는 조언이나 상담 또는 주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에만 훈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훈육 전에 실시하는 조언이나 상담, 주의는 사전에 이루어지면 충분한 것으로 반드시 당일에 이루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학칙에 따른 금지 행동을 하는 학생에게는 구두 제지를 바로 할 수 있고,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는 등의 긴급한 경우에는 곧바로 물리적 제지도 할 수 있습니다.

Q&A (?)

물리적 제지가 발생한 이후 학교의 장은 보호자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알려야 하나요?



학교의 장은 학교의 상황 및 환경 등을 고려하여 유선전화. 문자메세지 등을 활용하여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 안내할 수 있습니다.

※ 안내 시항:물리적 제지가 발생한 일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내용 등 이울러, 학교의 장은 교원이 교육활동 중 물리적 제지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교원 및 직원, 외부 관계기관 등 지원 인력 지정 및 대응 절차 등을 마련하여 안내하여야 합니다.

Q&A (?)



교실 내 지정된 위치에 이미 다른 학생이 있는 경우 추가로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 분리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교원의 판단에 따라 기존의 지정된 위치 외에 다른 위치를 지정하여 분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 수업 중 교실 내 분리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통상적인 앞자리 배치 등의 방법으로 학생의 인격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을 선택할 필요가 있음에도. 집중을 못 한다는 등의 이유로 학생을 7일 동안 통상적인 자리가 아닌 교탁 옆에 홀로 배치한 것은 다른 학생들과 구분 짓게 한 것으로, 학생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과도한 정서적 체벌로, 「헌법」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유래하는 학생의 일반적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

- 국가인권위원회 2020. 6. 30. 19진정0807000 결정 -

Q&A (?)

학생이 교실 내 분리를 거부하거나 교실 내 분리를 했음에도 문제 행동을 반복하면 어떻게 하나요?



그런 경우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또는 정규수업 이외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학칙에 의한 징계도 가능).

Q&A (7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별도 장소에 분리하지 않고 보호자에게 바로 인계를 요청할 수 있나요?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또는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를 거부하거나. 고시 제12조 제6항 제3호와 제4호에 따른 분리를 1일 2회 이상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지속해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보호자에게 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Q&A (?)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이며, 만약 분리 조치한 학생에 대한 보호자 인계가 필요하여 요청하였으나 보호자가 이를 거부할 시에는 어떻게 조치할 수 있나요?



고시 제12조 제6항제4호에 따라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은 일과 중 매 교시 수업 시간이 아닌 쉬는 시간 및 점심시간. 모든 수업이 종료한 일과 후의 시간을 의미하며, '특정 장소로의 분리'는 교무실, 특별활동실 등 분리 조치를 위해 학칙으로 정한 별도의 장소를 의미합니다. 만약 보호자에게 학생 인계를 요청하였으나 반복적으로 보호자가 이를 거부하면 사안에 따라서는 「교원이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1항제4호 및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 제4호에 근거하여 보호자가 정당한 교원의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Q&A (?)



학생을 교실 밖으로 분리지도 한 상태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등에 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학교의 장은 학교 상황을 고려한 교실 밖 분리 학생 지도 계획을 마련해야 하며, 이 계획에 따른 업무 분장 등에 따라 안전사고 관리 책임 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A (?)

학생 분리 지도 시. 분리 장소 및 인계·담당 주체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학교에서 어떻게 정할 수 있나요?



학생 분리 지도를 위한 절차 및 장소, 인계 또는 담당 주체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들어 학교장이 학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Q&A (?)



실외 교육활동 중 분리지도 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운동장 등 실외 교육활동 시 분리 지도는 교사가 학생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가시권 내 장소로 학생이 학급의 수업 활동을 모두 볼 수 있는 장소로 일시적으로 분리하되, 분리 장소의 안전과 위생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12조제5항제2호에 따른 수업 중 학습진단으로부터의 일시분리임을 주의해야 합니다.

Q&A (?)



2교시 쉬는 시간에 약 다섯 명의 학생들이 화장실에서 나온 뒤 흡연 정황이 신고되었습니다. 해당 학생들을 대상으로 물품 조사를 할 수 있나요?



흡연 정황이 신고된 객관적인 사실이 있어 화장실을 사용한 학생들이 흡연했을 것으로 의심되므로 해당 학생을 대상으로 흡연 물품 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물품 조사가 가능합니다.

Q&A 🕡



물품 분리·보관 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의 경우 물리적인 제지(압수, 빼앗기, 위험한 물건의 경우 제압 후 빼앗기. 신체적 접촉이 유발되는 일체의 행위 등)를 사용하여 분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방법과 정도에 대해 궁금합니다.



물품의 분리·보관을 위한 물리력 행사는 경우에 따라서는 중대한 기본권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강제적이고 물리적인 제지를 통한 물품 분리는 자제하고 학생이 교원의 정당한 물품 분리 요구를 거절하면 해당 내용을 기록하여 별도 학교 내 학생생활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Q&A (?



확인된 물건 중 폭발물, 마약류 등 현행법상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이라면 학교가 보관해야 하나요?



현행법상 안전을 위협하는 물건으로 분류되는 물건일 경우 24시간 이내에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그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총포화약법 제23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Q&A (?)



가위. 칼과 같은 학용품을 위험하게 사용하는 경우 고시 제12조 제9항을 근거로 학용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 보관할 수 있나요?



학생이 가위, 칼과 같은 학용품을 위험하게 사용하는 경우 교원은 고시 제11조제1항에 따라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으며, 이후에 계속해서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경우 고시 제12조제9항 제2호에 따라 분리 보관할 수 있습니다. Q&A ?

고시 제12조 제6항 제3호. 제4호 및 제9항에 따라 물품 분리·보관 지도를 한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을 학칙으로 정할 때, 물품 및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중대한 사안의 경우에만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을까요?



고시 제12조 제10항 같은 조 제6항 제3호. 제4호 및 제9항에 따라 물품 분리·보관 지도를 한 경우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물품 및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보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단, 학교의 장은 학교의 생활 및 환경을 고려하여 공유문서, 문자발송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보고하는 것으로 보고방법을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Q&A (?)



물품 분리보관, 학생 분리지도 등을 위한 일지 및 대장의 관리 주체는 누구인가요?



생활교육에 따른 각종 대장 등 문서의 총괄 관리 주체는 학교의 장입니다. 다만, 학교의 장이 관리하는 물품 분리보관 일지, 학생 분리지도 대장 등의 문서 작성 및 보고를 학교의 장 위임 전결 규정에 반영하여 각 문서의 실무적인 관리 주체를 정해 운영하거나. 일괄 보고 등과 같이 학교 현장과 행정부담을 고려하여 규정할 수 있습니다.

Q&A (?)



물품 분리보관 일지의 경우 전체 물품에 대해 작성해야 하나요?



고시에서 별도로 물품 분리보관 일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보고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남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작성되지 않은 물품은 보고가 안된 것으로 생각될 여지가 있으므로 분리 및 보관 전체 물품에 대한 작성이 필요합니다.

0&A 🕡

물품 분리·보관 지도 시 일정기간 보관 기일 경과 후 물품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에 해당 물품을 폐기하고자 합니다. 이때 고려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고시에서는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그대로 물품 폐기까지 확대 하여 해석하는 것은 소유권 침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야 할 기능성이 있으므로 학부모가 명확하게 물품을 반환받을 의사가 없거나 보관 기일 경과 후 반환받지 않을 때 당사자(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전제한 물품 폐기만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물품 폐기 동의를 받는 방법, 소유권 포기 간주 통보, 폐기 가능 안내, 폐기 직전 최후 통보, 문서화 등 일련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한 '폐기'는 무조건적인 물품의 처분으로 보기 보다는 교육활동에 방해되는 물품을 학교 내 '불용' 처리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Q&A 🕜



교무실. 화장실이 아닌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교실을 학급 규칙으로 정하여 벌청소하도록 하는 것은 훈계에 포함되나요?



- 징벌 목적의 벌청소는 훈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의 행동과 직접 관련(예:친구의 음료수를 바닥에 엎지른 경우, 벽에 낙서한 경우 등) 되어 청소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훈계 조치로서 청소와 같은 과제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학급 전체 학생에게 역할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학급 내 환경 정리 등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 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생활지도 목적의 청소 지시는 가능합니다.

Q&A (?)



반성문을 쓰도록 하는 것은 인권위 권고를 위반하는 사항인데, 훈계 시 학생들에게 성찰하는 글을 쓰도록 할 수 있나요?



학생에게 강제로 잘못을 시인하게 하는 반성문과는 달리 성찰하는 글쓰기는 자신의 행동과 타인의 기분을 돌아보기 위한 시간과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과 관련된 성찰하는 글을 쓰도록 할 수 있습니다.

※ (반성문과 성찰문 차이) 반성문은 어떤 행위에 대한 외부적 판단에 근거하여 학생에게 그 판단을 인정하고 맞추도록 하는 성격이 강한 반면, 성찰문은 학생 내면의 생각이나 감정을 깊이 있게 생각하여 돌아보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행동에 대한 개선점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음

Q&A (?)

지속적인 생활교육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교원이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하게 한 이유는 무엇인 가요?



지속적인 생활교육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해 교원이 학교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는 이유는, 생활교육의 직접적인 주체인 교사가 학생의 특성과 지도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의 행동을 판단할 때에는 단순히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학생 개인의 상황과 지도 과정에서의 변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교원의 판단은 징계 요청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Q&A (?)

이의제기 및 답변 기한인 "14일 이내"에는 주말 및 공휴일도 포함되나요?

- 주말과 공휴일도 포함됩니다. 다만, 14일째가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그 익일까지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된다.

민법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Q&A 🕡

고시 제12조 제6항 제3호에 따른 지도를 할 때는 언제까지 분리할 수 있나요?

지도로 인한 교실 밖 분리는 분리가 일어난 해당 수업이 끝날 때까지만 가능합니다. 그 수업이 끝나면 담당 교직원 혹은 학생보호인력 등의 동행으로 다시 교실로 이동해야 합니다.



Q&A (?

가정학습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2조 제6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지도에도 불구하고 문제 행동이 개선되지 않거나 분리를 거부하는 경우, 학교장은 보호자에게 가정학습의 필요성을 안내합니다.보호자가 수업 종료 시까지 도착하지 않을 경우. 분리된 학생은 지정된 장소에서 수업이 끝날 때까지 대기하며, 이후 하교합니다. 단. 분 내외의 점심시간과 쉬는 시간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보호자에게 학생을 인계할 때, 학교장은 해당 사안의 경위와 상황에 대해 충분히 안내합니다.

Q&A (?



'4호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를 할 경우 보호자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시전에 통지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규수업이 끝난 뒤 남겨서 교육하고자 할 때 귀가 시간과 현재 상황을 보호자에게 안내하기 위함입니다.

Q&A (?)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 분리 시 필요한 학생보호인력 '중등' 예시 중 배움터 지킴이는 근로자가 아닌 자원봉사자인데, 학생 인계 및 관찰 업무를 부여할 수 있나요?



지원봉사자 또는 근로자 신분 여부와 상관없이 배움터지킴이는 학생보호인력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학생보호인력은 학생 비행 인지 시 학교의 장 또는 생활지도 담당교사 등에게 인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움터 지킴이는 해당 학생의 인계업무만 담당하며 실질적인 생활교육은 교원이 지도하길 권장합니다.

근거》「학생보호인력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4195, 2018.11.07.)

제2조(정의) 본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학생보호인력"이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0조의 5에 규정된 인력으로써, 배움터 지킴이 학교보안관민간경비(주간) 사회복무요원 등 학교 내에 배치되어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을 위해 활동하는 인력을 말한다.
- 제6조(학생보호인력의 역할) ① 자워봉사활동 형태의 학생보호인력은 학교의 장과 상호 혐의하여 활동 내용을 정한다.
 - ② 자원봉사활동 형태 이외의 학생보호인력은 학생생활지도 관련 교사의 학교안전 업무를 보조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참고하여 학교실정에 맞게 학교의 장이 역할을 부여한다.
 - 5. 기타 학교의 장이 명하는 학교안전 관련 제반 업무
- 제8조(임의 조치 불가 등) ① 학생보호인력이 활동 중에 학생 비행 인지 시 임의조치를 해서는 아니되며 반드시 학교의 장 또는 생활지도 담당교사 등에게 인계해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생보호인력이 학생의 비행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 단계의 위급상황 발견 시 현장에서 적절한 임의 조치(경고, 훈계 등)을 하고 학교의 장 또는 생활지도 담당교사 등에게 인계한다.





학생 분리 지도 시. 학생의 출결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훈육으로서의 분리는 생활지도의 일환으로 법령에 근거한 징계·피해자 보호 조치와는 다르므로 「학교생활 기록의 작성 및 관리지침」 제8조(출결상황) 기재가 불필요합니다. 고시 제12조(훈육)제6항제3호, 제4호 및 제7항의 분리는 별도 공간에서 학습지원을 하는 것이므로 출석으로 처리합니다. 단. 학교에서 '분리지도학생 관리대장'. 가정학습 확인서'등을 통해 학습상황 관리 및 학습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여 분리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

Q 46

Q&A (?)



학생 분리 지도 시, 분리 장소 및 인계·담당 주체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학교에서 어떻게 정할 수 있나요?



🔼 🕽 학생 분리 지도를 위한 절차 및 장소, 인계 또는 담당 주체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학생, 교원,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 학교의 장이 학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예 일시 분리 지도 추진 절차

절차

주요내용

사전준비

학교장 교직원

- 학칙 개정. 수업 방해 학생 일시적 분리 지도방안* 마련
- * 분리 장소. 시간. 학습지원 방법. 실시 절차 등
- 생활지도 고시 내용 및 학적 개정 내용 공표·홍보

교실 내 분리

w

수업교사

- 별도 분리 좌석 및 지정 위치로 이동 지시
- 이동 시 자신의 학습자료(교과서) 등을 지참하여 지속적 수업 참여
- 학생의 행동 교정 시 원래 자리로 복귀

교실 밖 분리

교장. 교감 등 지도교사

- 교실 옆 복도로 분리
 - ※ 가능한 경우 복도에서 수업내용 청취(또는 별도 과제 부여)
- 별도 분리 장소(성찰실 등)로 이동
 - ※ 수업교사는 비상벨 시스템, 내선 전화 등 학교 상황에 적합한 방법으로 교직원 등에게 분리 요청
- 분리장소(성찰실 등)에서 대체 학습 과제 제시 및 수행
 - ※ 학교장에게 분리 사실 및 학습 현황 보고

보호자에게 학생 인계 (가정학습)

w

학교장 (교감 등)

- 보호자에게 학생 수업 방해 사유* 통보 및 인계 요청
- ※ 교실 밖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 방해
- 가정에서의 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 안내
- 가정학습 점검 확인서 보호자 전달
- 보호자 인계확인서 작성 및 제출

후속관리

관리자. 담임교사. 교과교사 등

- 분리조치 학생 임장 지도
- 분리 장소 안전상태 점검
- 필요시 학생 상담(결과 누적기록 관리 등)
- 분리학생 상담 및 치료 권유

보호자

- 전문가 상담 및 치료 권유 시 적극 협조
- 보호자로서의 아동교육에 대한 책임 의무 이행
- 가정학습 점검 확인서 작성 및 제출

Q&A (?)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과 관련하여 학교는 어떤 지침에 근거하여 진행해야 하나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제4조(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된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전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해당 내용 이외에는 교육 3주체(교원, 학생, 학부모)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학교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운영하도록 합니다.

관련 참고 자료

▶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2020. 4. 7.)

- 따라서 수업이 평온성 유지 등 학교 생활질서 확보 차원에서 휴대전화 소지 사용 제한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수업시간 중에만 사용을 제한하고 점심시간 또는 휴식시간 등에는 사용을 허용하는 등 학생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 하면서도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에도, 학교에서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는 그 제한이 과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다.

▶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관련 보도자료(2024. 10. 7., ○○언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는 지난 2024. 10. 7.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고 중·고교에서 등교시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는 '인권침해가 아니다'라고 결정함. 중·고등학교에서의 휴대전화 수거와 보관은 장점이 단점보다 적지 않고 피해 최소성을 위반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함. 한편 외국 주요 선진국들도 최근 학생들의 디지털 기기 괴몰입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연이어 시행하기 있음.
- ※ 국가인권위원회가 기각 사건에 대해서는 결정례를 작성하지 않으므로 관련 보도자료를 명시함

Q 48

Q&A (?)

특수교육대상자 생활지도 시 고려할 사안은 무엇인가요?



특수교육대상 학생 역시 학교공동체의 구성원으로 학교의 생활규정에서 정하는 학생의 권리와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에 의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의 경우 장애 유형과 정도를 고려하고, 장애 영역별 인지적·신체적·심리 사회적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적합한 생활지도를 실시해야 합니다.

예 장애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 예시

장애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 예시

* 만일 자폐성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가 특정 어휘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과 같이 행동의 원인이 장애특성에 주로 있을 경우 생활지도와 행동중재를 병행(並行)하며 상호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시에 의한 생활지도

개별화교육지원팀은 특수교육대상자와 보호자에게 감각통합적 중재 등 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자원을 조언, 상담함. 특수교육대상자의 행동 강도와 후속 반응에 따라 지시, 훈육, 훈계, 보상을 절차에 맞게 사용하고 학생이 생활지도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수신호, 상황 그림 등 다양한 표현 양식을 활용함. 또한. 생활 규칙 적용 시 특수교육 대상자의 장애 유형과 정도를 고려하여 횟수 등을 조정해 줄 수 있음

행동중개 기법 활용 지도

선호도 분석을 통해 반향어로부터 관심과 주의를 환기 시킬 수 있는 개인 과제를 추가하고, 어휘 반복의 횟수와 소리 강도를 줄여나가기 위해 토큰 경제와 같은 강화물을 활용할 수 있음. 또한. 대체 기술로 그림교환의사소통체계를 지도할 수 있음.

참고: "장애학생 행동중재 가이드라인』(교육부, 2024.10.) 개별학생을 위한 긍정적 행동지원(학지사, 2020)

병행

V-4

학생생활규정 예시안 관련 서식(예시)

서식 20

물품 분리보관 신고서

학생 성명					학번					
분리보관 일시		년	월	일	시					
분리보관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분리보관 물품										
	요건 해당									바당 사항에 체크
ㅂ긔ㅂ邧	1호	수업 종료	로 후에도	보관하는	물품					
분리보관 해당 요건	2호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예정 쓰신	3호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4호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본 교원은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2조 제9항, 학생생활규정 제00조에 따라,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의 부적합한 물품 사용으로 해당 물품을 분리보관하였음을 신고합니다.

교원 성명

월 일

년

(서명 또는 인)

○○**학교장** 귀하

물품 분리보관 확인서

학생 성명				힝	번			
분리보관 일시	년	월	일	시				
분리보관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분리보관 물품								
분리보관 경위								

-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2조 제9항, 학생생활규정 제00조에 따라, 위와 같은 경위로 해당 물품을 분리보관하였음을 통보합니다.
- 분리보관 물품 중 타인과 자신의 안전에 해가 되거나 학생에게 금지된 물건 등은 보호자가 직접 물품을 회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보호자가 원할 경우, 해당 물건을 반환하지 않고 폐기할 수 있습니다.
- 분리보관 기간(3일) 종료 후 다시 3일이 지난 후에는 물품을 자동으로 폐기하며, 해당 기간 이후 학교는 물건 폐기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학교장

서식 21 물품 폐기 확인서

물품 폐기 확인서

학생 성명	
학년/반	
물품 발견 일시	년 월 일 시
즉각 폐기 물품	
즉각 폐기 경위	※ 학생의 부적합한 물품의 종류 및 구체적인 사용 행위, 폐기의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본 교원은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2조 제9항, 학생생활규정 제00조에 따라,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의 부적합한 물품 사용으로 해당 물품을 위와 같은 경위로 학생으로부터 분리 보관 후 폐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교원 성명 (서명 또는 인)

학교장 귀하

서식 22 분리지도학생 관리 대장

분리지도학생 관리 대장

(○○○학교)

				,,,,,,,,,,,,,,,,,,,,,,,,,,,,,,,,,,,,,,,
날짜	2025 ()	분리 장소	OOO:	7
대상학생 (학번, 이름)	분리사유	분리시간	학습지원 내용	지도교사
10101 안00		10:00~10:20 (20')		

- 1. 10101 장00. 주어진 과제 미수행으로 시간 연장됨을 2교시 교과수업담당 교사에게 알림
- 2. 10101 장00. 무선이어폰을 이용하여 음악을 듣는 등 특별실(성찰실) 규칙 위반으로 물품을 분리 보관하여 담임교사에게 인계함

서식 23 보호자 인계 확인서

보호자님께!

○○○○학교장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2조(훈육)제6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본교에서는 보호자께 학생을 인계하여 가정학습을 실시하도록 하고자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학습 실시에 따른 보호자 협조사항

- (가정학습보호자확인서 제출) 아래의 '보호자 확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제출방법(예시) : '보호자 확인서'를 (담임)교사에게 사진으로 전송, 메일, 출력물 지참 등 편리한 방법으로 제출
- (가정학습 시 특이사항 발생시) 즉시 (담임)교사에게 연락(문자 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관련문의: 000-000-0000 (업무담당명, 학교대표 번호이용)

2025년 00월 00일

○ ○ ○ 학교 장 (직인생략)

보호자 인계 확인서

아래와 같이 학생을 인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하년 반 이름

인계 일시	인계 사유
년 월 일	교육활동 지속 방해

학생 성명	(서명)
인계자 성명	(서명)
인계자 연락처	학생과의 관계()

※ 학생 인계는 학생의 법적 보호자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제3자에게 보호자로부터 유선 확인 후 인계 가능함.

서식 24 가정학습 보호자 확인서

가정학습 보호자 확인서

학년 반 이름

가정학습 실시	가정학습 내용
년 월 일	○○○ 온라인 학습 참여, 교과서 내용 정리 등
특이사항	

보호자 성명	(서명)
보호자 연락처1	학생과의 관계()
보호자 연락처2	학생과의 관계()

아래와 같이 가정학습을 실시하였음을 점검·확인합니다.

2025년 00월 00일

○ ○ ○ 학 교 장 (직인생략)

서식 25 행동성찰문(성찰하는 글쓰기) 서식

	행동성	성찰문(성	성찰	하는 글쓰기)		
일자	년	월	일	요일			
학번				학생 성명			
※ 다음 문항에 대하여 자신	의 생각을 솔	직하게 작성	성해보시	세요			
1. 자신에게 있었던 문제 상	황(친구와의	갈등, 교칙	위반 -	등)은 무엇인가요?	?		
2.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	른 사람(친구,	, 부모님,	선생닏)은 어떠한 기분을	을 느꼈을까요	2?	
3. 앞으로 같은 상황이 재발	되지 않으려면	변 자신 스	<u>스로</u> !	무엇을 해야 한다.	고 생각하나요	£?	
4. 주변 사람들이(친구, 부모	님, 선생님)0	나에게	어떤 <u></u>	- E움을 주었으면 붉	~ 좋겠나요?		
					년	월	일
확인	교원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식 26 교실 밖 일시적 분리 조치에 따른 분리 장소 규칙

※ 교실 밖 일시 분리 조치 지도에 따른 분리장소 규칙 게시물 교실, 학교게시판, 학교 홈페이지, 분리실 등에 게시하여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

성찰실에서 지켜야 할 사항

성찰실에 있는 동안 수업활동에 참여할 수 없으며 분리 조치가 1일 ()회 이상 누적될 경우 보호자에게 인계될 수 있습니다.

주어진 과제를 완수하고 아래 규칙을 성실히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 1. 시간이 부여된 경우 정시에 착석해야 합니다.
- 2. 주어진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야 합니다.
- 3. 스마트워치,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등 전자기기는 사용 불가합니다.
- 4. 지정된 자리에 앉아야 하며 자리 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5. 물 이외의 음식 또는 음료수는 먹을 수 없습니다.
- 6. 꼭 필요한 질문 이외의 대화를 할 수 없습니다.
- 7. 바른 자세로 앉아 있어야 하며 잠을 자거나 엎드려 있을 수 없습니다.
- 8. 정해진 성찰 과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 9.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시간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10. 학생이 이를 거부할 경우 학칙에 따라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학교장

서식 27 개인 휴대전화 사용 허가 요청서

개인 휴대전화(정보통신 기능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허가 요청서

학생 성명										
학년/반										
신청 물품										
사용 신청 일시	년	월	일		시					
사용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용 목적	휴대전화등 구체적			기능	· 휴대용	전자기가	를 포함한	다) 종류,	구체적인 .	사용 행위와
증빙자료										

- ◈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5조, 학생생활규정 제○○조에 따라, 수업중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받고자 함
- ◈ 휴대전화 보관 및 사용에 따른 책임은 물품 소유자 개인에게 있음
- ◈ 기존 목적에 맞지 않는 휴대전화 사용 또는 불법적 사용에 따른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

년 월 일 학생 성명 (서명 또는 인) 보호자 성명 (서명 또는 인)

○○ 학교장 귀하

서식 28 학생생활규정 관련 법령

「교육기본법」

-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평생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 ② 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 ③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무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초・중등교육법」

- 제8조(학교 규칙) 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 ② 학칙의 기재 사항과 제정·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학생의 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할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 제20조(교직원의 임무) ①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 ②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에서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원(수석교사를 포함한다)가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 ④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 ⑤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
-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 **제32조(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①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경우 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은 제외하고,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자문한다.
 -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후략)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 제9조(학교 규칙의 기재사항 등) ① 법 제8조에 따른 학교의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 7. 학생 포상, 징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 생활에 관한 사항
 - 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 9. 학칙개정절차
 - ④ 학교의 장은 제1항제7호(학업 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보호자,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① 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 1. 학교내의 봉사
 - 2. 사회봉사
 - 3. 특별교육이수
 -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5. 퇴학처분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 ④ 교육감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특별교육이수 및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와 관련하여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 1. 학업 및 진로
 - 2. 보건 및 안전
 - 3. 인성 및 대인관계
 - 4. 그 밖에 학생생활과 관련되는 분야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의 범위,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 제59조94(의견 수렴 등) ①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려는 경우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 1. 법 제32조제1항제1호, 제5호, 제6호, 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사항
 - 2. 그 밖에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미리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 하도록 정한 사항
 - ②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1. 법 제32조제1항제1호, 제6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사항
 - 2.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학생생활규정 길라잡이

③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게 할 수 있다.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 처분의 제목
-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 6. 의격제출기한
-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②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은 청문 주재자의 소속·직위 및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 청문에 필요한 사항으로 갈음한다.
-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2.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 3.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⑤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등 제4항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제4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당사자등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를 알려야 한다. 다만, 신속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 후 그 사유를 알릴 수 있다.
- ⑦ 제6항에 따라 당사자등에게 알리는 경우에는 제24조를 준용한다.

제24조(처분의 방식)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 1.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는 경우
- 2. 당사자가 전자문서로 처분을 신청한 경우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거나 시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SMS(문자메세지) 전송,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 문서가 아닌 방법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요청하면 지체 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 ③ 처분을 하는 문서에는 그 처분 행정청과 담당자의 소속·성명 및 연락처(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를 적어야 한다.

제26조(고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 ②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事變),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 ③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 ⑤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제1항에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제1항에 규정된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 ⑥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0조(집행정지) ①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續行)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 ② 위원회는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 ③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 ④ 위원회는 집행정지를 결정한 후에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 정지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⑤ 집행정지 신청은 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제7조제6항 또는 제8조제7항에 따른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집행정지 결정의 취소신청은 심판청구에 대한 제7조제6항 또는 제8조제7항에 따른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적은 서면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심판청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경우로서 심판청구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할 때에는 심판청구서 사본과 접수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⑥ 제2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리·결정을 기다릴 경우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위원장은 직권으로 위원회의 심리·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추인(追認)을 받아야 하며, 위원회의 추인을 받지 못하면 위원장은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 취소에 관한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⑦ 위원회는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취소에 관하여 심리·결정하면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결정서 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행정소송법」

- 제20조(제소기간) ①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 ②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학생생활규정 길라잡이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23조(집행정지) ①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 ②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 ③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
-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 ⑥ 제30조제1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3에서 학교의 장과 교원에게 부여한 학생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 2. "특수교육대상자"란「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3. "교육활동"이란「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 4. "학생생활지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지도 행위 (이하 "생활지도"라 한다)를 말한다.
- 5. "조언"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6. "상담"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체의 소통활동을 말한다.
- 7. "주의"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 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8. "훈육"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지시, 제지, 분리, 소지 물품 조사,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9. "훈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깨닫게 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10. "보상"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교육 3주체의 책무) ①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생

활

규

정

예 시

안

관

련

서

식

예 시

- ④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하여 시설,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 ⑤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제4조(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전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제2장 생활지도의 범위

제5조(학업 및 진로)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업 및 진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1.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 2.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사용
- 3.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제6조(보건 및 안전) 학교의 장과 교원은 보건 및 안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1.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 2.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3.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제7조(인성 및 대인관계) 학교의 장과 교원은 인성 및 대인관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1.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 2.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제8조(그 밖의 분야)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1.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 2.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 3. 비행 및 범죄 예방
- 4.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3장 생활지도의 방식

제9조(조언)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 ②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하여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상담) ①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상담은 수업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생생활규정 길라잡이

학교의 장과 보호자 간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 ③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④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 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 3. 근무 시간 외의 상담
- ⑦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주의)**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제12조에 따른 훈육 또는 제13조에 따른 훈계를 할 수 있다.
 -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 제12조(훈육)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9조에 따른 조언 또는 제11조에 따른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 ⑥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 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 2.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 3.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 4.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 ⑦ 학교의 장은 제6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생활규정 예시안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 ⑧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 ⑨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 1. 제11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 4.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여 소지·사용을 금지한 물품
- ⑩ 교원은 제6항제3호·제4호 및 제9항에 따라 생활지도를 한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 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36조의5에 따른 학급담당교원은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학급의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 사항을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학급생활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서는 보호자 또는 특수교육교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
- 제13조(훈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9조에 따른 조언, 제10조에 따른 상담, 제11조에 따른 주의, 그리고 제12조에 따른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 ②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 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 1.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행동
 - 2. 성찰하는 글쓰기
 - 3.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한다)

제14조(보상)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4장 기타

-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제59조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2조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 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제16조(생활지도 불응시 조치) ①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②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7조(이의제기)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학생생활규정 길라잡이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 제18조(그 밖의 생활지도의 범위 및 방식) 학교의 장은 이 고시에서 학칙으로 위임한 사항 및 그 밖에 생활지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1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3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칙에 관한 특례) 제8조제4호, 제12조제6항 및 제9항, 제18조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 학칙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한시적으로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이 고시에서 위임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혀

장

적

사

례

학생생활규정 예시안 현장 적용 사례

1. 조언

(**〉** 현장 적용 사례

초등

- ☑ 학생이 일정 기간 관찰하거나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를 분석하여 학부모에게 상담 및 병원 진단을 받아볼 것을 조언함
- 💿 학생들의 안저한 등·하교와 교내 통행 지도를 위해 학교생활을 관찰 후 일일교육계획, 학급 훈화, 알림장 등을 통해 횡단보도에서 뛰지 않기, 휴대폰을 보며 걷지 않기, 계단 한 칸씩 올라가기, 친구와 다투거나 괴롭히지 않기 등 구체적 지침을 조언함.
- 💿 학생들의 모둠 활동 시작 전 의사소통 방법, 역할 분담, 발표순서, 갈등 해결 방법 등을 미리 조언함
- 💿 학생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도록, 나이 제한에 맞지 않는 영상, 게임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도록 조언함.

- 💿 수업 중 충동조절이 어려운 학생을 꾸준히 관찰 기록하고 상황에 따라 녹화 및 녹음을 하여 보호자에게 교육청 위(Wee) 프로젝트 등을 안내하고 전문 상담을 받도록 권유함.
- 💿 상급학교 선택과 관련하여 학생의 흥미나 적성을 파악하지 못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과 보호자에게 커리어넷 (https://www.career.go.kr/)의 진로심리검사를 소개하고 고용24(https://www.work24.go.kr/)를 활용하여 관심 작업에 대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안내함.

특수

- 통합학급 내 규칙 만들기 과정에서 특수교육대상자를 고려하기 위해 다음의 절차를 추가
 - 1) 학생의 현행 수준을 반영한 규칙 변환 (예)아침독서 대신 색칠하기
 - 2) 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규칙을 바라본 다음 제시 (예)교사가 박수를 세 번 치면 모든 행동을 멈추고 교사를 바라본다는 규칙을 그림으로 만들어 칠판에 게시

2. 상담

♠ 현장 적용 사례

초등

- 학생이 수업 중 자리를 이탈하거나, 큰 소리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수업과 관련 없는 이야기를 하는 등 문제 행동을 지속·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현재의 문제 상황을 알리고 행동의 개선을 위해 학생 및 보호자와 상담함.
- 학생이 친구 관계로 힘들어하거나, 갈등 상황이 발생하는 등 교우관계에 어려움을 보이는 경우 교우관계 회복을 위해 학생과 상담함.
- 담임교사는 학급 내 학생 간 경미한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필요 시 학생의 피해와 회복 정도를 고려해 가급적 당일 또는 빠른 시일 내에 학부모와 상담함.

중등

- 💿 3회 이상 지도를 해도 문제 행동이 지속되는 경우 교감 선생임이 교무실로 학생을 불러 상담함.
- ◎ 학교 부적응 학생에 대하여 담임 교사가 수회 상담하여 상담 내용을 기록한 후 교내의 전문상담교사에게 전달함. 이후 전문상담교사가 다양한 심리검사와 주기적 상담을 진행하고 그 과정에 학부모 상담도 병행함으로써 상태가 많이 호전됨. 특히, 학교 부적응 원인 중 진로 및 진학에 대한 불안과 관련하여 진로전담교사(학교알리미, 대학알리미, 대교협 대입상담프로그램 등을 활용함)와 협업 상담을 진행함으로서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아짐.

특수

- 📀 학생의 주의집중 시간과 상황을 이해하는 능력을 고려하여, 간단하고 명확한 문장을 사용하여 상담함.
- 📀 지속되는 문제행동에 대해 학부모에게 알리고 바람직한 행동 지도 방법에 대해 가정과 연계·협력하여 지도함.

3. 주의

현장 적용 사례

초등

- 💿 수업 중에 날카롭고 뾰족한 도구 사용 시, 교사는 본인과 주변 학생이 다치지 않도록 주의를 줌.
- 💿 체육 활동 중 친구의 얼굴을 항해 공을 던지거나 친구의 신체를 과도하게 잡거나 밀치지 않도록 주의를 줌
- 학생 전체가 준비물을 나누어 주거나 보상을 할 경우 질서있게 차례대로 줄을 서도록 주의를 주거나 처음부터 교사가 그룹을 지정하여 정한 그룹부터 차례대로 나오도록 주의를 줌.
- 수업 시간에 사용하는 교구가 학생들의 장난감이나 학교폭력 매개로 변하지 않도록 주의를 함.

중등

① 교과 수업 중 다른 교과 공부를 하고 있거나 학원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여 '교과 수업 중 교과 공부나 학원 과제를 하지 말래!'라고 주의를 주고 해당 내용을 기록 누적함. 이후에도 동일한 행동이 반복되어 기록된 내용을 보여주고 다시 유사한 행동을 하면 학생생활지도 절차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함.

특수

② 학생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학생이 주로 사용하는 의사소통방식(그림, 제스처, 손담 등)을 모든 교원과 공유하여 주의 목적과 이유를 충분히 이해하도록 함

/-5

4. 훈육

가. 지시

() 현장 적용 사례

초등

- 학생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실내화를 꺾어 신지 않도록 지시함.
- 💿 수업이 시작되었는데 자리에 앉지 않고 교과서 등 수업 준비를 하지 않은 경우 자리에 바르게 앉고 수업 준비를 하도록 지시함.
- 💿 친구의 몸을 잡고 놀고 있는 학생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으니 다른 사람의 몸에는 손을 대지 않고 놀이하자'고 지시함
- 수업 시간 중에 허락없이 나가지 않도록 지시함
- 💿 점심시간, 쉬는 시간, 중간놀이 시간에 복도에서 전력 질주를 하거나 계단 난간에게 미끄럼틀을 타는 경우. '계단 여러 칸을 점프해서 내려가는 경우 천천히 걷도록, 미끄럼틀을 타지 않도록, 계단을 한 칸 씩 천천히 내려오도록' 주의를 줌.

- 💿 학생에게 지시를 할 때에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이유(지각 사유. 과제를 못 해온 이유 등)울 묻고 해당 지시를 하게 되는 구체적인 상황(수업에 늦었다. 과제를 하지 않았다 등)을 이야기하고 이에 따라 요구하는 지시사항 (수업에 늦지 마라!, 과제를 해와라!)을 이야기함.
- 지시 내용은 구체적으로 '과제를 해와라!'보다 '내일 12시까지 2층 교무실 내 책상 위에 놓아두어라!'라고 함. 교무실 내 책상 위에 놓아두어라!라고 함.

트수

- 1단계의 지시에 익숙해지도록 매일 반복하여 '3단계 지시 따르기'를 지도하고 정기적인 통합교육혐의회를 열어 교원 간 지도 상황 공유
- 1단계: '멈추세요'와 같은 언어적 지시 → 수행했을 때 → 크게 칭찬
- ② 2단계: 손짓 등 모델을 보여줌 → 수행했을 때 → 칭찬
- ⑤ 3단계: 손을 잡고 같이 함→수행했을 때→작은 칭찬

나. 제지

현장 적용 사례

- 🕟 학생이 본인 또는 다른 학생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할 경우 교사는 "멈춰", "하지마", "그거(위험한 물건 등) 바로 내려놔", "뒤로 물러서" 등의 단호한 말투로 구두 제지를 할 수 있으며, 구두 제지로 행동이 멈추지 않을 경우에는 위협을 가하는 학생의 팔, 다리 등을 잡아 물리적 제지를 함. 단, 긴급한 상황에서 즉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바로 물리적 제지를 가할 수 있으며, 물리적 제지를 가하는 경우에는 학생의 부상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사용함.
- 🕟 학칙에 주자창 등 위험한 곳에 가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 옥상 등 위험한 곳에 있는 학생을 발견했을 때 이곳에 오지 말라고 제지함.

\delta 수업 모둠 활동 중 학생간 역할 배정 문제로 언어 폭력이 발생함. 자칫 물리적 폭력으로 확대될 수 있어서 모든 모둠 활동을 중단하도록 제지하고 모둠 구성을 변경함.

특수

🟮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제지가 성급히 일어나지 않도록 교과 시간을 예로 한 구체적인 생활지도 방법을 예시화 하여 교원 간 공유

행동발생의 단계	제지가 사용된 생활지도 상황 예시
0. 일상적인 상태	교실 상황에서 평소와 같은 일상적인 모습을 보임
1. 유발: A가 리코더를 연주하고 싶었는데, 선생님이 "지금은 안돼"라고 답하자 큰소리로 리코더를 달라고 조르기 시작하였다.	주의, 훈육(지시, 제지)를 통한 지도 •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도: "A야, (시각적 단서를 제공하며) 지금 무슨 시간이야? 맞아, 지금은 사회 시간이라 리코더를 불 수 없어. 리코더 스티커는 어디 있어? 맞아, 리코더 스티커는 음악 옆에 있어. 리코더는 음악 시간에 할 거야(파이 타이머를 보여주며) 세 칸 후가 음악 시간이야," • 긍정적이고 침착하게 표현하기 • 관심 전환하기: "사회 교과서에서 사람 그림만 찾아 낱말 스티커를 붙여볼까"
2. 흥분/가속: A는 벌떡 일어나서 소리를 지른다. "지금 바로."	 주의, 훈육(지시, 제지)를 통한 지도 ● 두 가지 선택을 제안함으로써 경계 정하기: "A야, 혼자 팔짱을 끼거나 숨을 크게 세 번 쉬어보자." ● 팔을 하나 뻗는 정도의 거리 유지하기 ● 주변을 살피기, 잠재적으로 위험한 물건들 치우기 (예, 짝꿍 일어나게 하기, 주위 책상 간격 벌리기, 리코더와 날카로운 물건 치우기)
3. 위기: A는 교실에서 드러눕고 데굴데굴 구르기 시작한다.	주의, 훈육(지시, 제지, 분리)를 통하한 지도 ● 안전을 우선하며 학생이 해야할 행동을 명확히 전달하기: "A야, 멈추자!"라고 말하거나 신호등 모형, 호루라기 등 약속된 신호 제시 ● 교실 내 특정장소(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12조 ⑥항 1. 교실 내 다른 좌석 2.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이동 지시하기: "A야, 흥분하면 저 의자에 앉아 다시 생각해 보기로 약속했지? 일어나서 사물함 앞 의자에 앉아!" ● 물리적 제지(교실을 구르다가 학생이 자신의 머리를 벽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되는 등) 또는 교실 밖 분리 필요성이 예상될 경우 비상벨로 도움 요청하기 ● 다른 교직원이 올 때까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지켜보며, 다른 학생들을 안전한 장소 (예: 칠판 앞, 교실 앞 복도)로 이동시키기 ●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타인 및 교실 기물과 거리/빙향 변경하기(예: 학생이 흥분한 상태 에서 벽 쪽으로 움직이면, 교시는 부드러운 공을 바닥으로 굴려 학생의 관심을 전환)
3-가. 진정 및 회복	구조화된 완화: '0. 일상적인 상태'로 복귀됨에 따라 분리 지도하지 않음
3-나. 위기상황의 지속	구조화된 완화: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 학생 자신 및 타인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 상황이 발생할 경우, 물리적 제지를 사용할수도 있음(예: 자신의 머리를 벽에 부딪히려고 하거나 교사의 머리카락을 세게 움켜쥐고 당기며 놓지 않는 경우 등. 자신과 타인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되는 상황에서는 2인 이상의 교직원이 학생의 좌우에서 팔을 잡아 학생의 행동을 일시적으로 멈추는등의 최소한의 물리적 제지를 사용할 수 있음) ●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12조 ⑥항 3.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를시행하며 관련 절차에 따라 지도하기 ● 학생이 일상적인 상태로 회복되면 해당 행동에 대해 지도하기

다. 분리

(>) 현장 적용 사례

초등

- 🧿 (사전준비) 학칙 마련-학교 구성원 간의 역할 분담-분리 계획 수립-분리 공간 마련
- 🧿 (1호 및 2호) 지정된 좌석으로 이동하도록 지시, 주의를 줌, 수업 시간 중 일부 시간 범위 안에서 실시하되 학생이 수업에 참여 의사를 보일 경우 복귀시킬 수 있음
- 💿 (3호) 지정된 분리 장소로 학생 보호 인력을 통해 인계하며 수업 시간 40분 동안 분리하며 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의 과제를 부여할 수 있음. 3호 이상 관리자 보고
- 💿 (4호) 보호자가 올 때까지 분리 장소에 대기시켰다가 보호자가 오면 인계하기. 보호자가 오지 않거나 불응 시 분리 장소에 학생을 보호하기, 가정학습 인계 확인서, 가정학습 확인서 받기, 상담 및 병원 등 전문기관에 연계지도 받도록 조언하기
- 💿 (운동장 수업 중 1, 2호) 운동장애 있는 벤치나 스탠드를 해당 학생이 분리되도록 함. 교사의 시야에 있는 장소에 학생을 분리하도록 하며 학생이 학급의 수업을 모두 관찰할 수 있어야 함. 학생을 모든 수업 활동에 배제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가능한 5~10분 이내로 다시 활동에 복귀시킴.
- 💿 (체육관 및 강당 수업 중 1, 2호) 체육관 뒤 편이나 옆 쪽에 안전이 확보되고 교사의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는 곳에 학생을 분리시킴. 학생이 학급의 수업을 모두 관찰할 수 있어야 함. 가능한 5~10분 이내에 학생을 다시 활동에 복귀시킴.
- 💿 (운동장, 체육관 및 강당 수업 중 3, 4호) 인터폰이 없으므로 대표 학생에게 교무실에 가서 분리 관리 주체자에게 알리고 학생 보고 인력이 해당 학생을 인계해 함.
- 💿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등의 학교 밖 활동 중 분리) 1, 2호는 교사의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는 곳에 잠시 분리시킴. 학생이 학급의 활동을 모두 관찰할 수 있어야 함. 3, 4호는 분리 장소를 마련하기 어렵고 학생을 낯선 장소에서 분리시킬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동료 교사 및 해당 체험학습 장소의 인력의 도움을 받아 학생을 안정시킴. 학교 관리자 및 학부모께 사안 발생에 대해서 알리고 문제 행동에 대해 학교에 돌아 와서 추후 지도를 하도록 함.
- 💿 수업 시간 중 담임교사가 교육활동 방해 및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교실 밖 분리 지도를 교무실에 요청할 경우 관리자나 상담교사가 학생을 인계하여 지정 장소(민원면담실)에서 분리 지도함. 추가로 분리 학생이 생기거나 관리자와 상담교사 부재 시 보결교사가 인계하여 지정 장소에서 분리 지도하도록 규정에 정함.
- 👩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 분리가 필요한 수업방해 학생이 발생시 교무실로 유선 연락함-관리자가 학급으로 가서. 학생 인솔하여 민원상담실에서 상담을 통해 문제행동에 대한 이야기 나누기 후 교과시간표대로 개별학습 진행함-학생의 마음이 진정되고 개별 학습지도가 진행되는 동안 학급 복귀를 희망하는 경우 학급으로 인솔해주고 담임교사 에게 학생 지도내용을 설명함.
- 💿 분리 시 분리담당교사는 엄격하고 명확한 언어로 분리지도 절차 및 분리 과제 지도를 진행해야 함.
- 💿 (분리지도 체계화) 분리지도 방법 및 절차를 체계화하여 즉각적인 대응이 이루어져서 분리지도 대상자 및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음. 긴급분리가 필요할 때 분리담당자를 찾다가 시간을 소모하지 않도록 연락 체계를 정비, 사안발생 시 담임교사가 학교대표전화로 전화하면, 긴급도담팀에서 지도 가능한 사람이 바로. 해당교실로 찾아가 분리장소로 해당학생을 인솔함. 교장/교감 등 관리자가 적극적으로 분리지도에 앞장 서고, 사안의 경중을 판단하여. 임시/장기 분리여부 및 생활교육 방법/수준을 팀 단위 회의를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함.

> 현장 적용 사례

- (분리 공간 확보) 분리 공간을 따로 확보하여 교실 밖 분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교사가 다른 학생들의 수업 방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즉각적인 분리지도가 가능하다고 점에서 효과적임. 교무실 내 일부 공간을 활용하여(가벽 및 출입문 설치) 분리학생 지도를 위한 공간을 구축함으로써 분리학생, 자원봉 - 142 - 사자, 지도교원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공간 활용도를 높임.
- ☑ (분리지도관리 주체 선정) 분리지도관리 주체를 특정 교사나 관리자로 규정하기보다는 여러 담당자를 순위를 두어 정해두어, 분리지도 사례가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났을 때 혹은 담당자의 부재 등 특수 상황이 나타났을 때 등을 대비할 수 있도록 마련함. 지도감독은 학교장이 하며, 분리학생 인계는 교감(1순위), 교무실 교사(2순위), 그 외 교직원(3직원)로 역할 분담, 수업방해 행동학생지원 지원봉사자 인력 확보

중등

- 인성부 담당 선생님을 비롯한 담임 선생님, 각각 교과목 선생님들까지 수시로 분리된 학생을 확인하고, 학교 과제 수행 등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분리된 학생의 학습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분리 학생 지도에 학교장, 교감이 우선적으로 참여하고 학교장, 교감 부재시에만 협의를 거쳐 교직원들이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함. 참여 학생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 교과 관련 독서 및 교과서 활용 지도를 진행함.
- ⑤ 교무실 내 일부 공간을 활용하여(가벽 및 출입문 설치) 분리 학생 지도를 위한 공간을 구축함으로써 분리학생, 자원 봉사자, 지도교원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공간 활용도를 높임.
-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분리 지정장소 및 분리 담당자는 매년 교직원 회의를 통해 연초에 지정하며, 분리 지정장소는 1차 방송실, 2차 교장실로 정함. 또한 분리담당자는 1차 교감, 2차 교장으로 정하며, 관리자 부재시 학생분리 및 인계는 교직원이, 분리 학생 지도는 교원이 대신함.
- ② 교모가 큰 (중등)학교의 경우 학생들 또는 학급들을 몇 개 그룹으로 나누고 그룹별 멘토 또는 담당 생활지도 교사 (예: 관리자, 선임교직원, 비담임교사, 비교과 교사, 부장교사 등 활용)을 지정할 수 있음. 중등학교에서 분리 발생 시 해당 수업 시간 또는 50분 이내의 시간 동안 멘토와의 시간을 갖기도 함.(유사하게, 중등학교의 경우 교과교사가 아닌 교직원(또는 관리자, 부장교사 등)을 각 학년 책임자로 배정하여, 이러한 교직원들을 학습 멘토 등으로 지정하여 학생들이 수업 시간과는 다른 방식으로 교직원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기도 함).
- (분리조치를 시행했으나 오히려 문제행동이 강화된 사례) 지정된 장소로 분리가 되었다고 해도 문제행동 수정(교정)에 대한 교육울 받는 것이 아니라 학습지를 풀거나 간식을 먹거나 그냥 쉬게 함. 이로 인해 학생은 분리교실로 가기 위해 문제행동을 끊임없이 반복함. PBS와 같은 전문적인 행동지원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분리지도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학칙으로 정하여 절차대로 지도해야 함.
- ◎ (교실탈출 아동을 분리지도한 사례) 교실을 탈출하는 아동에 대해 교무실에서 분리조치를 시행함. 교감이 아동을 지도하고 학부모를 호출하여 학부모 상담을 진행함. 학부모는 3일동안 학교에서 아이를 관찰함. 이후 아이는 병원에서 필요한 약을 처방받고 더 이상 동일한 문제행동을 반복하지 않음.
- (분리를 거부하는 학생을 교감이 전하는 경우) 교사는 교사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학생A에게 1,2호 조치를 지시했으나 불응함. 결국 교사는 학생A에게 3호 조치를 지시하고 교감에게 분리를 요청함. 교감은 3분내에 교실에 나타나서 A를 분리하려 시도했으나 분리를 거부하며 완강히 버팀. A는 여전히 교사에게 적개심을 드러냈으나 교감이 이를 제지함.
- (분리 지도 방법 마련) 분리지도 시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마련하여 학습 공백이 일어나는 것을 최소화하고자 함. (중등) 분리 순간 학습 프린트를 제공하여 과제를 부여하고, 2차시부터는 실시간 원격수업을 통해 본 수업에 참여하여 학습권을 보장함

<u></u> 한 현장 적용 <u>사례</u>

특수

💿 학생 행동의 의도와 기능이 '감각 자극 및 심리안정 추구'인 경우는 일반적인 분리 지도와 구분되어야 함을 예시화 하여 교원 간 공유

구분 (예시)	행동의 의도 및 기능	분리장소 (시간)	절차 및 유의점	지원	
학습 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행동 (고성, 소리지르며 울기, 옷벗기, 교사에게 매달리기 등)	및 심리안정 (학생이 즐기, 추구 진정됐다고		감각 제어에서 기인하는 문제 행동의 경우 다른 학생의 반응이나 수업 상황이 자극을 촉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독립적이고 안전한 장소로 신속히 이동시킴	촉각볼, 흔들 의자, 조도 조절, 안전 매트, 몸을 감싸는 쿠션, 스윙 등 심리안정 물품 지원 및 환경 조성 안정 후 구조화된 자율 과제 부여 또는 복귀	
	학습 거부, 일탈, 의도적 수업 방해				
건강이나 생명,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 (때리기, 물기, 물건, 휘두르기, 물건 부수기, 자해 등)	의도와 기능에 상관없이 자신 또는 타인에게 위해가 되는 행동				

라. 물품 조사 및 분리보관

현장 적용 사례

초등

◎ 장남감 총을 학교에 가져 와서 주변 학생을 위협하는 행위를 할 경우 물품을 분리함. 학생으로부터 물건을 분리하여 교실 내 사건 장치가 있는 곳에 보관한 후 물품 분리 보관 신고서 및 확인서를 작성함. 물품 분리 보관 확인서를 학생편에 주어 가정에 전달되도록 함. 물품 분리 보관 결재를 통해 보고함.

중등

- 💿 휴대폰이나 유사한 기기를 학교에 가져올 수는 있으나 학업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조회, 수업, 준비 시간 등에는 전원을 끄고 눈에 띄지 않게 가방 안에 보관함.
- 💿 괴롭힘, 사생활 침해, 비방 또는 음란물 유포, 타인의 허가 없는 사진 촬영 및 녹음 등을 수반하는 휴대폰 사용은 엄격히 금지하며, 특정 동의없이 다른 사람의 휴대폰에서 문제 메시지나 이메일을 읽는 것도 금지함.

() 현장 적용 사례

- ⑤ 학생들은 항상 학교의 책임있고 허용 가능한 사용 규칙에 따라 모바일 장치를 사용해야 하며, 학교는 휴대전화가 규칙에 위배되게 사용되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학생의 휴대폰을 압수할 수 있음.
- 💿 허가 받은 학생이 수업 중 허가된 목적 외의 사용시, 주의 후 휴대전화 사용을 중지 및 분리할 수 있음.
- ◎ (보다 엄격한 규칙의 경우) 교육적은 목적으로 학생들의 개인의 태블릿 및 노트북을 지참할 수 있으나 핸드폰은 해당되지 않음.
- ◎ 개인 소유 핸드폰 등 모바일 장치를 학교 우선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특수

- 보건복지부 고시「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등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여 학생이 사용하는 물품의 보조기구 해당 유무를 살펴 분리보관 규정을 적용
 - 1) 탄력밴드로 장난을 치는 시각장애 학생: 보조기구가 아닌 감각추구 행동 지도를 위한 교육 물품이므로 절차에 따라 분리보관하고 필요 시 촉감장갑 등 대체품을 제공.
 - 2) 흰지팡이로 장난을 치는 시각장애 학생: 보조기구이므로 관련 법령*에 의거 모든 장소에서의 사용을 보장하고 분리보관 할 수 없음. 교사는 분리보관을 제외한 다른 생활지도 방법을 적용.
 -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4조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6. 보조견 또는 장애인 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이하 생략)

5. 훈계

(>) 현장 적용 사례

초등

- ☑ 성찰하는 글쓰기를 실시할 경우, 초등학생 저학년은 글쓰기를 어려워할 수 있으므로,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을 교사가 제시하고, 학생이 답을 적거나 구두로 답하는 방법을 사용함. 예를 들어 "언제 어디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그때 ○○이는 어떤 마음이었나요?". "그 친구는 기분이 어땠을까요?", "또 그런 일이 생긴다면 ○○이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등의 질문을 활용함.
- 훈계의 방안으로 성찰하는 글쓰기를 실시하였는데, 학생이 바르지 않은 태도로 참여할 경우 교사는 성찰하는 글쓰기를 학생의 교육적 지도를 위해 실시함을 안내하고. 학생이 바른 태도로 참여하도록 지도함.
- 분리로 인해 분리 공간으로 이동하게 된 학생에게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교과서를 적는 과제를 부여함 또한, 학생이 스스로의 행동을 깊이 생각하고 돌아보게 하는 성찰일자 작성 과제를 부여함.
- 💿 학생이 학교 기물을 파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를 해야 함을 훈계하고 이를 보호자에게도 안내함.
- 학생이 유무 등을 쏟았을 경우 청소를 하도록 훈계함. 다만, 저학년과 고학년에서의 교사의 도움 여부가 달라질수 있음.

중등

② 선택과목 수업으로 이동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수업에 늦게 들어오는 학생에 대해 문제 행동을 명확하게 설명한 후 다음 1주일 동안은 수업 시작 1분 전까지 교실에 들어와서 자신의 정해진 자리에 앉아 있도록 지시함. 다시 늦는 경우에는 수업이 끝난 후 늦은 시간만큼 교실에 남아 있어야 함을 안내함. (교실 또는 뒷정리를 하도록 함)

6. 보상

♠ 현장 적용 사례

초등

- 💿 행동 관리 전략의 일환으로 어떤 형태의 구역 또는 목표 보드를 활용함. 수업 중 학생들을 다른 위치로 이동시켜 행동과 노력을 보상하거나 제개를 가함.(예: 매우 긍정적인 행동의 경우 '무지개 너머', 행동이 악화되는 경우 '먹구름 위에 앉기', 또는 가장 심각한 행동의 경우 '비 구름속'), 아이들은 숫자 척도 등을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으며, 아동이 특정 '점수' 수준(긍정 또는 부정)에 도달하면 보상(별 또는 인증서를 받거나 제재(교실 밖으로 이동. 교장실로 보내짐)을 함.
- ◎ 생활지도의 영역에서 바람직한 행동을 보이는 학생에게 구두로 칭찬하거나 작은 보상품을 줌.

중등

- 💿 모든 학생들은 각 수업 시간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 포인트를 적립하고, 나쁜 행동에 대해 포인트를 차감함. 이후 포인트를 통한 보상 '구매'가 가능하며, 이때 보상은 특정 직책 획득이나 보상 시간 획득 등을 비롯해 다양한 형태로 주어짐(개별 보상, 그룹 보상, 학교 상점 상품 등의 인센티브, 점심시간 탁구 시합 참여, 교장 선생님과 식사할 수 있는 특권, 학급 여행 등)
- 💿 매달 칭찬 학생을 선정하여 학교 게시판 등에 얼굴과 이름 등을 제시함(가급적 우수 분야를 구체적으로 제시)
- 💿 제재의 일환으로 아동에게 분노 관리 또는 이완 중재를 실시하는 등 행동을 명시적으로 다루기 위한 개입이 있음. '보상'은 적절한 동기 부여 역할을 계속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새로 고쳐질 필요가 있음.

특수

💿 학급 및 학교 차원의 보상체계 운영: 학교차원 긍정적행동지원의 일환으로 00마켓을 열면 - (중략) -○○마켓은 분기별로 운영하고 학급에서 받은 강화 화폐로 마켓에서 원하는 물건을 구매할 수 있다.

[출처: 현장특수교육 31권 2호(국립특수교육원, 2024. 10)]



학생생활규정 길라잡이

학생생활규정 길라잡이 (2025 개정판)

VI.

학생생활규정 제 개정

VI-1.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의 이해 194

VI-2.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Q&A 205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VI-1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의 이해

학생생활규정

- 학생생활규정이란?
 - 학교 규칙(이하 '학칙') 중에서 '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을 학생생활규정이라고 함
 - '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생, 학부모 등 보호자, 학교의 장과 교원(교육 3주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 별로 법령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음
- 교육 3주체
 - 학생: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 보호자: 친권자로서 학생을 보호하고 양육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학생의 부모(학부모), 친권자가 없는 경우 학생의 후견인, 기타 학생을 실질적으로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
 - 학교의 장과 교원: 「초·중등교육법」제19조 제1항에 따른 교장·교감·수석교사 및 교사
- 학교 규칙의 구성(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각호)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 1.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 2.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 3. 교과·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 수료의 인정
- 4. 입학·재입학·편입학·휴학·퇴학·수료 및 졸업
- 5.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 6.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 10.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

- 7. 학생 포상, 징계, 교육 목적상 필요한 지도방법, 학업 중단 예방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 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 9. 학칙개정절차

0|

🧼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의 원칙

- 학생생활규정은「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등 관련 법령에서 법령의 취지와 절차에 따라 제·개정되어야 함
- 학생생활규정의 제·개정 방향은 '자율과 책임 중심의 자치 규칙'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 관련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 규칙의 기재사항 등) ④ 학교의 장은 제1항제7호(학업 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이하 '제·개정위원회') 구성과 역할

- 제·개정위원회의 위원은 '학생, 보호자, 교원, 전문가(필요시)'로 구성하되, 인원은 교육 3주체의 대표 참여를 고려하여 최소 5인 이상으로 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7인 이상을 권장함
-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 구성 및 역할

구성(예시)	역할
 제·개정위원회는 학생, 보호자, 교원 대표로 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최소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7인 이상을 권장함 교원위원은 교직원 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 중에서 선출 위원회의 학생 대표는 특정 학년에 치우치지 않게 구성하며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 다만, 불가피한 때에만 학생회 대의기구를 통하여 선출 보호자 위원은 학부모회에서 선출 전문가는 교원, 학생, 보호자 위원의 추천으로 위촉하되 아동, 청소년, 사회복지, 인권, 상담, 법률 관련 경력자 등을 폭넓게 외부위원으로 인정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 	 제·개정안의 적법성, 타당성 검토 설문조사, 문헌조사, 의견수렴 등의 절차와 방법 결정 토론회, 공청회 등 주관 개정 시안 수립 학생, 보호자 및 교원 대상 연수·홍보 기타 학칙 관련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 결정 학년말 당해 연도 학칙 운영 성과 등을 평가 분석

🥠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운영 체크리스트(예시)

T4-71	웨그 나는	체	ul-7	
절차	체크사항	예	아니오	비고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 구성	제·개정위원회는 학생, 교원, 보호자, 전문가(필요시)로 구성되었는가?			
	제·개정위원회 구성원의 수가 5인 이상으로 적절히 구성되었는가?			
	학생 위원은 특정 학년에 치우치지 않게 구성하였는가?			
개정안 발의	개정안 발의 주체가 적절하였는가?			
	학생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는가?			방법:
교육 3주체 의견 수렴	보호자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는가?			방법:
	교원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는가?			방법:
인권보장 방향	학칙 제·개정 절차과정 및 세부 내용에서 학생인권을 충분히 고려하였는가?			
제·개정위원회	제·개정위원회에서 안건을 검토하였는가?			심의일:
검토	개의 정족수와 의결 정족수가 적절하였는가?			
학교운영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쳤는가?			심의일:
심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과정에 학생 대표가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주어졌는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학교의 장 승인 (학교의 장 결재)을 거쳤는가?			
공포 및 안내	학교 구성원들이 개정된 규정을 알 수 있도록 학교 게시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공고하였는가?			
	제·개정된 주요 내용에 대해 학생, 교원, 보호자에게 안내, 연수를 하였는가?			

🥠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절차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따라 미리 학생, 교원, 보호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그 외의 절차는 학교별 여건 및 추진상황에 따라 민주적 의사 절차의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규 정

제

개 정의

0|

•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절차(예시)

절차 추진내용 세부 추진내용 ○ 학생, 교원, 보호자로 구성(필요시 전문가 포함) 1) 학생생활규정 ○ 학생 위원 수가 전체 위원의 1/3 이상 권장 제·개정위원회 구성 ○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제반 사항 추진 ○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이 있는 경우 2) 제·개정안 발의 ○ 발의 주체:교육 3주체, 제·개정위원회, 학생회, 교직원회, (발의 주체 주관) 보호자(학부모)회 등 1. 학생생활규정 ○ 교육 3주체의 의견 수렴 제·개정위원회 - 학생:학급·학년 회의, 총학생회 회의 및 설문조사 등 3) 학교 구성원 의견 수렴 - 보호자:학부모회 및 설문조사 구성과 활동 (제·개정위원회 주관) - 교원: 부서별, 학년별 회의, 전체 교직원 회의 - 필요시 학생, 교원, 보호자 토론회 실시 ○ 발의안 확정 ○ 제·개정위원회에서 발의안에 대한 문구와 적정성 검토 후 제·개정 심의안 확정 4) 제·개정 심의안 확정 ○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최종안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 5) 학교운영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최종안 확정 심의 및 최종안 확정 심의 6) 학교의 장 결재 ○ 학교의 장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안 승인 7) 학생생활규정 ○ 학생생활규정 공포·시행 ○ 학교 게시판. 홈페이지 탑재 및 가정통신문 발송 공포 및 정보공시 3. 학생생활규정 ○ 교육 3주체 대상 학생생활규정 안내 8) 제·개정 사항 안내 공포·시행 ○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 및 분석 9) 적용 및 환류 ○ 교육 3주체의 공론화 만족도, 학생생활규정 준수 및 실천 정도 평가

- ※ 단위학교의 특성에 맞춰 재구성 가능
- ※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는 학년 초에 구성하고, 연간 운영 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장함
- ※ 발의안: 제·개정위원회가 발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견 수렴을 마친 상태
- ※ 심의안: 제·개정위원회가 발의안에 대한 자구와 적정성 검토를 마친 상태
- ※ 제·개정안: 학교우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안으로, 제·개정안은 학교의 장 공포를 통해 확정

학생생활규정 길라잡이

•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안의 발의

- 학교 구성원 누구나 학생생활규정의 제·개정 발의 가능
- 다만 학생자치회, 보호자(학부모)회, 교직원 회의 등 학교 내 기구를 통하거나, 일정 수 이상의 참여를 발의 요건으로 하는 것은 가능

• 민주적 의견 수렴 절차

- 제·개정위원회에서는 제·개정 발의안의 적법성과 타당성, 형식적 요건과 개정 시기 적정성 등에 대해 검토하고, 교육 3주체의 의견 수렴을 진행
- 학생의 경우 학생자치활동(학급·학년회의, 학생대의원회, 동아리 활동 등), 온·오프라인 설문조사, 스티커 붙이기. 학교 우체통. 토론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의견 수렴
- 교원의 경우 부서별 회의, 학년별 회의, 교직원 회의 등을 통해 의견 수렴
- 보호자의 경우 보호자(학부모)회, 가정통신문(설문조사, 인터넷 조사) 등을 통해 의견 수렴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안 마련

- 제·개정위원회는 민주적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모은 의견을 반영하고, 학생생활규정의 형식요건에 부합 하도록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안을 마련
- 현행 학생생활규정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안 내용을 비교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 내용을 신구 조문 대조표의 형식으로 작성
- 확정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안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학교의 장은 심의안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사유가 없는 한, 학교운영위원회에 그대로 상정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 제·개정위원회의 위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수립 경과, 주요 내용 등을 설명
- 학생생활규정의 제·개정 사항은 대부분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학생 대표 등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제공

• 제·개정안 학교의 장 승인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되면 그 결과를 학교의 장에게 즉시 보고
- 학교의 장은 법령 위배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개정안에 대해 승인

• 제·개정된 학생생활규정의 공포와 시행

- 학교의 장은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안을 승인하여 공포
- 학교 게시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공고
- 공고 시 반드시 제·개정한 학생생활규정의 시행 시기 명시

• 학생생활규정 이해 교육

- 제·개정 후에는 교육 3주체에게 학생생활규정 개정사항을 포함한 전체 규정을 다시 공지
- 학교의 장은 제·개정된 학생생활규정을 교육 3주체 모두가 인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 연수를 실시하고, '모두의 학교 문화 만들기 책임 규약' 서명 운동도 할 수 있음
- 학년 초 교육 3주체에게 학생생활규정 전체를 안내해야 하며, 이때 학생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서약서 작성 및 제출을 강제하지 않도록 유의

점검 및 화류

- 학교의 장은 제·개정위원회를 통해 제·개정 절차에서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차기 개정에 이러한 사항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준비

• 운영 근거

- 「초·중등교육법」제32조(기능) ①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경우 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은 제외하고,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자문한다.
 -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 「초·중등교육법」제8조(학교 규칙) 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 규칙의 기재사항 등) ① 법 제8조에 따른 학교의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 9. 학칙개정절차
 - ④ 학교의 장은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보호자,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의4(의견 수렴 등)

- 제59조의4(의견 수렴 등) ①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려는 경우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다
 - 1. 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5호. 제6호. 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사항
 - 2. 그 밖에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미리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정한 사항
 - ②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1. 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6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사항
 - 2.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 ③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게 할 수 있다.

• 제·개정 시 유의사항

- 제·개정위원회는 학년 초에 구성하고 연간계획 수립 후 활동
- 교육 3주체 의견 수렴 과정 필수
- 학생 의견 반영 비율이 50% 이상이 되도록 노력
- 학생들의 실제적인 참여 방안 마련(토론회, 투표 등)
- 학생들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기술
- 강제적 규정이 아닌 학교 자율성을 존중하고 학생 인권을 기본으로 하는 생활규정
- 교육 3주체 모두가 합의된 규칙을 숙지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며 준수하고 실천하는 노력

🥠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규정 예시(「2022년 학교 규칙 운영 길라잡이(교육부)」)

- 제○○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학생생활규정 개정 절차'에 필요한 세부 사항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조(적용 범위) '학생생활규정'을 제·개정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준수한다.
- 제○○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학생생활규정'이라 함은 본교의 학교 규칙 중에서 '학생 포상, 징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법,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와 학업 중단 예방,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학칙개정 절차, 기숙사 생활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 제○○조(학생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의 구성) ① 학교장은 본교의 '학생생활규정'을 제·개정하기 위하여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 (이하 "제·개정위원회")를 구성한다.

해당 용어는 '규정개정심의위원회', '학생생활규정 재·개정위원회' 등과 같이 다양한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이 안내서에서는 '학생 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제·개정위원회)'로 용어를 통일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실질적 결정 단위가 아닌 절차 운영과 자문의 역할이라는 점에서 그 구성원을 위원으로, 외부 위원인 경우에는 위촉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 ② 이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OO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생·보호자·교원·전문가(필요시)가 포함되도록 하고, 교원의 수와 보호자의 수는 각각 학생의 수를 넘지 않도록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교원위원은 교직원 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 중에서 선출하다.
- ④ 위원회의 학생 대표는 특정 학년에 치우치지 않게 구성하며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다만 불가피한 때에만 학생회 대의기구를 통하여 선출할 수 있다.
- ⑤ 위원회의 보호자 위원은 보호자 대표 회의에서 선출한다.
- ⑥ 위원회의 외부 전문가는 관련 전문가 중에서 학생·보호자·교원 대표로서 선출된 위원들이 위촉하도록 한다.
- ⑦ 위원회의 구성에 앞서 반드시 학생·보호자·교원에게 위원회의 구성 목적과 방법, 일정, 활동 내용에 대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한다.
- **제○○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고, 간사를 두어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한다.
 -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유고 등으로 인하여 새롭게 선출된 위원의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③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 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교원 대표, 보호자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 **제○○조(개정안 발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 3. 보호자 대표회의(의견서 첨부)
 - 4. 학생 또는 학생 대의원 1/3 이상 동의
 - 5. 학교장
 - ②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시기(학기말 또는 학년말 등)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 제○○조(검토 및 의견 수렴) ① 위원회는 설문조사, 토론회 등의 방법으로 발의안에 대해 교육 3주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특히 학생의 의견을 결과에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 ② 위원회는 발의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다.
- ③ 제1항에 의한 의견 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조(심의 및 결정) ① 위원회는 제·개정 발의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 수렴 등 민주적 절차를 거친 심의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 ②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심의 시 학생 대표 등이 회의에 참여하여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한다.
 - ③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심의 절치에서 학생 또는 학생자치회의 의견제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 M○○조(공포 및 정보 공시) 제·개정안은 학교 홈페이지 탑재, 학교알리미 공시 등에 정보 공시한다.
- 제○○조(연수 및 교육) 개정된 학생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보호자에게는 가정통신문 등으로 개정 내용을 안내한다.
- 제○○조(적용 및 환류) 학교의 장은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의견 수렴 및 분석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학생생활규정의 준수 및 실천 정도를 평가하는 등 상시 개정 체제를 마련한다

🥠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관련 서식(예시)

• 학생생활규정 안내

학생생활규정 안내문

보호자님께

자녀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학생의 보호자가 함께하는 생활교육을 추진하고자 학생생활규정을 본교 홈페이지에 탑재하였으니 학생과 함께 이 규정을 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학생생활규정이나 생활교육의 방법과 절차 등에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담임교사나 학생생활교육 담당 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교는 학생생활규정을 토대로 민주적인 생활교육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학생들이 교육 3주체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함께 노력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초·중·고등학교장 ○○○

• 의견 수렴 양식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발의안에 대한 의견 수렴 안내

안녕하십니까.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에 교육 3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학생생활규정은 학생, 교원,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학교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에서 교원과 보호자, 학생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주요 개정 사항은 첨부해 드리는 바와 같으며, 발의안 전문은 우리 학교 홈페이지 공지 사항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보호자께서는 발의안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발의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초·중·고등학교장 ○○○

202O학년도 ○○초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안내

안녕하십니까.

202이학년도 본교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학생생활규정을 제·개정함에 있어서 교육 3주체(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려고합니다. 보호자께서는 자녀와 함께 ○○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생활교육위원회 규정 포함)을 자세하게 살펴보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월 ○○일(○)까지 온라인 설문을 통해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의 권리와 인격을 상호 존중하며 더욱 행복한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초안에 대한 교육 3주체 의견 반영 방법
- 가. 학생 의견 반영: 1~6학년 학급 자치회 → 학생자치 대의원 회의를 통한 의견 수렴
- 나. 교원 의견 반영:교직원 회의를 통한 의견 수렴
- 다. 보호자 의견 반영: 본 교육통신문을 통한 의견서 및 학부모회 의견 수렴
- 2. 합의 개정 방법:학생 자치회 대표 3인, 교원 대표 3인, 보호자 대표 3인으로 구성된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에서 각 공동체의 의견 수렴한 내용 합의 시안 마련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개정 → 공포 및 시행
- 3. 보호자 의견서 제출 방법: 온라인 설문 응답 http://000000.00
 - ※ 본교 학생생활규정(20○○.○.○.)은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려두었습니다.

20 년 월 일 서울()()초등학교장

○○초 학교 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에 대한 의견서

학년	반	학생이름	보호자 성함	현 학생생활규정 관련 조항	학생생활규정 개정 의견
개정 의견 설명					

※ 의견수렴을 위한 온라인 설문 응답 주소 http://000000.00

서울○○초등학교장 귀하

0|

○○학년도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발의안에 대한 의견

(예시 1)

찬성	반대	기타 의견

(예시 2)

관련 조항	의견	비고
제○조		
제○조		

20 년 월 일

보호자 성명:(서명) 학생 성명:(서명)

•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발의안 양식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발의안

규정 항목	현행 규정	의견(안)	의견 제출 사유
예시) 제○조 교복	예시) 동절기 교복 위에 방한용 외투를 착용할 수 있지만, 수업시간에는 착용하지 않는다 (단, 색상은 무채색이어야 함)		예시) 교복 위 외투 착용을 제한하는 것은 학생의 건강권과도 관련이 있으며. 교복 안이나 외투 색깔을 제한하는 것은 개인의 개성 실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

○○학교 학생생활규정 중 위와 같은 부분에 대해 개정이 필요하다는 학생회 회원들의 의견제출에 따라 ○○학교 대의원 대회를 거쳐 위와 같이 개정을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학교 학생자치회장 ○○○ (서명)

[붙임] 대의원회 회의록 1부

학생생활규정 길라잡이

• 학생·보호자 확인 양식

학생·보호자 확인

202○년도 ○○학교 학생생활규정 및 지도계획을 잘 읽고 이해하였으며, 규칙을 잘 준수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학년 반 번 학생 성명: (서명)

보호자 성명: (서명)

20 년 월 일

○○초·중·고등학교장 귀하

🥠 학생생활규정(학교 규칙) 등에 대한 교육·연수 운영(예시)

대상	횟수	방법	
학생	연 1회 이상	 학기 초 학급 단위로 실시하여 학칙과 바른 태도 등을 사전에 안내하도록 함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을 활용하여 실시함 	
교직원	연 1회 이상	 생활교육 관련 법령, 생활교육의 요건과 예시 상황, 학생 대상 생활교육 사전 교육 방법 등을 포함함 	
보호자	연 1회 이상	 학부모 연수, 가정통신문, 핸드북 배부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음 가정에서의 인성교육과 기본 생활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O&A



0&A (7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시 고려해야 할 원칙은 무엇인가요?



바람직한 학생생활규정은 학교라는 조직 내에서 그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모든 규범을 뜻하며 학교 운영의 근간이 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이 중요하듯 학교생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학생생활규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학생생활규정은 학생 생활교육에 대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공동체 구성원이 깊이 고민하여 함께 만들고 약속할 때 모두가 자율적으로 준수하고 실천하며 평화로운 학교생활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첫째, 절차적 민주주의 원칙 준수(상위법 존중. 제·개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교육 3주체의 적극적 의견수렴.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 등)입니다.

둘째, 교육적 목표에 맞는 개정입니다. 학생생활규정은 학생을 통제하고 규제하는 수단이 아니라 학생들의 자율적인 참여와 활동을 지원하고 조력하는 교육활동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따라서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은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바람직한 학교문화를 조성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셋째. 지율과 책임 중심의 자치 규칙이어야 합니다. 교원, 학생. 보호자의 참여와 의견을 반영하여 학생생활규정을 만들고, 서로 소통하며 공감대를 넓혀가야 하며 제·개정 과정에 학생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육기본법 제12조 교육당사자(학습자의 책무)

제12조(학습자) ①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 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③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크게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 규칙)

제8조(학교 규칙)(1)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② 학칙의 기재 사항과 제정·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인권보장 등)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등) ①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로 소·중등교육법 제32조(학교 규칙의 제·개정)

제32조(학교운영위원회 기능) ① 국립·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 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9조(학교 규칙의 기재사항 등) ① 7. 학생 포상, 징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법 및 학교 내 교육· 연구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④ 학교의 장은 제1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보호자, 교원 등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와 관련하여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 1. 학업 및 진로
- 2. 보건 및 안전
- 3. 인성 및 대인관계
- 4. 그 밖에 학생생활과 관련되는 분야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의 범위,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Q&A (?)



학생생활규정은 매년 개정해야 하나요? 그리고 제·개정위원회는 학생생활규정을 제·개정할 때만 구성하면 되나요?



학생생활규정은 매년 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개정안이 발의되었을 때 심의 절차를 거쳐 개정하면 됩니다. 제·개정 위원회는 신학년 초에 구성하고 운영합니다.

제·개정위원회는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을 위한 교육 3주체의 참여 방법과 의견 제시 방법 등을 안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개정위원회는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학생, 보호자, 교원의 불편·불만 사항을 상시 확인하여 학기말 또는 분기별로 반영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매 학년말에는 학생·보호자·교원을 대상으로 연간 학생생활규정 운영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학년도 개정에 참고하도록 합니다.

Q&A (?

교육지원청에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을 위한 컨설팅 요청 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교육지원청에서는 교육 3주체의 합의를 기반으로 한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과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 청「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속 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에 컨설팅을 요청하시면,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을 위해 필요한 절차 지원, 학생 생활규정 현안 관련 사항, 학생생활규정 검토 및 일견 제시, 사례 공유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컨설팅 분야

-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절차 지원
 - 위원회 구성 및 역할
 - 학교 구성원 참여가 바탕이 되는 학생, 보호자, 교원의 발의 방법 및 의견 수렴 방법
 - 확정된 생활규정 공포와 안내 방법
 - 제·개정시 유의사항
 - 추진 계획, TF구성 등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실제 사례 공유
- 학생생활규정 관련 학교 현안 지원
- 학교별 우수사례 안내
- 학생생활규정 검토 및 방향 제시
 - 학생생활규정 점검표(초등용, 중등용) 기준에 따라 학생생활규정 검토
 - 학생생활규정 조항이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맞는가?
 - 학생 인권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가 반영되어 있는가?
 - 학교생활규정을 통해 학생의 기본 권리를 보장 확인하며, 이를 위반 시 관련 학생이 선도와 교육, 학교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권리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목적이 명시되어야 함
 - 학생생활규정의 목적이 명시되었는가?
 - 학교 규칙, 학생생활규정, 생활교육위원회 등의 조항이 서로 충돌하지 않는가?
 - 학생생활규정 징계기준이 교육적이고 학생들이 스스로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가?
 - 학생징계규정이 단계적이고 절차가 적절한가?
 -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규정인가?
 - 생활평점제 또는 징계 기준이 너무 모호하거나 지나치게 세부적이지는 않은가?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시 참고할 다른 학교의 학생생활규정은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학교별 학생생활규정은 교육기관정보공개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시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학교 홈페이지 또는 '학교알리미'(초·중등 교육정보 공시서비스) 웹사이트에 탑재되어 있으나 제·개정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학교알리미(초·중등 교육정보 공시서비스)

https://schoolinfo.go.kr/Main.do



Q&A (?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안 발의는 누가 할 수 있나요?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안 발의는 학생, 교원, 보호자와 같은 학교 구성원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발의에 대한 기준은 학교 상황에 따라 학생생활규정으로 정하여 주체별로 공식적인 발일로 인정하고 제·개정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안 발의 기준(예시)

- ① 주체별 발의 인정 기준
 - 1. 제·개정위원회 재적 위원의 1/2 이상의 동의
 - 2. 재직 교원 1/3 이상의 동의
 - 3. 학생 또는 학생 대의원 1/3 이상의 동의
 - 4. 보호자(학부모)회 위원 1/3 이상의 동의
 - 5.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한 학교의 장 발의
- ②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시기(학기말 또는 학년말 등)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Q&A (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을 위한 교육 3주체의 의견 수렴 숙의 절차는 언제 시작하면 되나요?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에서 제·개정(안)을 만들면 이를 공유한 뒤 숙의(熟議26) 시간을 갖습니다.

숙의 자료는 학생의 경우 학급회의. 대의원회의, 학생회 회의 등에서 내용을 공유합니다. 보호자는 보호자(학부모) 총회, 보호자(학부모)회 주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서 공유하며, 교원은 교직원 회의 등을 통해서 내용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Q&A (?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관련 회의와 토론회 등을 온라인으로 실시해도 되나요? 그리고 학생, 보호자의 의견 수렴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온라인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할 회의와 토론회 등의 절차. 방법을 결정하고 진행하면 됩니다. 제·개정 관련 회의, 토론회, 공청회 등은 줌, 구글 미트,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을 활용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의견수렴 방법으로는 학교에서 사용 중인 온라인(모바일) 알림서비스 등에서 제공하는 회신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설문을 제작하여 U 과 QR코드를 보내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Q&A (?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시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는 모여서 해야 하나요?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토론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토론회를 꼭 강당에서 모든 학생이 모이지 않아도 되며, 학급자치활동을 이용하여 학급 내 토론활동을 통해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규정 시안의 틀을 잡고, 최종적으로 학생 대표(학생회), 교원 대표, 보호자 대표(학부모회 등) 등이 시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²⁶⁾ 여러 사람이 모여 어떤 문제를 깊이 생각하여 충분히 의논함

토론회 참고 자료 - 토론회 안내문(예시)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을 위한 학생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지켜야 할 규정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자신이 지킬 규정은 자신이 만든다는 생각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토론 안건은 학생 선도 규정과 용의 복장 규정입니다. 두 규정은 지난번 공동체 생활협약과 같은 자율 준수 규정이 아닙니다. 학교가 본래의 교육활동을 수행하고 공동체를 원만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필 요한 조치와 의무 사항을 정하는 것인 만큼 학생 다수의 의견이라 해서 반드시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학생 다수의 의견을 확인하고, 이를 반영할 방안을 찾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토론회는 학급 단위로 실시합니다. 학급을 단위로 하되, 조별로 토론하고 조별로 의견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훨씬 좋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형식은 담임선생님들께서 학년이나 학급의 상황에 비추어 적절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늦어도 다음 주 화요일 안에 토론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덧붙인 양식에 토론 결과를 정리하여 00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학급 단위로 진행된 학급은 학급별로, 조별로 토론이 이루어진 곳은 조별로 모아주시면 됩니다.

수합한 자료는 학생회 임원들이 분류하여 정리한 뒤, 그 결과를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에 제출할 것입니다. 제·개정위원회에서는 학생 및 교원, 보호자에게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개정 시안을 작성할 것입니다.

토론회 참고 자료 - 토론회 배부 자료(예시)

다음은 학생생활규정 개정 작업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선도 규정, 용의 복장 규정 개정 시안입니다. 공동체 생활협약을 제정하듯이, 학생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스스로 지켜야 할 학교 규정을 잘 이해하는 과정이 되고,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이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는데 보태고 싶은 이야기를 모아 반영할 수 있는 과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모아준 의견은 학생회에서 수합하여 정리한 뒤, 학생생활규정 개정 시안을 마련하는 위원회에 제출할 것입니다.

- 1. 학생생활규정 개정 시안 중 징계의 대상과 기준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18조, 동 시행령 9조 및 31조, 학칙 28조에 의거하여, 교육활동이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학생의 공동체 생활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한 학생을 교육하는 절차와 기준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6조(징계 대상과 기준)** 벌점이 과도하거나, 교육활동이나 공동체 생활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는데 방해되는 행위는 엄정하게 징계하되,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한다.
- ① 미인정결석과 미인정 지각·결과·조퇴[미인정 지각·결과·조퇴가 3회이면 미인정결석 1회로 간주함]
 - 1. 미인정결석 00일 교내봉사 3일, 교내 상담 프로그램 이수
 - 2. 미인정결석 00일 교내봉사 5일, 교내 상담 프로그램 이수

(이하 생략)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안 시안을 만들 때 학생 의견 반영 비율은 얼마인가요?



학생, 보호자, 교원의 의사 반영 비율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학생생활규정 적용의 대상이 학생들이며, 제·개정 과정 자체가 학생들에게 책무성을 부여하고 주인의식을 키우는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이기 때문입니다.

시안을 놓고 토론을 하다 보면 이해당사자 간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할 때가 있습니다. 가급적 합의에 의한 결론 도출이 바람직하나 절충이 어려울 때에는 각 안건에 따른 표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제·개정된 학생생활규정을 공포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심의 결과가 확정되면 학생회 홍보 게시판 및 SNS,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학사력 등에 해당 내용을 알리고, 필요시 학생생활규정을 준수하겠다는 협약식 등을 개최하거나 '모두의 학교 문화 만들기 책임 규약(서울교육공동체 약속)' 서명 운동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개정된 학생생활규정을 알리기 위한 연수를 실시하고 학년말에는 새로운 규정 적용에 따른 피드백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생생활규정 시행

-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시안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마지막 단계인 학교의 장 결재를 받아야 한다.
- 학교의 장 결재가 끝나면 비로소 제·개정된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절차가 완료되고, 공포를 통하여 실질적인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확정 후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학사력 등을 통해 구성원들에게 공포한다(정보공시 반영).
- 새롭게 제·개정된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학생, 보호자, 교원 대상 연수를 실시하고, 규정에 따라 선도주간을 운영할 수 있다.
- 학년말에 학생, 보호자, 교원을 대상으로 제·개정된 학생생활규정 시행에 대한 설문을 하고, 개선사항에 대한 검토 과정을 거친다.

근거 제9조(학교 규칙의 기재사항 등)

① 법 제8조에 따른 학교의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7. 학생 포상, 징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방법, 학업 중단 예방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 학생생활규정 안내(준수선언) (○○초 예시)

20○○학년도 ○○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 안내

보호자님 안녕하십니까?

본교에서는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원활한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생생활 규정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이번 학생생활규정 개정은 학교가 학생의 올바른 성장을 돕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학생에게는 개정 절차에 참여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직접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교육 관련 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초안 마련을 하였고,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 구성 후 개정 추진 절차에 의거하여 교육 3주체(학생, 교원 보호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였고, 논의를 거쳐 ○○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을 완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학생생활규정의 가장 중요한 주체는 학생이기에 4~6학년 학생 대상 학급회의 및 전교 학생자치 회의를 거쳤으며, 본교 학교운영 위원회 심의 등의 과정을 충실히 밟았습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개정된 본교 학생생활규정을 교육 3주체 모두에게 안내하고, 학생들이 숙지·준수할 수 있도록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하고, 가정통신문으로도 알리고자 합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준수 선언문

우리는 서울○○초등학교 교육 3주체로서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며 즐겁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으로 약속합니다.

- ◆ 학생 우리는 선·후배 및 친구들을 사랑과 믿음으로 존중하고, 선생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학생생활규정을 준수한다.
- ◆ 교원 우리는 학생들을 사랑으로 가르치며 다양한 경험과 체험을 바탕으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 ◆ 보호자 우리는 자녀들이 공동체 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바른 품성을 기를 수 있도록 돕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정당한 생활교육 방안을 존중한다.

20 년 월 일 서울○○초등학교장

모두의 학교를 위한 책임 규약 서명 운동

모두의 학교를 위한 책임 규약 서명 운동이란?

- ❖ 모두의 학교를 위한 책임 규약이란 학교의 교육 3주체(학생, 교원, 보호자)의 책임과 학교 규칙을 인식하고 존중하며, 함께 실천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실시하는 캠페인 성격의 활동임
- ❖ 책임 규약 서명 운동은 학칙 및 생활지도에 관한 내용과 각 주체의 책임을 인식하고 실천해 나가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며, 법령과 고시에서 부여받은 학생 및 보호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님
- ❖ 책임 규약 서명 운동의 운영 단위 및 시기, 방법 등은 학교의 여건에 따라 결정할 수 있음

구분	세부 내용(예시)
운영 단위	학교 단위, 학년 단위, 학급 단위 등
운영 시기	학년 초, 학기 초, 특정 교육주간 등
운영 방법	학교 구성원 의견 수렴 및 캠페인, 결과 공유회 등

모두의 학교 문화 만들기 책임 규약

학교의 장과 교원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와 관련하여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교육할 수 있습니다. 교육에 있어서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은 사용되지 않습니다.

1 생활교육 영역

- 1. 학업 및 진로
- 2. 보건 및 안전
- 3. 인성 및 대인관계
- 4.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한 분야

② 생활교육 방법

1. "조언":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할 수 있습니다.

- 2. "상담":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체의 소통을 위한 상담을 상호 간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3. "주의":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4. "혼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지시, 제지, 분리, 소지 물품 조사,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 5. "훈계":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깨닫게 하는 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 6. "보상":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③ 교육 3주체의 책무

- 1.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2.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교육을 존중하며 따라야 합니다.
- 3.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교육을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 4.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교육을 위하여 시설, 인력 등 제반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5.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교육을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 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합니다.

○○학교장

본인은 위와 같이 학생생활교육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고 함께하겠습니다.

(학생) 학년 반 학생 이름 :

(보호자) (서명)

학년말 학생생활규정 운영 평가

-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에서는 매 학년말 학생, 교원, 보호자 대상으로 연간 학칙 운영 결과를 평가합니다.
- 학생생활규정 운영평가 점검 사항(예시)

학생생활규정 운영평가 점검 사항

- 학생생활규정 제 개정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학생생활규정 제 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는가?
-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규정이 갖추어져 있는가?
-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이 적법한 법적 근거에 의해 이뤄졌는가?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법적 근거

「대한민국 헌법」과「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물론「교육기본법」제12조(학습자),「초· 중등교육법, 제8조(학교 규칙), 제18조(학생의 징계),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제20조(교직원의 임무),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제32조(학교유영위원회 기능),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 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서울특별시학생인권조례, 등

- 학생생활규정이 교원의 학생생활교육 활동을 보장하여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있는가?
- 학생생활규정에 인권 존중 태도 함양 및 인권에 대한 가치가 내면화되어 있는가?
- 학생생활규정에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없는가?
-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절차가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과정으로 진행되었는가?
- 학생자치회 및 학급임원 선출 규정에 성적, 징계 기록 등을 이유로 학생자치기구 구성원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 교육 3주체가 학생생활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였는가?
-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시 교육 3주체의 합의 및 학생들의 실질적인 의사가 반영되었는가?
- 학생생활규정을 학생 및 보호자. 교원에게 충분히 알렸는가?

Q&A (?)



학생생활규정에 제·개정된 사항이 없어도 학생, 보호자, 교원에게 학생생활규정을 안내하고 홍보하여야 하나요?



매 학년 초(3월) 및 수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연 1회 이상 실시 권장). 규정에 대한 안내와 홍보는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학생의 경우 학기 초 학급 단위로 실시하여 학칙과 바른 생활 태도 등을 사전에 안내합니다.

교직원의 경우 생활교육 관련 법령, 생활교육의 요건과 예시 상황 등에 대해 안내합니다.

보호자의 경우 보호자(학부모) 연수, 가정통신문, 핸드북 배부 등의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가정에서의 인성교육과 기본 생활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Q&A (?)



학생생활규정과 관련하여 상위 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거나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할 때도 의견 수렴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할 때는 교육 3주체의 의견 수렴 결과와 무관하게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이고. 단순한 표현·자구 변경은 교육 3주체의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단, 수정·변경 내용에 대하여 학교의 장 결재를 받은 후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학생·보호자·교원 등에게 안내·홍보해야 하며, 관련 내용을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학생 생활규정 길라잡이 (2025 개정판)



총 괄 김홍미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진권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

기 획 이주석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생활교육팀 장학관

이지영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학생자치·시민교육팀 장학관

조성백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생활교육팀 장학사

김민주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생활교육팀 장학사

정경두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생활교육팀 장학사

최형권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학생자치·시민교육팀 장학사

강한솔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생활교육팀 주무관

조희윤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생활교육팀 주무관

집 필 서정현 등촌고등학교 교감

신동배 서울한산초등학교 교사

이진우 서울한산초등학교 교사

공승규 인왕중학교 교사

이예니 서초고등학교 교사

한임정 서울특별시교육청 변호사

김문규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변호사

검 토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학생인권교육센터

정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과 장학사

장보원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장학사

최동훈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장학사

발 행 일 2025. 2.

발 행 처 서울특별시교육청

발 행 인 정근식